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04호
2017. 4. 13.(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예 규]

제719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 4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20호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6

[입법예고]

제2017-856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0

제2017-918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4

제2017-942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5

제2017-950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

◆ 고 시

제2017-122호 용봉정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20

제2017-123호 도시관리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0

제2017-124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고시 36

제2017-125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28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36

제2017-126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고시 50

제2017-127호 행정용어 순화어 고시 51

제2017-128호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4

제2017-130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64

제2017-131호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 고시 79

제2017-1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92

제2017-133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02

◆ 공 고

제2017-874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106

제2017-875호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106
제2017-883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107
제2017-88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107
제2017-89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09
제2017-891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118
제2017-899호 제3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기본계획 공고	121
제2017-901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공고	121
제2017-904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124
제2017-90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24
제2017-907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등록 공고	127
제2017-913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지 공시송달 공고	127
제2017-9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28
제2017-91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129
제2017-925호 서초 성취마을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30
제2017-928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131
제2017-937호 2017년도 제7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168
제2017-93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사항 공고	169
제2017-94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공고	172
제2017-94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사항 공고	176
제2017-945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 행정예고	176
제2017-946호 2017년 국제 청년분야 사회적경제 민간보조사업 공모 공고	222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7-3호 재산등록사항 공개 공고	225
-----------------------------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7-71호 서울특별시의회 안건 제출 공고	229
----------------------------------	-----

◆ 구 고 시

제2017-27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동대문구)	230
제2017-2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동대문구)	231
제2017-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중랑구)	235
제2017-35호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240
제2017-5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마포구)	241
제2017-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서구)	242

제2017-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구로구)	244
제2017-2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246
제2017-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동작구)	259

◆ 구 공 고

제2017-280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중구)	263
제2017-429호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서대문구)	265
제2017-448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서대문구)	270
제2017-501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사업 공사완료 공고(강서구)	275
제2017-511호 도시계획시설(개화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재열람공고(강서구)	275
제2017-59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열람공고(구로구)	278
제2017-517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강동구)	279
제2017-518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강동구)	279
제2017-519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강동구)	280

◆ 사업소고시

제2017-7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1
제2017-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1
제2017-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2
제2017-7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2
제2017-7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2
제2017-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3
제2017-8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3

◆ 사업소공고

제2017-76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285
---	-----

◆ 기 타

제2017-65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87
---	-----

자 치 법 규

[예 규]

◆ 서울특별시예규 제719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① 주계약자 공동도급시 주계약자는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분리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⑪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0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0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 ⑫ 계약상대자가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⑬ 계약상대자가 제12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삭기, 지게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인 건설기계.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수입차는 통관일자)된 건설기계, 75kW 이상 130kW 미만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와 75kW 미만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⑤ 제4항의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저감장치(DPF) 또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의 엔진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다목의 기준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 제24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제한의 특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 중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시 주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의 시공률은 2017년 7월부터 30퍼센트 이상을, 2018년 1월부터 60퍼센트 이상을, 2019년부터는 100퍼센트하여야 한다.

제3조(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기간의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부터는 계약금액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장(다만,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2017년 8월부터 시행한다), 2018년 1월부터는 모든 건설공사장에서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설현장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장에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시 주계약자는 해당 공종에 대해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또한,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의3 신설)
-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4조제10항~제13항 신설)
- 다.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6조제3항~제5항 신설)

◆ 서울특별시의회의규 제120호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양 준 욱 인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권익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진정, 건의, 질의, 탄원, 호소 등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사무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서식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 ① 사무처장은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행정심판·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

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7.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 ② 사무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처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
2.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민원이 처리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회부·이송된 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등 민원을 이송 받은 기관이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 및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 알려주어 의정활동에 참조·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서 처리토록 한 민원에 대하여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관별 업무보고 시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원처리부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부서	처리기한	신청방법	민원유형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		비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내용	처리일	

297mm×210mm[백상지 80g/㎡]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의회사무처가 민원을 직접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 실효성 있는 민원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수사·조정·중재, 사인간의 권리관계, 개인의 사생활 등 민원불수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4조)

나. 의회사무처가 직접 민원을 처리하고, 필요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서울특별시 등 관련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제1항)

다. 민원처리시 관련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제2항)

라. 민원의 내용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을 달리 규정함(제6조)

마. 민원 처리결과는 의장 또는 회부 받은 위원회나 이송 받은 기관이 민원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규정함(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56호****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실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자문제도 체계를 보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교통소통대책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장은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음 (안 제3조)
- 나. 서울특별시장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음 (안 제4조)
- 다.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사항 (안 제8조)
- 1)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점검자로 지정할 수 있음
 - ①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
 - ② 교통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 2) 교통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는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함
- 라. 서울특별시장은 사무위임 처리의 지도·감독을 위해 자치구 분기별 운영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 (안 제12조)
- 마. 원상회복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1)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 2) 서울특별시는 교통 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이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바. 사업자 및 대항자의 준수사항 (안 제14조)
- 1) 사업자 및 대항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서울시로 제출해야 함
 - 2) 다만,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1동 6층 교통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운영과(전화 : 2133-2466, FAX : 2133-1053, E-mail : pblqw629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 제 영 향 분 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실효성 담보를 위한 조례개정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팀장 서인석, 담당 백바름							
4. 근거법령명등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및 제56조 1항(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4항 등				관 련 규제수		2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기관 및 용역 업체							
6.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서울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 시장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한 연도별 교통소통대책 수립

- 현재 장기공사(1년 이상 점용이 발생하는 공사)에 대한 구분 없이 점용기간 20일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년간 진행하는 도로점용공사도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수립한 교통소통대책으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변화하는 교통현황(교통량,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지 못하여 주변 가로 및 교차로를 비효율적인 교통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사항(정체, 안전문제 등)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어려운 실정
- 또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실효성 담보가 미약하여 현장 불이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이에 따라 연도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통소통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보다 쾌적한 공사장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에 대한 수립시기 제한

- 도로를 장기간 점용하는 공사항목(작업구, 환기구 등)의 제원(위치 및 크기 등) 설계 완료 후 교통소통대책을 서울시로 접수하여,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조정 불가능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공사장 주변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장기간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항목의(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1년 이상 공사) 사전 관리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자문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본 조례개정안은 미흡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 체계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사항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사장 주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관련 별표2 4항에 따라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어, 특별시도를 점용하는 공사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개정으로 실현 가능함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규제 비용은 없으며, 실효성 높은 교통소통대책을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줄임으로서 시

민들에게 수준 높은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하여 서울의 스마트한 교통관리체계 이미지를 제고하고,

- 도로를 점용하는 기간과 공간의 최소화로 교통정체비용 및 사고비용, 통과차량으로 인한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의 저감을 유도하는 포괄적 편익이 발생함.
- 교통소통대책 수립 조건에 대한 제한으로 실효성과 품질을 담보하고, 주변지역 주민 및 운전자에게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하여 포괄적인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관련 별표2의 4항에서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객관적이고 명확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18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기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시립 시설로 건립·운영되는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기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
(안 제6조의2 제1호 및 제1호)

- 시립 시설로 건립·운영되는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안 제6조의2, 별표1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생이모작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 2133-7798, FAX: 02) 2133-0863

- E-mail : onchief@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42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해 위임된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을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 참석수당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일 당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사이버위원회	회 당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 심사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시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급 불가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 :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
- 시의원에 대한 실비 :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나. 수당지급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 참석 서명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의 절차에 따라 지급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관협력담당관(전화 : 02)2133-6574, FAX : 02)2133-0860 E-mail : nemo300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50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에 대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관련 상위법 개정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 및 위임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방법 명시(안 제22조, 제30조)

- 주차장유료화, 주차부제 등을 실시할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시설물)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교통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2133-2226, Fax: 2133-1048, E-mail: iamssh@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교통기획관 이대현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담당 신성훈							
4. 근거법령명등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 제43조,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					관 련 규제수		1
5. 피규제집단 및 이해 관계자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어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또는 주차부제, 승합자동차 전용주차장 확보 등의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경우 (※ '0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곳은 없음)							
6. 규제존속기한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후 해제 이전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15. 7.2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으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수요관리 조치 중의 하나로 동법 제48조제2항에서 위임한 부설주차장 유료화, 주차부제 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을 조례에 명시 - 현행 조례에는 주차부제 실시방법만 명시되어 있으며, 주차장 유료화는 부재되어 이를 명시함 - 또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의 외국 단체관광객 이용 등으로 승합자동차의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승합자동차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함 (※ 현행 조례의 주차부제 실시방법은 주변도로 통행속도 등에 따른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불합리하므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용도 및 교통여건에 맞는 선택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함)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주변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지역과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경우에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또는 주차부제의 실시 등 교통수요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설주차장 유료화 또는 주차부제 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 조치 중의 하나이며, 사전에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걸치는 사항으로 실현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규제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높일 수 있음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조례에 명시예정인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또는 주차부제 실시 등의 대상 시설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중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지정된 시설물에 한하며, 지정된 시설물의 교통수요관리 조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3조, 제48조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임
- 또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을 대상으로 시행된 부설주차장 유료화 또는 주차부제 실시 등의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해제기준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5조에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명시되어 있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추가로 필요한 인력 및 예산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2호

용봉정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32호(1996.7.2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결정(변경)된 용봉정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용봉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원 내 흑석체육센터 증축과 녹지 및 쉼터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3-9번지 일대

3. 면 적 : 80,804.2㎡

4.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5) 및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820-9846)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용병정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동작구 본동 4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				경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동)	비대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동)	비대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합	계	80,804.2	12,555	4	1,088.46	2,882.88	89	80,804.2	13,123.25	3	1,413.26	3,617.45	97	시설면적 증 568.25㎡				
	기반 시설	31,708	3,984					31,708	3,984					증감없음				
		도로	30,876	3,152					30,876	3,152 (27724)					증감없음			
조	광장	832	832					832	832					증감없음				
	경시설	259	259				15	259	259				16	증 파고라 1개소 증 333.89㎡ (증 90.44㎡)				
휴	양시설	3,126	3,126				30	3,369.45	3,369.45				34	증 등위자 2개소 증 야외테이블세트 2개소				
		은동시설	2,276	1,779	1	958.08	2,719.5	5	2,600.80	2,103.80	1	1,282.88	3,454.07	8	증 324.80㎡			
		교양시설	1,194	915	1	46.98	46.98		1,194	915	1	46.98	46.98		증감없음			
편	익시설	2,644	2,492	83.4	116.4			2,644	2,492	1	83.4	116.4		증감없음				
	관리시설						39						39	증감없음				
녹지·기타		39,597.2						39,028.95						감 568.25㎡				
	시설율 (법정 40%)	(12,797㎡ / 80,804.2㎡) x 100% = 15.8%											(13,123.25㎡ / 80,804.2㎡) x 100% = 16.24%			증 0.44%		
건폐율 (법정 10%)		(1,088.46㎡ / 80,804.2㎡) x 100% = 1.3%											(1,413.26㎡ / 80,804.2㎡) x 100% = 1.74%			증 0.44%		

2.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합 계			80,804.20	12,555			1,088.46	2,882.88	89			80,804.20	13,123.25			1,413.26	3,617.45	97	시설면적 증 568.25㎡	
	소 계			31,708	3,984								31,708	3,984						증감없음	
	도로				3,152	()							3,152	()						증감없음	
	광 장	가			832	832						가		832	832						증감없음
		가-1	본동신3-9 일대	(308)	(308)							가-1	본동신3-9 일대	(308)	(308)						증감없음
가-2		본동신3-9 일대	(314)	(314)							가-2	본동신3-9 일대	(314)	(314)						증감없음	
가-3		본동신3-9 일대	(210)	(210)							가-3	본동신3-9 일대	(210)	(210)						증감없음	
조 경 시 설	소 계			259	259					15			259	259					16	증 파고라 1개소	
	잔디밭	나	본동신3-9	203	203						나	본동신3-9	203	203						증감없음	
	파고라		전지역			목재				15		전지역			목재				16	증 파고라 1개소	
	계단	나	본동신3-9	56	56						나	본동신3-9	56	56						증감없음	
	계단-1	나-1	본동신3-9	(17)	(17)						나-1	본동신3-9	(17)	(17)						증감없음	
계단-2	나-2	본동신3-9	(9)	(9)							나-2	본동신3-9	(9)	(9)						증감없음	
계단-3	나-3	본동신3-9	(12)	(12)							나-3	본동신3-9	(12)	(12)						증감없음	
계단-4	나-4	본동신3-9	(15)	(15)							나-4	본동신3-9	(15)	(15)						증감없음	
계단-5	나-5	본동신3-9	(3)	(3)							나-5	본동신3-9	(3)	(3)						증감없음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휴 양 시 설	소 계			3,126	3,126					30					34	중 333.89㎡ (중 90.44㎡) 중 장의자 2개소 중 야외테이블세트 2개소	
	야유회장	다	본동산3-9	966	966												증감없음
		라		2,160	2,160												증감없음
		라-1	본동7-1	(927)	(927)												증감없음
		라-2	본동산3-9	(182)	(182)												증감없음
		라-3	본동5-2	(152)	(152)												증감없음
		라-4	본동3-7	(107)	(107)												증감없음
		라-5	본동2-1	(355)	(355)												증감없음
		라-6	흑석동 259-2	(137)	(137)												증감없음
		라-7	흑석동 141-2	(60)	(60)												증감없음
		라-8	본동산5 일대	(28)	(28)												증감없음
		라-9	본동산5 일대	(32)	(32)												증감없음
		라-10	본동산5 일대	(40)	(40)												증감없음
		라-11	본동산5 일대	(160)	(160)												증감없음
																	중 333.89㎡ (중 90.44㎡) 중 장의자 2개소
		장의자		전지역												32	중 장의자 2개소
		야외테이블세트														2	중 야외테이블세트 2개소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안 동 시 설	소 계			2,276	1,779			958.08	2,719.50	5		2,600.80	2,103.80			1,282.88	3,454.07	8	건축면적 증 324.80㎡ 연면적 증 734.57㎡
	배드민턴장	마	본동신3-9	462	462		1면					462	462		1면				증감없음
	체육관	4	본동166-2 2	1,572	1,075		2층	958.08	2,719.50			1,572	1,075		2층	958.08	2,719.50		증감없음
	체육관 (종축)	4-1										324.80	324.80		4층	324.80	734.57		건축면적 증 324.80㎡ 연면적 증 734.57㎡
	생활체육시설	마	본동신3-9 일대	242	242							242	242						증감없음
	생활체육시설 -1	마-1		(173)	(173)							(173)	(173)						증감없음
	생활체육시설 -2	마-2		(69)	(69)							(69)	(69)						증감없음
	운동기구					철제				8				철제				8	증감없음
	소 계			1,194	915			46.98	46.98			1,194	915			46.98	46.98		증감없음
	교 양 시 설	한강사자수조환비	바	본동475-1	70	70	화강석	1기					70	70	화강석	1기			
학도의용군충훈비		사	본동172-1	83	83	화강석	1기					83	83	화강석	1기				증감없음
효사정		1	흑석동141-2	683	404	외조	1층	46.98	46.98			683	404	외조	1층	46.98	46.98		증감없음
놀이마당		아	본동신3-9	358	358							358	358						증감없음

구 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 의 시 설	소 계			2,644	2,492								2,644	2,492				83.4	116.4		증감없음	
	전망대	2	본동신3-9	208	56		외길 조	1층	50.4	50.4		2	본동신3-9	208	56	외길 조	1층	50.4	50.4		증감없음	
	전망데크	자	본동산 2-14	946	946						자	본동산 2-14	946	946							증감없음	
	전망데크 2	자	본동산 2-14	272	272						자	본동산 2-14	272	272							증감없음	
	휴게데크	저		38	38						저		38	38							증감없음	
	화장실	3	혹석동4	33	33		조적 조	2층	33	66		3	혹석동4	33	33	조적 조	2층	33	66		증감없음	
	주차장	차	혹석116-4	1,147	1,147			33대			차	혹석116-4	1,147	1,147			33대				증감없음	
	소 계																			39	증감없음	
	조명시설		전지역				주철				20	전지역				주철				20	증감없음	
	휴지통		전지역				목재				15	전지역				목재				15	증감없음	
녹 지 및 기타	안내판		전지역				철재			4	전지역				철재				4	증감없음		
	소 계			39,597.2									39,028.95								감 568.25㎡	
			전지역	39,597.2								전지역	39,028.95								감 568.25㎡	

3. 도로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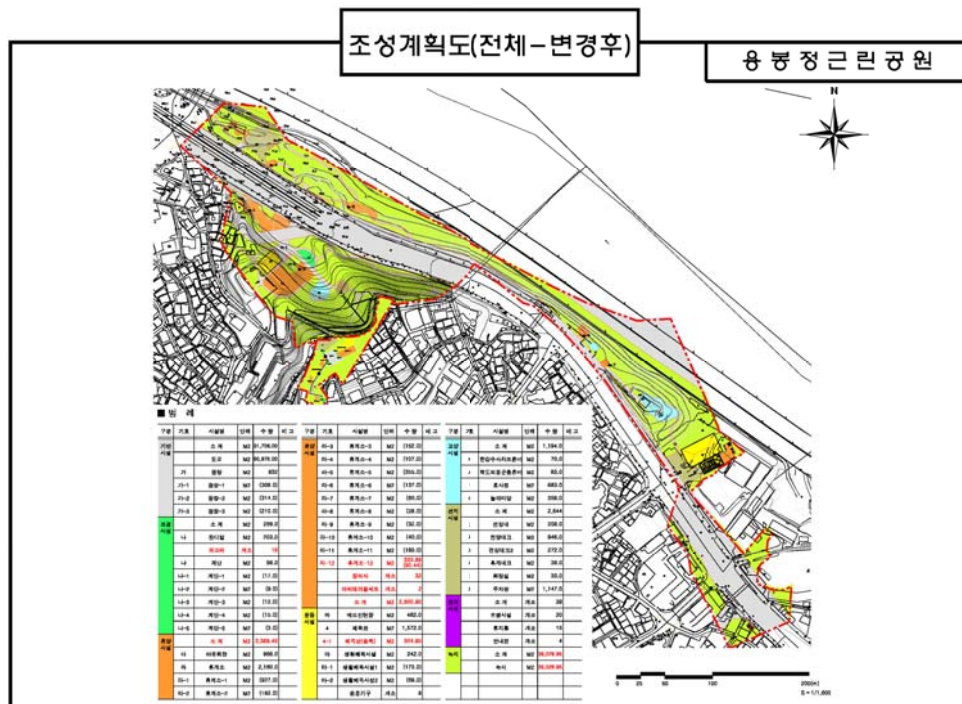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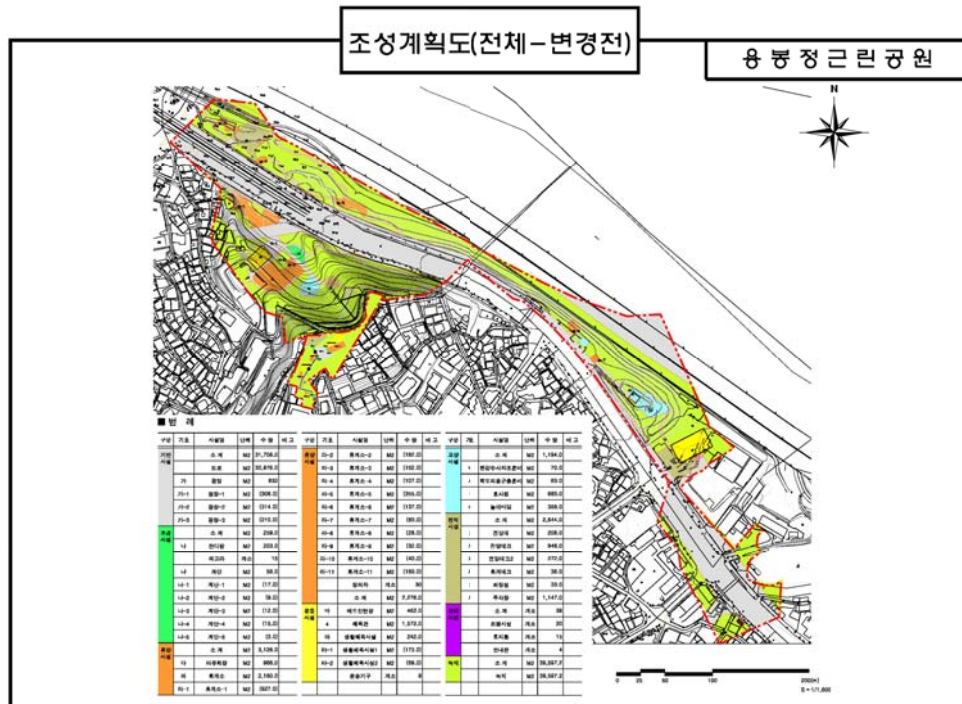
- 공원시설 도시계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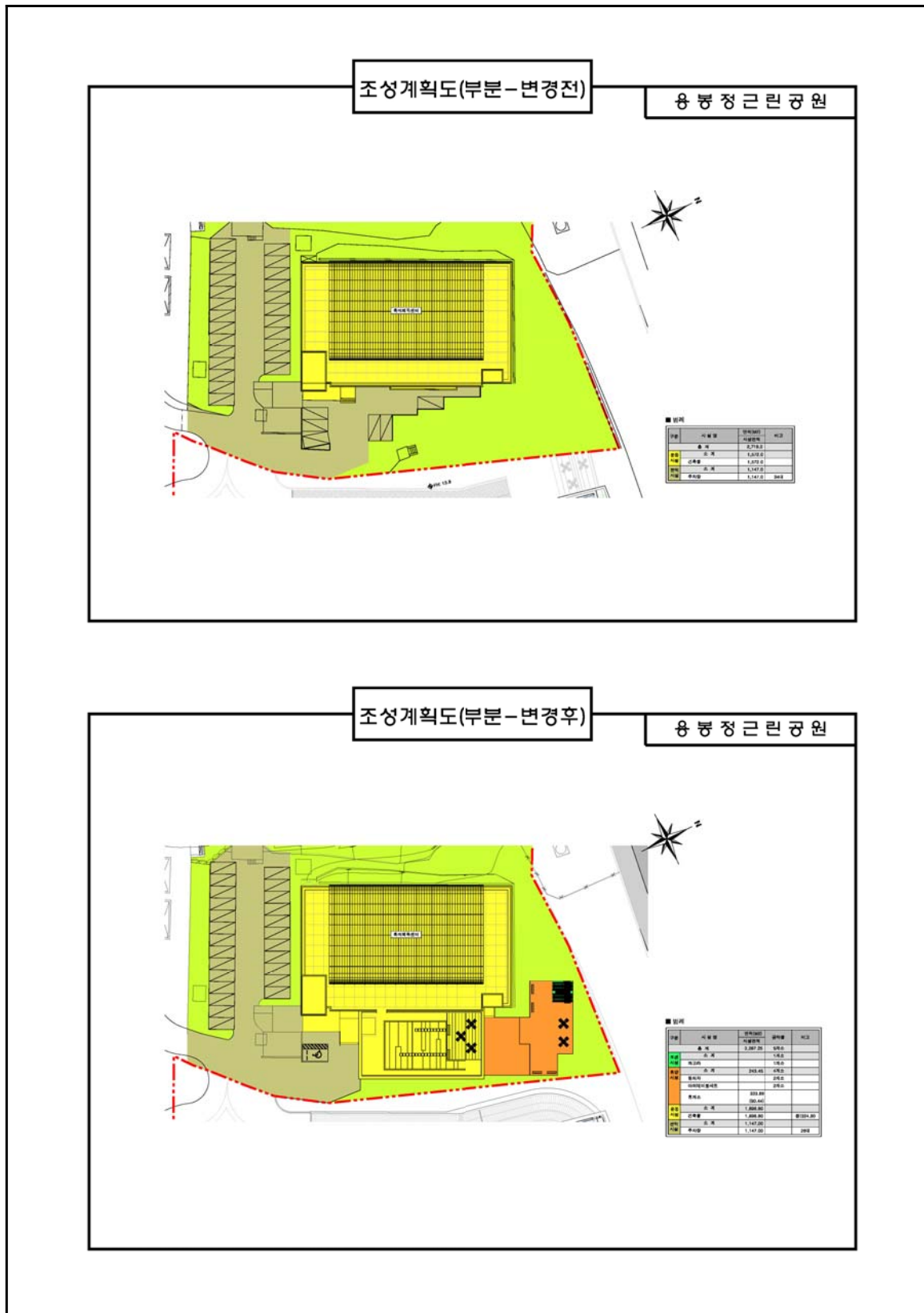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계				1,082	27,724				
당초	광로	1		40	100	4,600	통과도로			올림픽대로
당초	대로	1	1	35	870	21,780	통과도로	북서쪽 부지경계	남동쪽 부지경계	현충로
당초	중로	3	2	12	16	192	통과도로	현충로	유수지	개설
당초	"	3	1	12	96	1,152	통과도로	현충로	북서쪽 부지경계	동작구고시 제94-19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1,310	3,096.00				
변경					-	-				
당초	중로	계			3	36				
당초		3	1	12	3	36	진입로	도시계획로 중3-1	광장 가-1	
당초	소로	계			166	704				
변경					-	-				
당초		2	1	8	10	80	진입로	현충로	전망데크	
당초		3	1	4	60	240	부진입로	광장가-1	전망대1	
당초		3	2	4	8	32	"	전망데크	휴게소 라-4	
당초		3	3	4	60	240	"	휴게소라-7	효사정 2	
당초		3	5	4	20	80	"	현충로	체육관	
당초		3	7	4	8	32	"	남동부지경계선	산책로 8	
당초		계			1,141	2,356	"			
당초	산책로		1	2	325	650	산책로	소로3-7	북서부지경계선	
당초	"		2	2	29	58	"	광장 가-1	소로 3-8	
당초	"		3	2	34	68	"	광장 가-1	소로 3-8	
당초	"		4	2	64	128	"	소로3-8	휴게소 라-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		5	2	18	36	"	소로3-8	전망대1	
당초	"		6	2	40	80	"	광장가-1	소로3-1	
당초	"		7	2	26	52	"	소로3-13	소로3-15	
당초	"		8	2	131	262	"	소로3-7	현충로	
당초	"		9	2	43	86	"	소로2-1	북서부지경계선	
당초	"		10	2	173	346	"	한강수사자조흔비	휴게소 라-5	
당초	"		11	2	49	98	"	현충로	휴게소 라-3	
당초	"		12	2	38	76	"	현충로	휴게소 라-5	
당초	"		13	2	48	96	"	휴게소 5-1	현충로	
당초	"		14	2	49	98	"	주차장	효사정2	
당초	"		15	3	12	36	"	계단-2	계단-3	
당초	"		16	3	62	186	"	계단-1	산책로1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3호

도시관리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64-10호 일대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12.2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 취지

- 대림동 964-10호 일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시흥대로변의 양호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림동 964-10호 일대	-	증)5,635	5,635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①	대림동 964-10호 일대	5,635	◦ 토지이용효율성 제고 및 시흥대로변 공개공지 확보 등을 통해 양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I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635	-	5,63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761	증)1,874	5,635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874	감)1,874	-	0.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대림동 964-10호 일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874	◦ 용도지역 일원화를 통한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신설	-	5,071	①	대림동 964-10호 일대	5,071	-

주) 획지면적(5,071㎡) = 대지면적(4,465㎡) + 도시계획도로 공간적범위 결정면적(606㎡)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①-1	용 도	◦ 지정용도 -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200%/200% ◦ 상한용적률 212% 이하 - 용적률 산정식 :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 (1 + 1.3 × 가중치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00% × (1 + 1.3 × 0.97 × (221) / (4,465)) = 212.5%
		높 이	◦ 최고높이 50m/최고층수 7층 이하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	◦ 구역 북측 경계부 : 2~4m 폭원 건축한계선 설정 ◦ 소로2류(8m) 북측 : 3m 폭원 벽면한계선(1층) 설정 ◦ 대지내 공개공지와 연계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도로상부 연결통로	◦ 지상부로부터 6m이상 유효높이 확보

③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계획
■ 전면공지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구역 북측 건축한계선 내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2~4m)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흥대로변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는 보도와 단차없이 조성하여, 보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차량통행을 최소화하고 전면공지내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등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 포장패턴은 공공부문의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 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포장토록 한다. ◦ 야간조명 설치	—
	소로2류(8m) 변 북측 전면공지	◦ 벽면한계선(3m)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흥대로변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는 보도와 단차없이 조성하여, 보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전면공지내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등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 포장패턴은 공공부문의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 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포장토록 한다. ◦ 야간조명 설치	—

■ 공개공지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공지	시흥대로변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지면적의 7%이상 설치 조성 ◦ 24시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 시흥대로변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 ◦ 보행에 방해되는 구조물 및 공작물 설치 금지 ◦ 야간조명 설치 ※ 향후 설치 예정인 신안산선 지하철출입구를 공개공지내에 설치(구분지상권 설정)하여 시흥대로변 보도폭원을 확보	—

IV.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V.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9)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02-2670-3540)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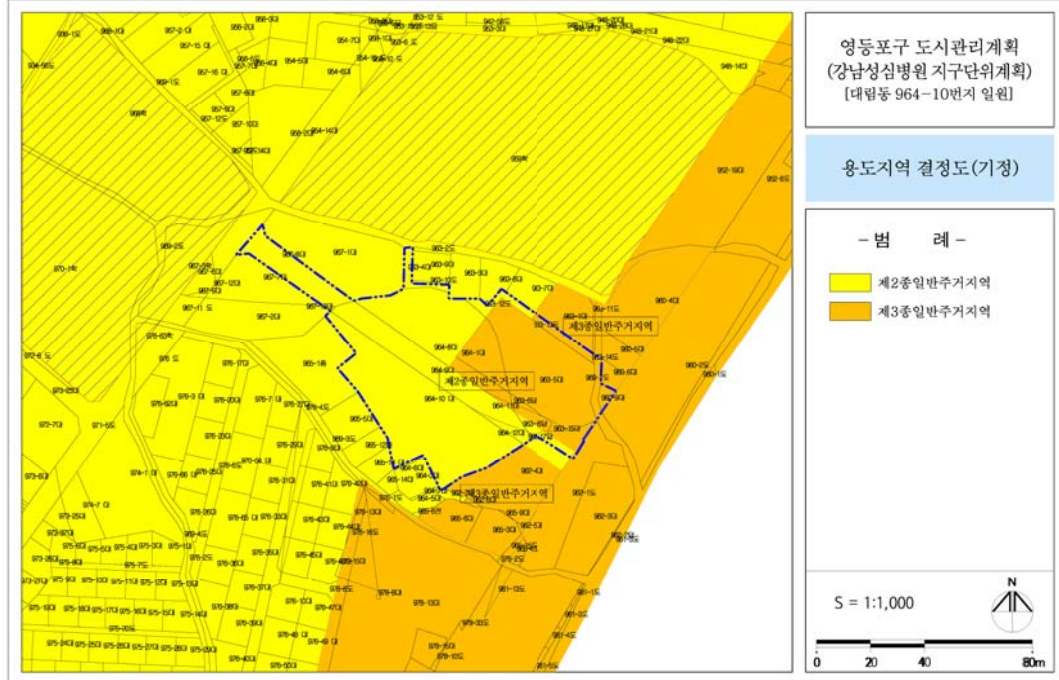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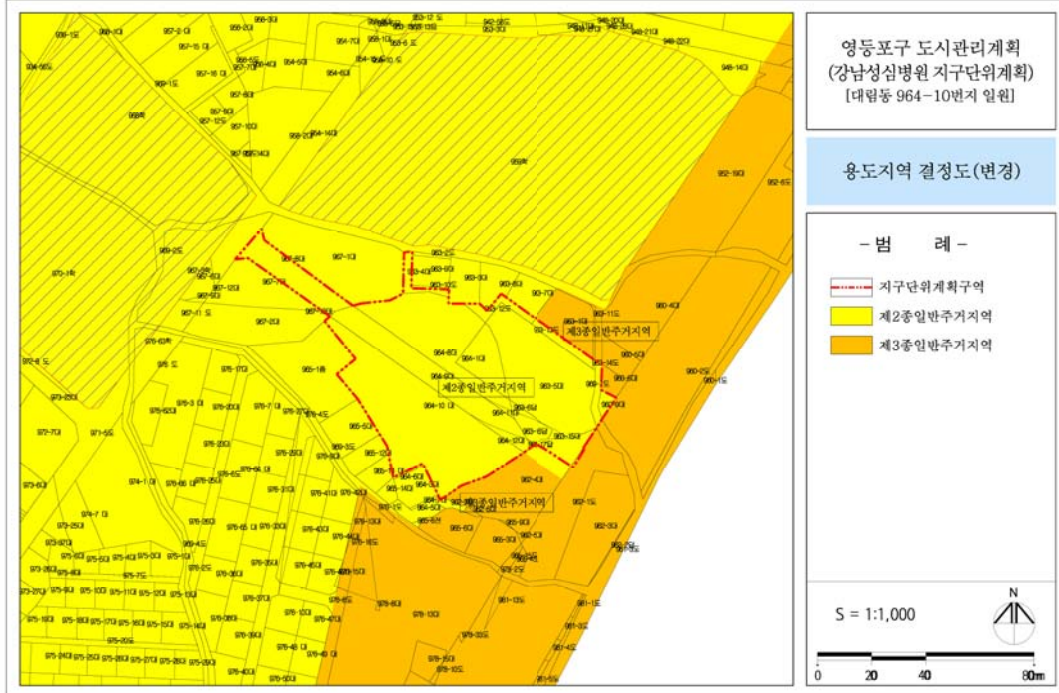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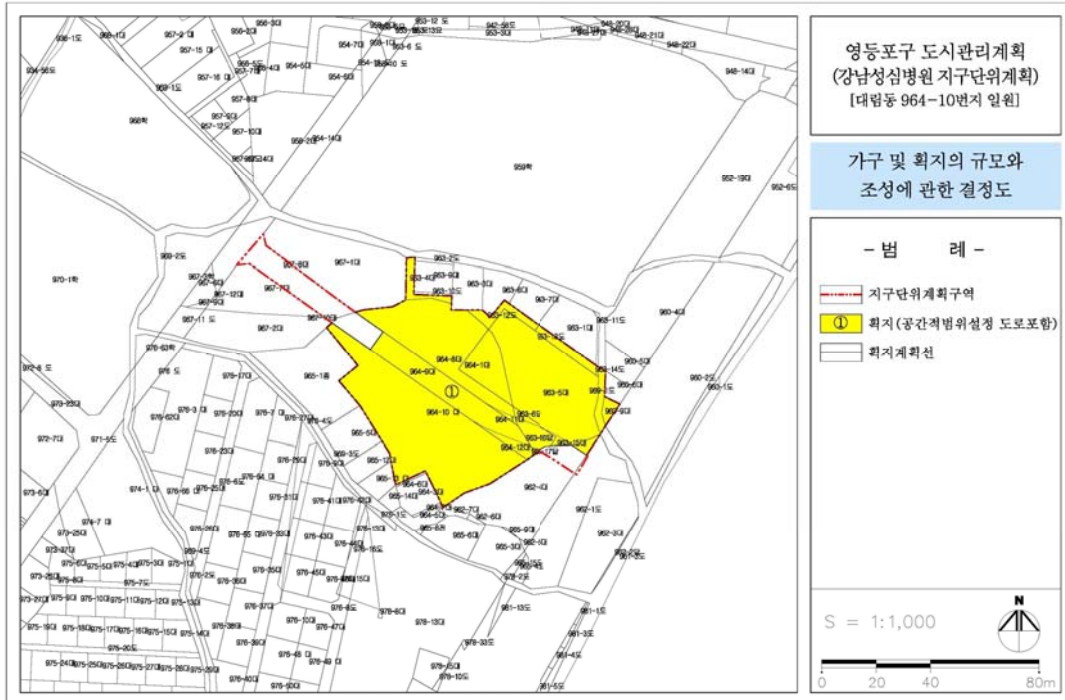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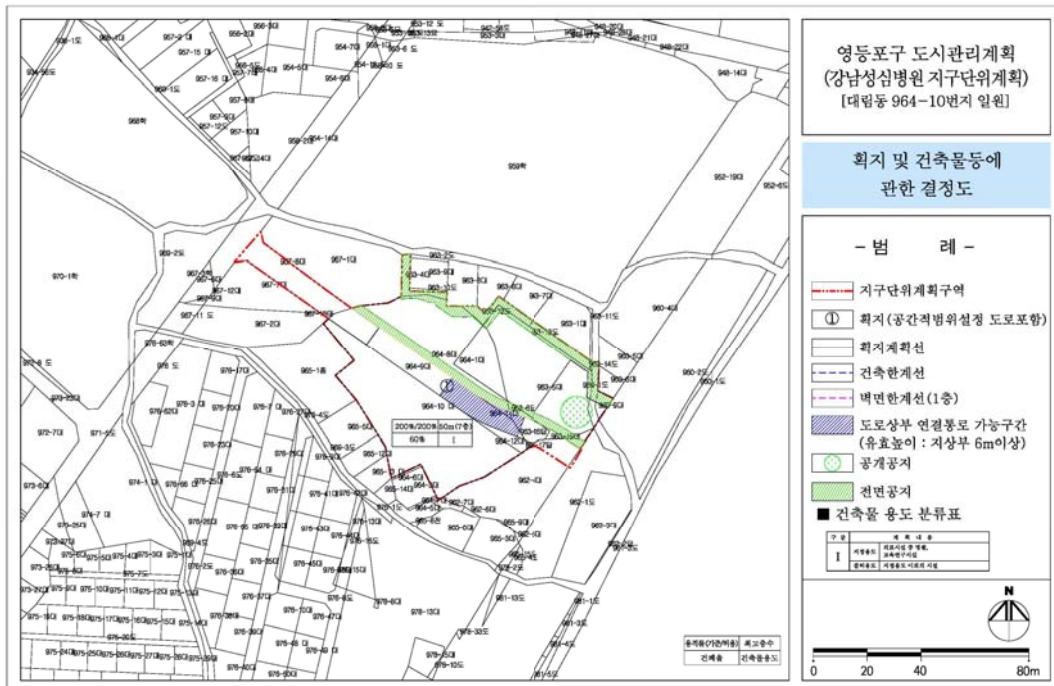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도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4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고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보유자 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종별	지정 번호 및 명칭	보유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무형문화재 (개인종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9호 홍염장	김경열	남	1959.10.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51-2 거성리젠시 A동 402호

2. 인정일 : 2017.4.13

3. 인정사유

- 김경열은 오랜 전승활동으로 염액 및 홍떡 제조·개오기 염색·직물 염색·실 염색 등 홍화 염색에 필요한 우수한 전승기량을 가지고 있으며, 유물 복원 및 교육·다수의 전시 등 전승 활동 실적 등도 탁월하여, 홍염의 전승과 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9호 홍염장 보유자로 인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5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28(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2011.06.23)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특별계획구역28(개포현대1차아파트-강남구 개포동 653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6년 제2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6.12.21)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계획구역28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I. 결정취지

- 2011년 10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결정(변경)되고, 2016년 2월 주민제안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28)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54	26,384	697,141.9	15	10,204	436,531.1	17	7,835	170,988.7	22	8,615	90,622.1
	변경	54	26,384	698,233.9	15	10,204	436,623.1	17	7,835	170,988.7	22	8,615	90,622.1
광로	기정	4	7,957	359,769.4	2	3,740	282,497.0	1	1,639	66,880.4	1	2,848	11,392.0
	변경	4	7,957	360,769.4	2	3,740	282,497.0	1	1,639	66,880.4	1	2,848	11,392.0
대로	기정	4	4,223	128,622.9	1	1,464	51,487.0	1	612	18,360.0	2	2,147	58,775.9
	변경	4	4,223	128,622.9	1	1,464	51,487.0	1	612	18,360.0	2	2,147	58,775.9
중로	기정	18	9,254	179,689.1	7	4,208	94,604.7	10	4,881	79,608.2	2	465	5,476.2
	변경	19	9,554	179,781.1	7	4,208	94,696.7	10	4,881	79,608.2	2	465	5,476.2
소로	기정	28	4,950	29,060.5	5	1,092	7,942.4	5	703	6,140.10	17	3,155	14,978.0
	변경	27	4,650	29,060.5	5	792	7,942.4	5	703	6,140.10	17	3,155	14,978.0

※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38	23	보조 간선	540	광로 2-18	대로 3-71	일반 도로	-	건고시 296호 (83.09.07)	개포동길
변경	중로	1	238	23	보조 간선	540 (35)	광로 2-18	대로 3-71	일반 도로	-	건고시 296호 (83.09.07)	가감속차로 폭3m 확보

※ ()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8의 해당사항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238	중로 1-238	◦ 가감속차로 확보 B=23m(일부구간 가감속차로 확보) L=540m(대상지 내 35m)	• 대상지 내 진출입로 확보 및 지역 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완화차로 (3m) 추가확보

※ 상기 변경 시설을 제외한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도로시설은 변경 없음

2) 공간시설

① 공원

▪ 공원 총괄표(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합 계		18	476,971.8	19	477,365.8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14	467,849	14	467,849
	어린이공원	3	4,650.9	3	4,650.9
	소공원	-	-	1	394
주제공원	문화공원	1	4,471.9	1	4,471.9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강남구 개포동 653번지 일대	-	증) 394	394	-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	◦ 신설 - 증) 394㎡	• 특별계획구역(개포현대1차) 세부지침을 반영하여 대상지 내 주민 휴식·휴게공간을 위한 공원신설

②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 개포동 653번지 일대	-	증) 1,950	1,950	-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연결녹지	◦ 신설 - 증) 1,950㎡	• 특별계획구역(개포현대1차) 세부지침을 반영하여 간선도로변 완충기능 및 녹지축 연계를 위한 연결 녹지신설

※ 상기 변경 시설을 제외한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공간시설은 변경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단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

▪ 특별계획구역28(개포현대1차아파트)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653	• 강남구 개포동 653	
특별계획구역 면적	• 35,682.4㎡	• 35,682.4㎡	
획지(계획대지) 면적	• 33,246.4㎡	• 33,246.4㎡	
공공시설 면적	• 2,436.0㎡	• 2,436.0㎡	
공공시설 비율	•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6.8% 내외	•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6.8% 내외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 획 지 침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공공기반시설 계획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면적: 2,436㎡ - 연결녹지 폭12m(언주로변) (면적 : 1,950㎡) 계획 - 공원(우성3차변)(면적 : 394㎡) 계획 - 개포동길 가감속차로 설치(면적 : 92㎡) ※ 공공기반시설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면적: 2,436㎡ - 연결녹지 폭12m(언주로변) (면적 : 1,950㎡) 계획 - 공원(우성3차변)(면적 : 394㎡) 계획 - 개포동길 가감속차로 설치(면적 : 92㎡) ※ 공공기반시설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지침도에 따름 : 향후 세부 개발 계획(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 계획시설결정
건축물의 용도·밀 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허용용도a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10% 이하	210% 이하	
		허용용적률	230% 이하	230% 이하	
		상한용적률	250% 이하	2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35층 이하 - 고층 구간(평균층수 30층 이하) - 통경구간 및 개포경남단지에 인접하여 고층 구간 계획(세부지침도 참조) - 개포경남, 현대1차, 우성3차 블록전체 계획대지면적의 40%	- 최고층수 35층 이하 - 고층 구간(평균층수 30층 이하) - 통경구간 및 개포경남단지에 인접하여 고층 구간 계획(세부지침도 참조) - 개포경남, 현대1차, 우성3차 블록전체 계획대지면적의 40%	
배치	건축한계선		개포동길변: 6m	개포동길변: 6m	지침도에 따름 : 공공기반 시설의 도시 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계획결정
	통경구간		우성3차 단지와 접하는 부분에 통경구간 폭 30m	우성3차 단지와 접하는 부분에 통경구간 폭 30m	
기타 에 관한 사항	경관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보행동선		남측 단지 주출입구와 개포경남단지를 연결하는 남북방향의 보행동선 조성	남측 단지 주출입구와 개포경남단지를 연결하는 남북방향의 보행동선 조성	
	차량동선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자전거도로		- 언주로변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폭3m이상) - 개포동길변, 통경구간내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폭1.5m이상)	- 언주로변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폭3m이상) - 개포동길변, 통경구간내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폭1.5m이상)	
	근린광장		개포경남, 현대1차, 우성3차 전체 블록중앙부 통경구간내 근린광장 조성	개포경남, 현대1차, 우성3차 전체 블록중앙부 통경구간내 근린광장 조성	

- ※ 법정 상한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및 관련법령과 기준을 우선 적용함
- ※ 보행동선·근린광장·쌈지형공지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할 수 있음
- ※ 소형주택(임대주택)은 정비계획 수립시 규모를 다양하게 계획(예시 : 주거전용면적 40㎡~59㎡)
- ※ 부분임대아파트 확보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입하여야 하며, 비율은 60~85㎡, 85㎡이상 세대수의 20%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
- ※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함
- ※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에 따름

※ 상기 변경 내용을 제외한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내용은 변경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III.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강남구 개포동 653번지 일대	-	증) 35,682.4	35,682.4	

3. 정비계획 수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5,682.4	-	35,682.4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5,682.4	-	35,682.4	100.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5,682.4	증) -	35,682.4	100.0	
정비 기반시설 등	소 계	-	증) 2,436.0	2,436.0	6.8
	도 로	-	증) 92.0	92.0	0.2
	녹 지	-	증) 1,950.0	1,950.0	5.5
	공 원	-	증) 394.0	394.0	1.1
획 지	소 계	-	감) 2,436.0	33,246.4	93.2
	획 지 1	35,682.4	감) 2,436.0	33,246.4	93.2

주) 상지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38	23	보조 간선	540	광로 2-18	대로 3-71	일반 도로	-	건고시 296호 (83.09.07)	개원길
변경	중로	1	238	23~26	보조 간선	540 (35)	광로 1-71	대로 3-108	일반 도로	-	건고시 296호 (83.09.07)	가감속차로 폭3m 확보

나)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407	중로 2-407	• 가감속차로 확보 B=23m(일부구간 가감속차로 확보) L=540m(대상지 내 35m)	• 대상지 내 진출입로 확보 및 지역 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완화차로 (3m) 추가확보

2)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강남구 개포동 653번지 일대	-	증) 394	394	-	

나)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	• 신설 - 증) 394㎡	• 특별계획구역(개포현대1차) 세부지침을 반영하여 대상지 내 주민 휴식·휴게공간을 위한 공원신설

3) 녹지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 개포동 653번지 일대	-	증) 1,950	1,950	-	

나)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연결녹지	° 신설 - 증) 1,950㎡	• 특별계획구역(개포현대1차) 세부지침을 반영하여 간선도로변 완충기능 및 녹지축 연계를 위한 연결 녹지신설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계		-	증) 2,500	2,500	
	경로당	획지1 (공동주택용지)	-	증) 400	400	
	관리사무소		-	증) 100	100	
	어린이놀이터		-	증) 800	800	
	주민운동시설		-	증) 500	500	
	어린이집		-	증) 500	500	
	작은도서관		-	증) 200	200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규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35,682.4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3,246.4	개포동 653번지 일대	7	-	-	7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준	허용	정비 계획	예정 법적	
신설	개포현대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5,682.4	획지1	33,246.4	개포동 653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299.52 이하	35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 총 세대수의 60%이상 - 총세대수 : 823세대									
			건립규모		세대수		비율(%)		비고			
					소형	분양						
			60㎡이하		99세대		101세대		62.33%			
			60~85㎡이하		—		313세대					
			85㎡초과		—		310세대		37.67%			
			합 계		823세대		100.00%					
			— 전용 85㎡이하 총세대수의 비율 : 62.33%									
심의완화 사항			-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3) - 정비계획 용적률(250%이하) → 예정법적상한용적률(299.52%이하) ⇒ 건축계획 용적률 (299.52%)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6m : 개포동길변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3)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	
	35,682.4㎡	33,246.4㎡	2,436.0㎡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면적=새로이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새로이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획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국·공유지 = 2,436.0㎡-0㎡- 0㎡= 2,436.0㎡(6.8%)					
계획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210.0%이하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210% + 20% = 230% ※ β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항 목				인센티브	비 고
	우수디자인				15%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2%	
		•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8%	적용
		•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8%	
		•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4%	
	지능형 건축물	• 1등급			15%	
		• 2등급			12%	적용
		• 3등급			9%	
		• 4등급			6%	
	총 20%적용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230%+[210%×(1.3 × 0.0733)] = 250.0%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나머지 대지면적 = 2,436㎡ ÷ 33,246.4㎡ = 0.0733						
• 정비계획용적률 = 250%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52%이하					

※ 위에서 적용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결과에 따라 정비 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건축물 경관 - 양재천 방면으로의 통경축 확보 고려 -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하여 인동간격 및 통경축을 확보하는 건축물 배치 - 건축물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차폐되는 것을 막고 건축물과 주변지형 및 경관의 조화를 위하여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 가로 경관 - 가로수와 가로등은 도로별 개성을 부여하는 식재 및 가로주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 - 보도폭, 공개공지 확보 등을 통한 보행공간 확충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경관 - 친수환경조성과 도시내 자연요소를 활용 - 주변지형과 조화되는 건축배치 계획 및 녹지계획 • 일조권 검토 -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규정 준수 - 대지경계선을 유지하여 법정한도 이상의 일조량 확보 • “개포택지지구(공동주택지)지구단위계획” 경관부문 및 “개포택지지구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경관관련 사항 준용함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따라 영향 저감방안 강구 • 생태면적률 40%이상, 자연지반율 10%이상 확보	
재난방지	• 긴급재난구조차량 접근 및 소방차 등의 접근로 배려 •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스템 및 단지 내 상하수도시설의 합리적인 설계 반영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개포현대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황 : 416세대 • 계획 : 823세대 • 증) 407세대	이상없음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계		33,246.4	-	33,246.4	-
획지	1	33,246.4	개포동 653번지 일대	33,246.4	공동주택용지

자.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산출근거	용적률(%) 면적(m ²)	비고
기준용적률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	210.0%	
허용용적률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항목	230.0%	
정비계획용적률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을 통한 용적률 완화	250.0%	기부채납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 α)		
법적상한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299.52%	
증가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	49.5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 30조3」
	299.52%-250.0%		
소형주택면적산출	계획대지면적 × (증가용적률의 1/2이상)	8,231.81m ² (계획: 8,263.53m ²)	소형주택 건설최소면적
	33,246.4 × 24.76%		

IV.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2016년12월21일)

- 대상지 남동측 근린생활시설 및 공원 사이에 계획한 차량 진출입구는 삭제하고, 상정(안)의 서측 차량진출입구로 통합 계획(2개소→1개소) 하며, 향후 대상지 북측에 연결한 개포경남아파트와의 경계부에 도로 확보 가능성 검토 권장
- 언주로변 가속차로 확보의 효용성이 미흡한 바, 지정 ‘개포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연결녹지 면적(1,950m²)은 유지하고, 연결녹지의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검토
- 대상지 남서측 가로변(언주로 및 개포로) 경관을 고려하여 근린생활시설은 남서측 가각부로 조정하고, 향후 건축심의시 가로변 경관을 고려하여 주동의 높이 및 배치 등 적정성을 검토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등 지형도면포함) : 첨부(세부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면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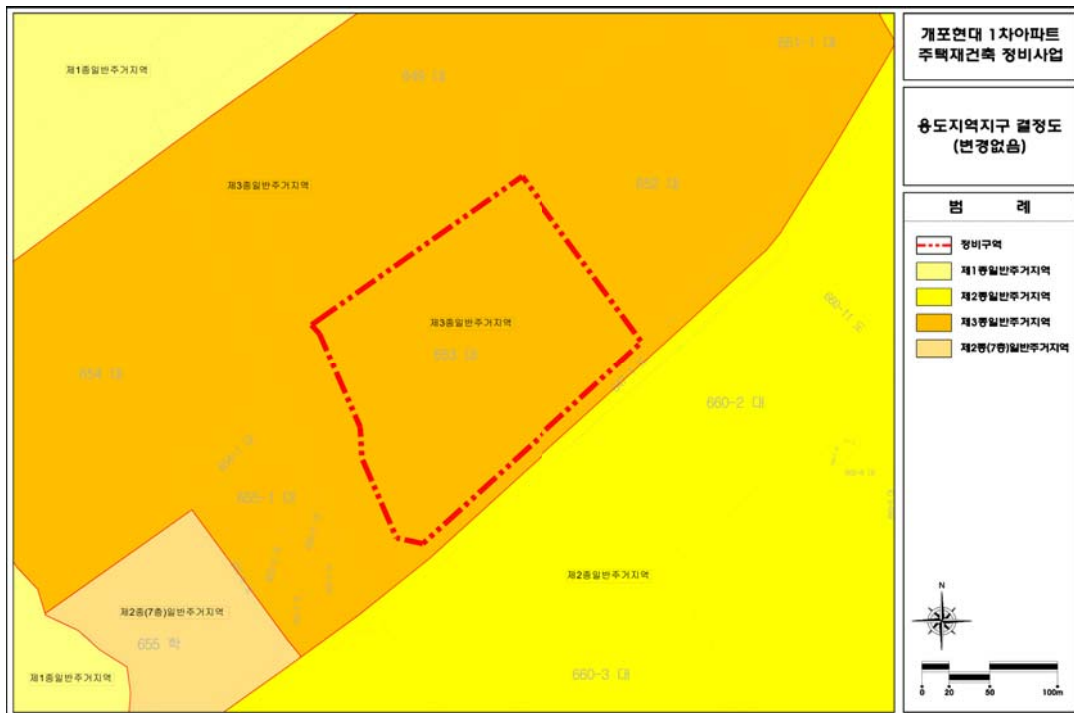
VI.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2133-7141) 및 강남구청 주택과(☎3423-607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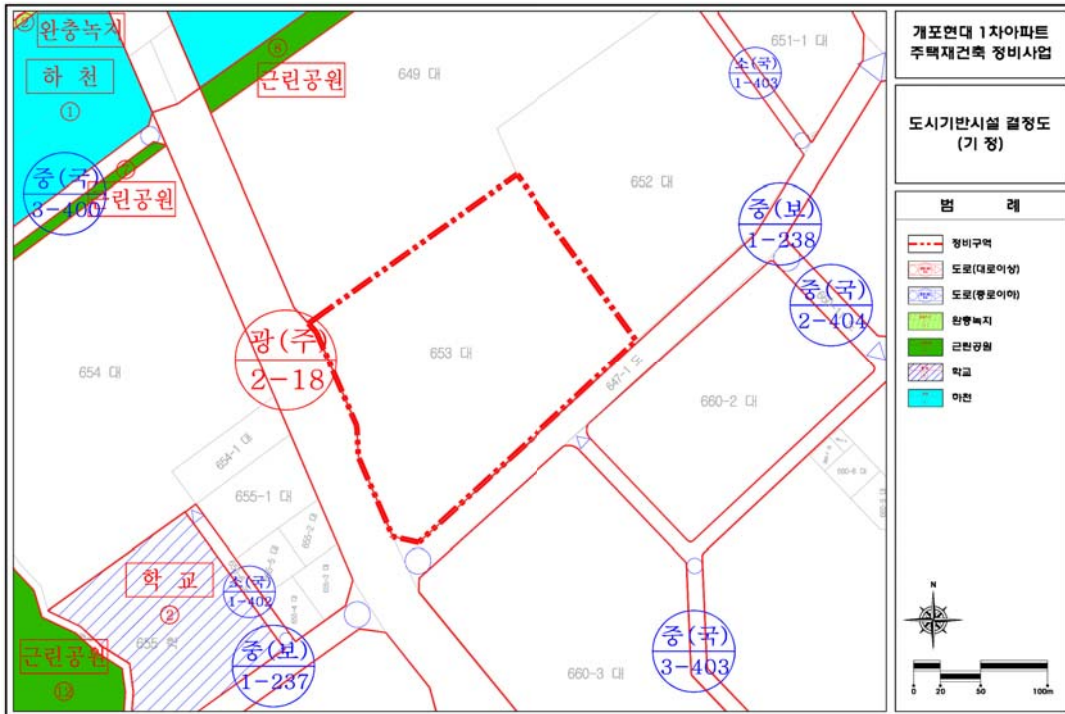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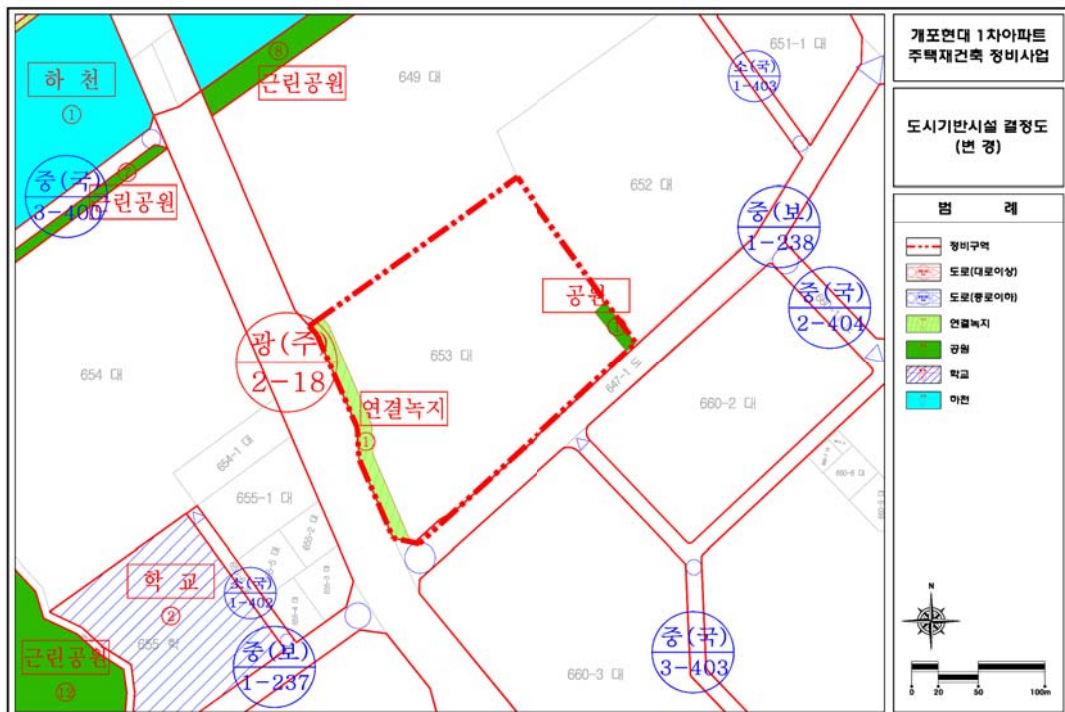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6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고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종별	종목 명칭	인정 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무형문화재 (개인종목)	제15호 오죽장	윤병훈	남	1934.01.01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금마루 7길 77
	제18호 민화장	김만희	남	1931.11.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0 두산아파트 112동 201호
	제30호 옹기장	배요섭	남	1926.12.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397 동성아파트 4동 407호

2. 인정일 : 2017.4.13

3. 인정사유

- 서울시무형문화재 제15호 오죽장 윤병훈 보유자, 서울시무형문화재 제18호 민화장 김만희 보유자, 서울시무형문화재 제30호 옹기장 배요섭 보유자 등 3인은 고령 및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전수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7호**

행정용어 순화어 고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행정용어 순화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 행정용어 순화어

연번	바뀌야 할 말 (순화대상어)	뜻 또는 활용 예	행정용어 순화어
1	인큐베이팅	미숙한 신생아를 키우듯 갖 창업한 소기업의 성장을 돕다/ 인큐베이팅 시설, 인큐베이팅 룸	육성, 보육
2	코워킹	코워킹 그룹, 코워킹 존	협업, 공동작업
3	멀티태스킹	2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 멀티태스킹 인재	다중작업
4	테스트베드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 설비	시험장, 시험(무)대, 가늌터
5	플랫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구조나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정치·사회·문화적 합의나 규칙/ 오픈 플랫폼, 플랫폼 조성	기반, 장
6	스크리닝	명단 스크리닝/ 건강 스크리닝 사업	선별, 훑어보기, 점검

연번	바뀌야 할 말 (순화대상어)	뜻 또는 활용 예	행정용어 순화어
7	어워드	상/ 디자인 어워드 수상	상
8	~풀(Pool)	이용가능인력/ 인력풀 구성, 전문가 풀	~후보군 (예: 인재풀→인재후보군 전문가풀→전문가후보군)
9	오프닝	열다의 의미/ 공간 오프닝	개관, 개통, 개막
10	스페이스	코워킹 스페이스, 오픈 스페이스	공간
11	서포터(즈)	지지자, 팬	응원단, 후원자
12	코디네이터 (코디)	여러 가지 요소가 잘 진행되도록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조정자
13	플리마켓 (프리마켓)	안 쓰는 물건을 공원 등에 가지고 나와 매매나 교환 등을 하는 시민 운동 (flea market)	벼룩시장
14	메이커	상품을 만든 사람 또는 그 회사/ 메이커 페어, 메이커 시티, 메이커큐브	제작자, 제조업체
15	킬러 콘텐츠 (킬링 콘텐츠)	등장하자마자 경쟁제품을 몰아내고 미디어 시장을 지배하는 핵심 콘텐츠	돌풍콘텐츠, 핵심콘텐츠
16	스트리트 마켓	장외시장, 노상가게	거리가게

연번	바뀌야 할 말 (순화대상어)	뜻 또는 활용 예	행정용어 순화어
17	무빙스토어	이동가능한 조립형 컨테이너로 만든 문화편의시설	이동가게
18	팩토리	공장/ 예술팩토리, 디자인팩토리	공방
19	코칭(코치)	지도하다/ 코칭 시스템	지도
20	팸투어	Familiarization Tour/ 기자단 팸투어	(초청)홍보여행, 사전답사여행
21	스타트업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의 신생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새싹기업
22	트리팟 (트리포트)	tree pot 수목포트/ 서울역 고가도로 트리팟 조성	화분
23	파빌리온	(공공 행사·전시회의) 가설 건물(임시 구조물)	전시관, 가설건물
24	클러스터	소규모로 모이다, 무리를 이루다	연합지구, 협력지구
25	포트홀	도로가 파손돼 냄비(pot)처럼 구멍이 파인 곳/ 포트홀 발생에 대비	도로파임, 노면구멍
26	젠더	젠더 관점, 젠더 정책, 젠더 거버넌스	성(인지, 평등)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02-2133-643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8호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2003.11.18.)호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8(2005.01.15.)호로 개발기본계획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6(2008.11.20.)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9호(2010.4.22.)로 결정된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구분	지 구 명	유 형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전농·답십리	주거지형	동대문구 전농1,4동, 답십리 1,3,5동 일대	905,595.5	감) 92,445.0	813,150.5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존치관리구역) 제척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905,595.5	감) 92,445.0	813,150.5	100.00	
주택용지	소 계	552,514.6	감) 76,055.0	476,459.6	58.6	
	단독/다가구/다세대	102,151.0	감) 1,853.0	100,298.0	12.3	
	공동주택	343,134.9	감) 29,205.0	313,929.9	38.6	
	근린생활	28,878.7	감) 8,668.0	20,210.7	2.5	
	복합용도	78,350.0	감) 36,329.0	42,021.0	5.2	
상업업무용지	소 계	30,974.0	—	30,974.0	3.8	
	상업/업무/복합	30,974.0	—	30,974.0	3.8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공공시설용지	소 계	312,191.9	감) 16,390.0	295,801.9	36.4	
	도 로	180,530.8	감) 15,538.0	164,992.8	20.3	
	광 장	4,367.0	—	4,367.0	0.5	
	공원/녹지/공공공지	47,941.9	감) 852.0	47,089.9	5.8	
	순환보행로	7,817.0	—	7,817.0	1.0	
	학 교	60,108.4	—	60,108.4	7.4	
	공공청사	3,209.1	—	3,209.1	0.4	
	문화복지	7,937.6	—	7,937.6	1.0	
	기 타	280.1	—	280.1	0.1	
종교시설		9,915.0	—	9,915.0	1.2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계		905,595.5	감) 92,445.0	813,150.5	100.0	
촉진구역		453,640.2	—	453,640.2	55.8	
주택 재개발	전농7구역	151,792.4	—	151,792.4	18.7	
	전농8구역	93,697.0	—	93,697.0	11.5	
	답십리12구역	7,039.9	—	7,039.9	0.9	
	답십리16구역	145,767.9	—	145,767.9	17.9	
	답십리18구역	55,343.0	—	55,343.0	6.8	
존치지역		451,955.3	감) 92,445.0	359,510.3	44.2	
존치 정비구역	전농도시환경 정비1구역	21,665.0	—	21,665.0	2.7	
존치 관리구역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92,445.0	감) 92,445.0	—	—	지구 제척
	지구단위계획 및 기타	337,845.3	—	337,845.3	41.5	

※ 존치관리구역(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변경사항 이외의 촉진계획 변경없음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①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답십리동 484번지 일대	92,445	감) 92,44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9호 (2010.4.2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 해제 - 면적 : 92,445㎡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2010.4)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개발 담보에 따른 내부 건축물 정비 및 신축 불가 등 주민 생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계		92,445	-	92,445	구역 내 → 구역 외
주거지역	소 계	92,445	-	92,44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853	-	1,853	
	제2종일반주거지역	87,322	-	87,322	
	준주거지역	3,270	-	3,27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미관지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전농로	중심지 미관지구	전농동4거리~용답동 (답십리동276-25~ 답십리동490-47)	33,840	1,410	12	서울특별시고시 제164호 (1982.4.22)	구역 내 → 구역 외
기정	①	사가 정길	일반 미관지구	장안삼거리~종량구 면목동1326-2 (답십리동477-9~ 답십리동482-104)	39,840	1,660	12	서울특별시고시 제360호 (2003.11.15)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① 도로

■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940	7,840	1	160	1,600	5	780	6,240	-	-	-
소로	6	940	7,840	1	160	1,600	5	780	6,240	-	-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70	10~13	집산도로	720 (160)	대로3-10	대로3-498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698호 (1987.9.30)	():구역 내 구역 내 → 구역 외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00	소로1-170	중로1-172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74호 (1978.6.12)	구역 내 → 구역 외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20	소로1-170	중로1-172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74호 (1978.6.12)	"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20	중로1-172	중로1-180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74호 (1978.6.12)	"
기정	소로	2	151	8	국지도로	220	중로1-172	소로1-170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720호 (1986.10.7)	"
기정	소로	2	171	8	국지도로	220	소로1-170	중로1-172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720호 (1986.10.7)	"

②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1	주차장	답십리동 484-7 일대	1,863	-	1,863	동대문고시 제2003-26호 (2003.4.21)	구역 내 → 구역 외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구번호	비 고
변경	가(공동개발), 특별계획구역(1~6)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사 유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1	동대문구 답십리동 482-76번지 일대	10,771.8	감) 10,771.8	-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변경	2	동대문구 답십리동 483-39번지 일대	13,397.2	감) 13,397.2	-	"	
변경	3	동대문구 답십리동 484-18번지 일대	13,245.9	감) 13,245.9	-	"	
변경	4	동대문구 답십리동 485-24번지 일대	12,201.3	감) 12,201.3	-	"	
변경	5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83번지 일대	13,170.0	감) 13,170.0	-	"	
변경	6	동대문구 답십리동 490-99번지 일대	20,278.9	감) 20,278.9	-	"	

6.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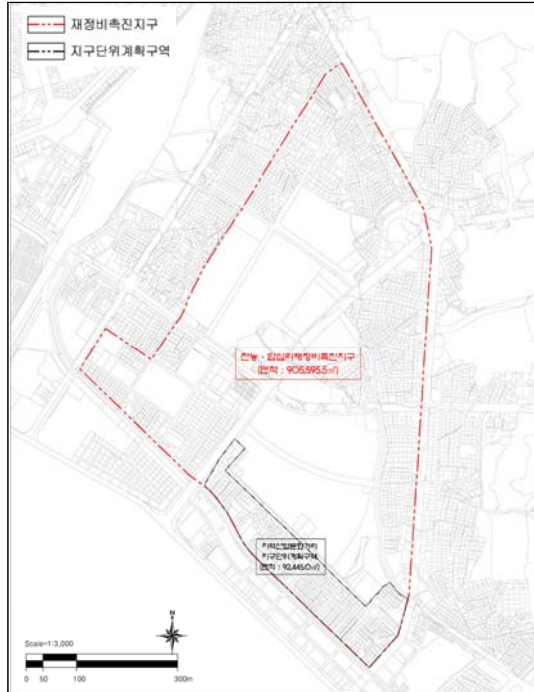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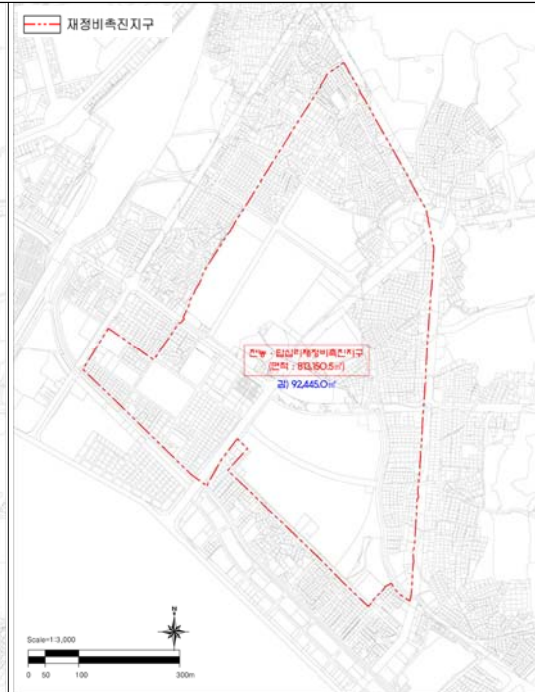
8.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8)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02-2127-4946)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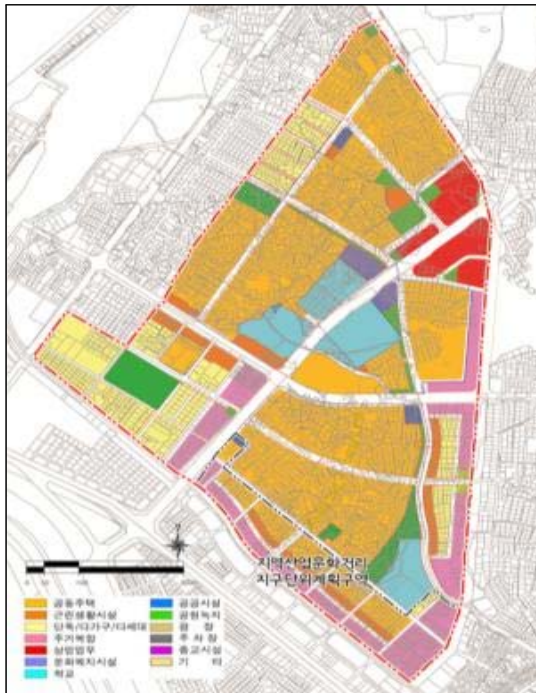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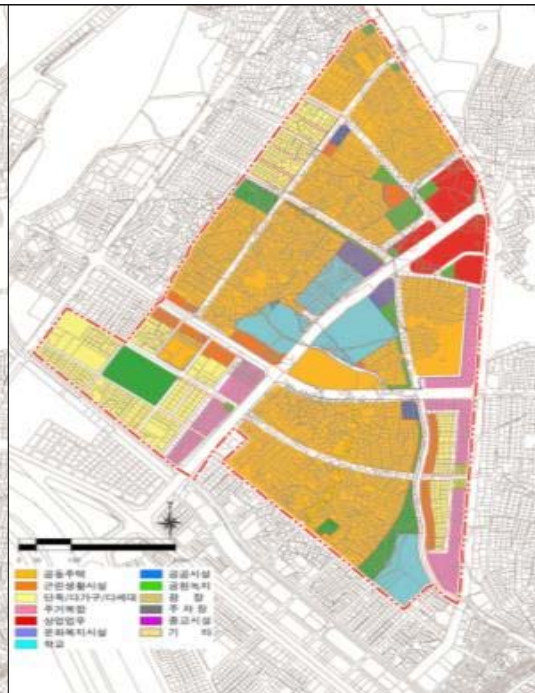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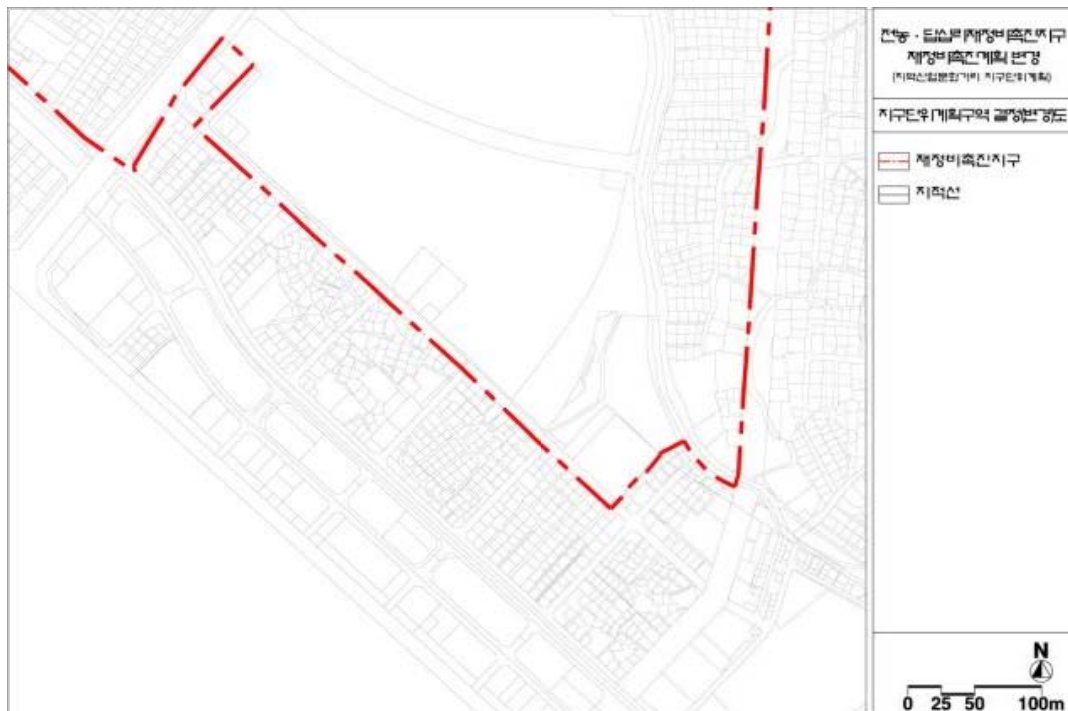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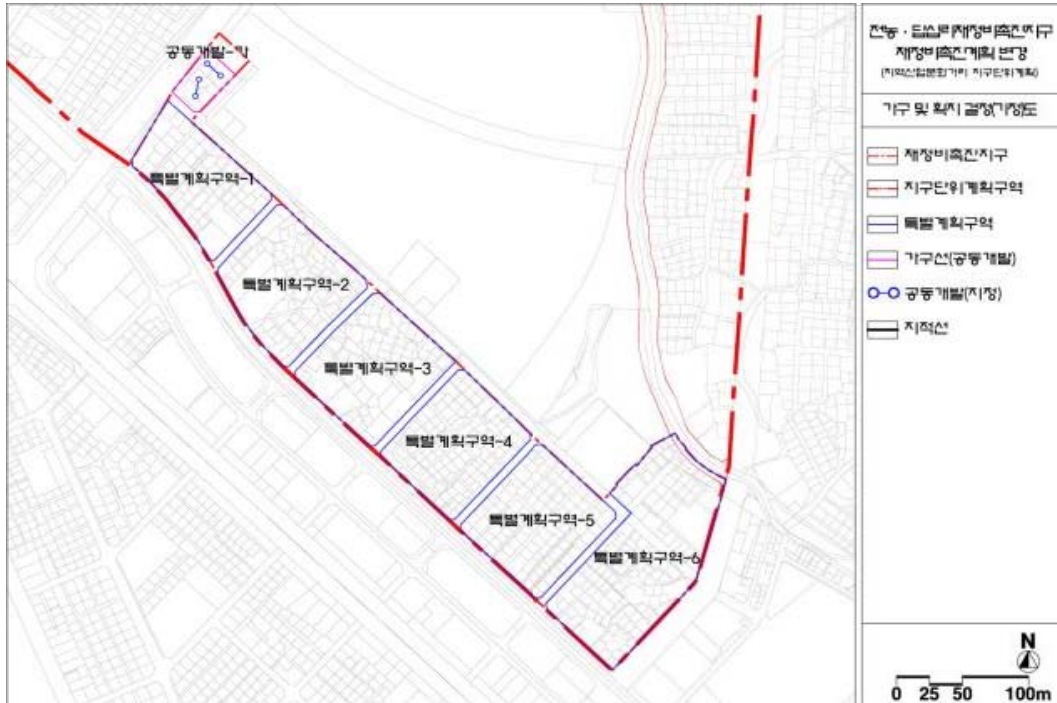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도(기정)



□ 가구 및 획지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0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1.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00호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34 (大般若波羅蜜多經 券534)	1첩	34.8 × 12.0	13세기 중기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4길 28(최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01호	백자양각 재명 매죽문 선형필세필가 (白磁陽刻在銘梅竹文扇形筆洗筆架)	1점	높이 3.3, 너비 12.0	19세기	이화여대 박물관(이화여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02호	백자청화 칠보화훼문 사각병 (白磁靑畫七寶花卉文四角瓶)	1점	높이 15.5, 입지름 2.7	19세기 전반	이화여대 박물관(이화여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03호	성제묘 무신도 (聖帝廟巫神圖)	10점	조사보고서 별도 표기	조선후기 (19세기)	서울 중구 방산동 4-96 성제묘(서울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04호	장충동 관성묘 무신도 (獎忠洞關聖廟巫神圖)	4점	조사보고서 별도 표기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

<지정 사유>

■ 대반야바라밀다경 권 534

『대반야바라밀다경 권 534』은 제3분 시등품(施等品) 29의 3에 해당하며 보시바라밀에 대한 강설이다. 모두 24장이며, 1장은 6행씩 4폭으로 접은 절첩 형식의 장정이다. 누런색 종이표지에 먹으로 테두리를 넣고 금니로 개법장진언과 경명, 권수, 천자문 함차를 세로로 필사해 놓았다. 이 『대반야바라밀다경』은 고려 고종 26년(1239)에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재조본 고려대장경 판본이다. 인쇄상태로 보아 판각(1239)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 질이나 인쇄상태가 양호하여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 백자양각 재명 매죽문 선형필세필가

19세기 분원리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세 검 필가이다. 몸체의 반은 물이 고이는 필세이고, 반은 붓을 쫓을 수 있는 필가로 이처럼 필세와 필가를 함께 구성한 예는 거의 없다. 부채꼴 곡면에 백토이장(白土泥裝)으로 부조풍으로 문양을 표현하였고, 안쪽면에도 백토이장으로 당나라 시인 한유(韓愈, 768~824)와 유우석(劉禹錫, 772~842)의 시구를 각각 전서체로 양각하였다. 해강도자미술관에 소장된 필가를 제외하면 매우 드문 형식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백자청화 칠보화훼문 사각병

19세기 분원 관요에서 제작된 고급품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유태의 품질은 물론 조형적으로 뛰어난 사각병이다. 일본 에도시대 유행한 송피릉(松皮菱) 화창과 화류문을 사용하고 있어 한일 도자양식 교류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다. 굽 바닥 중앙에는 “무신 경수궁三”이라고 음각명을 통해 1848년 전후 경수궁(慶壽宮) 궁묘에서 사용된 의례용기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 성제묘 무신도

『성제묘 무신도』는 총10점으로 제작시기가 조선후기와 19세기말에 이른다. 궁중화원(畫員)에서 민간 화사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선시대 관제(關帝)신앙 무신도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무신도에서 궁중화원들에 의한 궁중 화풍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민화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기존 무신도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제신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 장충동 관성묘 무신도

『장충동 관성묘 무신도』는 총 4점으로, 관우와 관우 부인 무신도는 구한말의 궁중 화원으로 추정되는 화사에 의해 그려졌으며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나머지 2점의 무신도는 보기 드물게 개성이 강한 도상이다.

특히 관운장 무신도는 활시위가 상하지 않게 보호구를 끼웠는데 이러한 섬세한 표현은 도상적으로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관우 부인 무신도 역시 당대의 또 다른 미인으로 대표할 만한 도상이라 흥미롭다. 나머지 2점의 무신도는 화격은 떨어지지만 크기로 보아 관성묘의 위상을 보여주는 개성이 강한 도상들이므로 앞으로 관제신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문화재 지정일자 : 서울시보 고시일자

3.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대반야바라밀다경 권 534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은 반야부의 여러 경전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660~663년에 현장이 한역하였다. 『대반야경(大般若經)』으로 약칭하며,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방대한 600권 390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존재가 공(空)하며, 육바라밀 중에서 반야바라밀을 강조한 경전으로 대승사상의 핵심을 이룬다.

지정 검토대상의 이 경은 『대반야바라밀다경』 600권 중에서 제534권이다. 제534권은 제3분시등품(施等品) 29의 3에 해당된다. 내용은 보살이 수행하는데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생각하지 않고, 고르게 나누어 주는 보시바라밀에 대한 강설이다.

권미의 “己亥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와 같이 이 『대반야바라밀다경』은 고려 고종 26년(1239)에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재조본 고려대장경 판본이다. 이 목판은 현재 해인사에 전하고 있으며, 목판을 통해 이 권은 永眞이 판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끝에는 “大般若卷第五百三十四 第○張 稱”과 같이 축약경명, 권수, 장수 그리고 천자문의 제 54번째 합차인 “칭”이 차례로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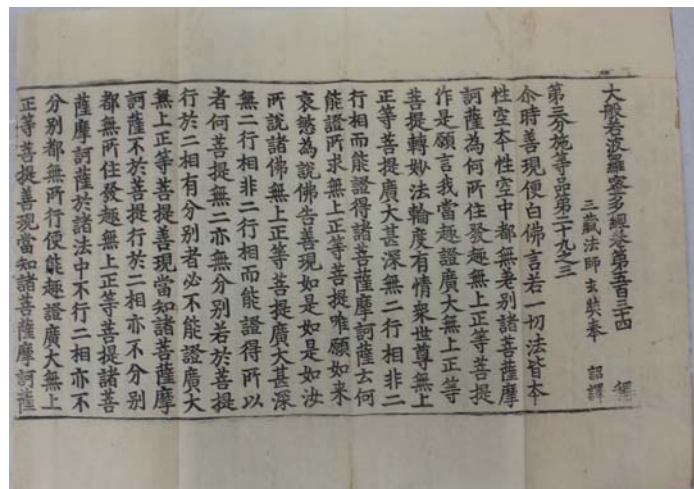
모두 24장이며, 1장은 6행씩 4폭으로 접은 절첩 형식의 장정이다. 누런색 종이표지에 먹으로 쌍행의 테두리를 그려 넣고, 그 안에 금니로 개법장진언과 경명, 권수, 천자문 합차를 “大般若波羅蜜多經卷第五百三十四 稱”과 같이 세로로 필사해 놓았다. 인쇄상태로 보아 판각(1239)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정 검토대상의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34는 판각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출된 고려본이다. 아울러 지질이나 인쇄상태가 양호하며, 보존 상태도 뛰어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국가문화재로 기 지정된 재조본 대장경에 비해 우월하거나 독자적인 특징은 보이지 않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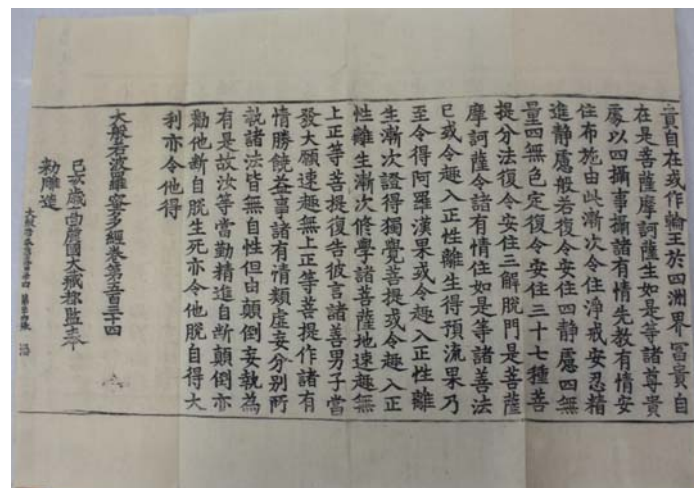
사진자료



<사진 1> 앞표지



<사진 2> 권두



< 사진 3> 권미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백자양각 재명 매죽문 선형필세필가

상기 유물은 19세기 분원리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 선형필세 검 필가로 표면에 매죽문과 시문이 양각되어 있으며 굽 바닥면에는 제작자와 시기를 알려주는 음각명이 있다. 미세한 철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으나 대체로 밝은 회청색을 띠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으며 표면에는 분원리 시기 특유의 담청색 반투명유약을 입혔는데 유면에는 빙열이 없고 광택이 은은 하다. 유약은 전면에 고르게 시유하였으며 편평한 굽바닥면은 유약을 닦아내고 고운 모래를 받쳐 구운 것으로 추정된다.

부채모양의 평면에 얇은 흙판을 붙여 입체적으로 성형하였는데 몸체의 반은 물이 고이는 필세로, 반은 세 개의 붓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을 내 필가로 구성하였다. 필가와 필세의 경계부 기벽에는 작은 물구멍이 있으며 그 위로 이룡(驪龍)의 상형물을 부착(貼花)하여 막 승천하려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부채꼴의 바깥쪽 곡면에는 매화나무와 대나무를 양각하였는데 문양은 백토이장(白土泥裝)을 얹어 부조품으로 표현하고 윤곽은 가늘게 음각하여 돋보이게 하였다. 윗면과 부채꼴 안쪽면에도 역시 백토이장을 사용하여 당나라 시인 한유(韓愈, 768~824)의 시구인 “含英咀花”와 당나라 시인 유우석(劉禹錫, 772~842)의 시구인 “水不在深有龍則靈”을 각각 전서체로 양각하였다.

편평한 굽 바닥면에는 제작과정에 새긴 “乙未六月上沅雨中, 石峯作, 又石書, 高士畫”라는 전서체 음각명이 남아있어 을미년(1835년 혹은 1895년) 6월에 석봉이 만들었으며 우석이 글을 쓰고 고사가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전해준다.

제작당시에 이룡(驪龍)의 형상이 부착된 기벽면이 일부 갈라졌으나 이후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굽 바닥면을 깨끗이 갈아냈으며 바닥면 한쪽 모서리가 미세하게(5mm가량) 결손되었다. 필세 내벽면에 먹물 등 오염이 약간 남아 있다.

이 백자 선형필세 검 필가는 조선후기 선비사회에 유행한 문방청완 취미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유물로 19세기 광주 분원리 관요에서 제작된 고급품으로 평가된다.

비록 유태의 품질이 최상급이라 보기 어려우나 만들새가 정교하고 조형적으로도 창의성이 돋보이는 유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부채를 모티브로 한 백자 문방구는 연적 등이 다소 전해지고 있으나, 이처럼 필세와 필가를 함께 구성한 예는 거의 없다. 다만, 이 유물과 동일한 형식으로 함께 제작된 또 다른 한 점이 해강도자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을미년 6월에 우석(又石)이 만들었다”는 동일한 내용의 명문이 있어 이들의 제작시기와 제작자는 물론 서로의 관계를 통해 제작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귀한 자료로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백자청화 칠보화훼문 사각병

조선 19세기 전반 분원가마에서 제작된 청화백자 사각병으로 특히, 문양 가운데 일본에서 유행한 송피룽(松皮菱)이 표현되어 있어 한일 도자양식 교류의 일면을 보여준다. 또한 굽 바닥면에 사용자가 새긴 “무신 경슈궁三”의 한글명이 음각(정각)되어 있어 제작시기와 사용처를 유추할 수 있다.

밝은 백색의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표면에는 담청색이 도는 반투명유약을 고르게 입힌 다음 접지면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구웠다. 유층 속에 미세한 기포가 있으나 투명도는 높은 편이며 유약의 용융상태가 좋아 표면에 병열이 없고 광택이 은은하다.

세장한 사각형 몸체에 물레성형한 주구를 부착하여 만든 병으로 몸체는 판성형(板成形), 혹은 속파기 후 밑판을 붙여 성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어깨부분은 모서리를 사선형으로 깎아내 조형적 완성도를 높였다.

몸체 4면에는 매화·칠보문과 화훼·수류문을 번갈아가며 청화로 그려넣었는데 특히, 모든 면에는 일본에서 송피룽이라고 부르는 지그재그형의 화창을 구성하여 그 안에 칠보와 화훼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송피룽과 화류문은 에도시대에 유행했던 것으로 조선백자에 표현된 이 유물을 제외하고 알려진 바 없다.

이 병의 정방형 굽 바닥면 중앙에는 사용자가 새긴 “무신 경슈궁三”이라는 한글명이 음각(정각)되어 있다. 경수궁(慶壽宮)은 정조의 후궁인 화빈 윤씨(和嬪 尹氏, 1765~1824)의 궁호이며 사후에 그녀의 신위를 모신 사당 역시 경수궁이다. 따라서 무신년은 1788년, 또는 1848년으로 좁혀볼 수 있는데 유물의 양식을 통해보면 이 중 19세기인 1848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명문의 진위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유물의 품격이나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당시의 명문일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이 유물은 19세기 전반(1848년 이전) 분원가마에서 제작되어 경수궁의 궁묘(宮廟)에서 사용된 의례용기로 볼 수 있다.

구연부 외면이 일부(약 1cm) 결손된 상태이며 그 외의 훼손 및 수리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굽 바닥면의 모래를 갈아내고 사용한 흔적과 함께 몸체 곳곳에 미세하게 굽힌 흔적(사용흔)이 남아있다.

상기 신청문화재는 19세기 분원 관요에서 제작된 고급품 각병으로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유태의 품질은 물론 조형적으로 뛰어난 유물이다.

특히, 문양 가운데 송피룽 화창과 화류문은 일본 에도시대에 유행한 문양으로서 외래적 요소를 수용한 19세기 조선백자의 신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또한 굽 바닥에 새겨진 “무신 경슈궁三”의 음각(정각)명을 통해서 1848년 전후 경수궁 궁묘에서 사용된 의례용기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성제묘 무신도

성제묘의 무신도의 제작시기는 조선후기와 구한말에 걸쳐 있으며 궁중 화원(畵員)을 비롯해 여러 화사의 다양한 화풍이 나타난다. 비단이나 종이바탕을 비롯해 장황방식이나 크기도 일정하지 않다.

성제묘의 주신인 관운장 내외 무신도는 관성제군(關聖帝君)의 신격에 맞게 족자의 위와 아래로 청색 능화판지 회장(回裝)을 하였고, 각종 문양과 장엄물, 금박 등으로 장식해 정중한 화려함이 있다. 방장에는 중앙의 보개(寶蓋)를 중심으로 두 개의 풍대가 걸려 있고, 고식의 보상화문(寶相花紋) 덩굴무늬들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충동 관성묘 무신도의 관운장 대고(大褲)자락에도 나타나는 것이어서 흥미롭다. 관운장 내외는 감실 안쪽의 화려한 신탐(神榻) 위의 신좌(神座)에 각각 앉아 있으며, 신탐 역시 많은 풍대가 달린 탁의(卓衣)로 둘러져 있다. 각 신격의 성격은 위엄이 넘치는 표정과 자애로운 표정으로 개성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고, 의복 문양도 관우는 칠보문(七寶紋)이고, 부인은 연화문(蓮花紋)이다. 붉은색 곤룡포를 입은 관우와 그 부인의 뒤로는 왕을 상징하는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가 하나의 큰 판 위에 장식적으로 세워져 있다.

옥천대사 무신도는 관우의 사부인 옥천대사를 모신 것이다. 흰 고깔을 쓴 맑고 기품 있는 옥천대사가 흰색 도포를 입고 섬세한 조각의 흰 석좌(石座) 위에 앉아 있다. 전체적으로 담백한 백묘(白描)로 선을 쓰고 색을 최소화 했으나, 청홍색의 방석, 붉은 옷고름, 붉은 비단 내의, 화려한 가죽신으로 화면에 강렬한 대비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관우, 관평, 주창 무신도는 관우와 관평, 주창을 각기 개별적인 화폭(畵幅)의 무신도로 그린 것이어서 흥미롭다. 삼존상(三尊像)처럼 독립적인 신앙 형태로 분화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관평은 관우와 함께 참살 당했고, 주창은 이 소식을 듣고 자결했기 때문에 같이 모셔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관우와 주창 무신도는 화사가 같고, 관평 무신도는 공필(工筆)로 그려진 것으로 화사가 다르다.

관평과 주창 무신도는 앞의 관평 무신도처럼 공필로 그려진 것으로 도상표현이 매우 정치하고 금니문양도 화려하다. 특히 관우, 관평도는 도화서 화원급의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현재 걸린 관우부부상보다 훨씬 뛰어난 화격을 보여주어 주목된다.

마부1은 무신도로는 보기 드물게 가로로 긴 그림이다. 주신인 관운장 내외 무신도에서 볼 수 있는 청색 능화판지 회장(回裝)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다소 거친 필선으로 마부들의 얼굴을 표현했지만 고졸함이 살아 있고, 옷자락 선의 강약과 굵기를 달리 하며 생동감 넘치는 묘법(描法)을 구사하고 있다. 붉은 얼룩 반점이 있는 적토마의 길고 풍만한 꼬리는 매듭져 묶여 있으며, 마구(馬具)는 왕의 마구를 갖추었다.

마부2는 위의 마부1 무신도와 화풍은 다르지만, 채찍을 쥐고 적토마를 몰고 가는 마부의 눈 흰자위 위에 서린 형형한 푸른 안광은 매우 독특한 개성이 있으며 화면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일월오봉도 1, 2 무신도는 민화풍의 그림이다.

성제묘(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호)의 총10점의 무신도는, 보개와 신탐으로 장엄된 보궁에

봉안된 관운장 내외 무신도를 중심으로 제작시기가 조선후기와 19세기말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중화원(畫員)에서 민간 화사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선시대 관제(關帝)신앙 무신도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무신도에서 궁중화원들에 의한 궁중 화풍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민화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기존 무신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제신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상세규격

명칭	수량	규격(cm) 세로 × 가로	조성연대
①관운장 내외	1점	132 × 92	19세기 말
②관우	1점	95 × 46	19세기 말
③옥천대사	1점	100 × 51.5	조선후기
④관평	1점	60 × 31.5	조선후기
⑤주창	1점	94 × 52	19세기 말
⑥관평과 주창	1점	93 × 57.3	조선후기
⑦마부1	1점	69 × 100	19세기 말
⑧마부2	1점	164 × 106	19세기 말
⑨일월오봉1	1점	180 × 70	19세기 말
⑩일월오봉2	1점	170 × 70	19세기 말

사진자료



①관운장 내외



②관우



③옥천대사



④관평



⑤주창



⑥관평과 주창



⑦마부1



⑧마부2



⑨일월오봉1



⑩일월오봉2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장충동 관성묘 무신도

관운장과 그 부인을 그린 무신도 2점은 19세기말 궁중 화원(畫員)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무신도의 백미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선과 색의 정치함이 뛰어나며 화려한 장식성이 돋보인다.

관운장 무신도의 방장에는 열은 자주색의 주름 명암이 드러나 있다. 방장 아래에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검은색 긴 수염을 쓰다듬고 있는 관운장의 얼굴은 붉은 대추빛에 봉황의 눈을 하고 있으며, 윤곽선 중심에 바림채색으로 얼굴의 요철이 깊이 있게 드러나 있다. 의자에는 호피가 둘러져 있고 족대에는 동자주들이 늘어져 있다. 왼손에는 무언가 잡고 있는데 자루 이외 부분은 옷자락 속에 숨겨져 있어 정확히 무엇인지 미상이다. 관운장의 중요 무기는 등에 찬 화살통과 함께 왼무릎에 기대인 활이다. 활에는 활시위가 상하지 않게, 매듭이 있는 보호구를 끼웠는데, 이러한 섬세한 표현은 도상적으로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흥미롭다.

전복(戰服)인 갑옷의 형태는 전형적인 무장의 도상표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금니(金泥)의 미늘을 비롯해 칠보문, 연화문, 화문 등의 각종 비단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그런데 두무(兜鍪)표현은 구한말의 신중탱 등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어서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다. 갑투를 비롯해 대철(帶鐵), 근철(筋鐵), 개철(蓋鐵), 보주(寶珠)와 삼지창을 고분돋움으로 금니를 도드라지게 올렸다. 옆드림은 미늘로 단순히 표현하지 않고 크고 둥근 하나의 원 주위에 작은 원들이 감싸고 있도록 표현했는데, 이 역시 고분돋움의 금니이다. 대철 위에는 반으로 접혀진 여의두문(如意頭紋)을 청홍의 보색 대비로 둘렀으며, 붉은 상모(象毛)가 두무 전체를 특징적으로 덮고 있다. 현재 도교국립박물관에 소장된 고종황제의 조선대원수 두무와 비교해 보면, 종교화로서의 도상적인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당대의 고종황제 두무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도상이다.

관운장 부인 무신도도 궁중 화원의 절정의 기량이 엿보이는 작품이다. 고운 정제미, 화려한 비단 문양을 비롯해 고분돋움의 금니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의자에 앉아 공수하고 있는 관운장의 부인은 마치 귀부인의 초상화처럼 기품과 위엄이 넘친다. 세 마리의 봉황이 있는 머리 장식을 하고 있으며 큰 죽잠과 용잠 두 개를 꿗고 있다. 부인의 뒤에는 한 마리의 봉황 머리 장식에 한 개의 봉황잠을 꿗은 여인이 서있다.

화면의 앞쪽에는 큰 가채에 전모(氈帽)를 쓴 여인들이 폭이 좁은 소매에 풍성한 치마를 입고 두 손을 공수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왼쪽은 연분홍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고 있으며, 오른쪽은 녹색 삼회장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있다. 전모는 조선시대 행렬도에 나타나는 의녀(醫女)나 기행나인(騎行內人)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여인은 한 폭의 미인도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도상이 당대의 또 다른 미인도로 대표할 만하며, 또한 무신도라는 영역에서 표현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신령과 장군 무신도 2점은 앞의 무신도들과 달리, 20세기 초에 활동하던 민간화사에 의해 그려진 것이다. 흰색 곤룡포를 입고 있는 신령은 백옥장식의 선추가 달린 부채를 들고 있는데, 일명, 이태조 계통의 무신도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도상이다. 얼굴 표정은 굵고 짧은 선으로 단호한 성품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무사 무신도는 말 고삐를 잡은 사람과 큰 청룡도를 든 두 사람이 표현하였는데, 말이 마치 고삐를 잡은 무사의 등에 짊어 맨 듯 표현된 것에서 전문화가

가 아닌 민간화공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관우 부부상의 크기와 완성도에 미루어 볼 때 원래 관성묘에는 뛰어난 그림이 여러 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화풍 무신도 2점의 크기를 볼 때 후대 추가로 제작된 여러 점의 그림이 있었으나 지금 단 네 점 밖에 전래하지 않는 점이 아쉽게 생각된다.

관성묘(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6호)에는 4점의 무신도가 남아 있다. 관우 무신도는 현존하는 관우 초상이나 무신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무장으로서의 위풍당당함 뿐만 아니라 관성제군(關聖帝君)으로서의 고귀한 신격이 19세기의 궁중 화원(畫員)으로 추정되는 화사에 의해 화려하고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 관우 부인 무신도 역시 동일인에 의해 그려진 매우 희귀한 도상이다. 관우부인은 귀부인의 초상화와 같은 사실적인 얼굴 표현에 기품과 위엄이 넘치며, 전모를 쓴 여인들은 한 폭의 미인도를 보는 듯한 아름다운 도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20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2점의 무신도는 화격은 떨어지지만 크기로 보아 관성묘의 위상을 보여주는 개성이 강한 도상들이다.

이들 4점의 무신도는 제작시기와 화사가 다르지만, 관성묘의 현존하는 무신도로서 일괄로 보존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관제신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세규격

명칭	수량	규격(cm) 세로×가로	조성연대
①관운장	1점	90 × 70	19세기 말
②관운장 부인	1점	89 × 71.5	19세기 말
③신령	1점	108 × 84.5	20세기 초
④장군	1점	113 × 82	20세기 초

사진자료



①관운장



②관운장 부인



③신령



④장군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1호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1.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34호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 (杏堂洞아기씨堂巫神圖)	16점	조사보고서 별도 표시	20세기 초 (1912년)	서울 성동구 행당동 128-901(김옥염)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35호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 (典農洞府君堂巫神圖)	11점	일괄 102 × 63	20세기 초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72-2 (전농동부군당 보존회)

<지정 사유>

■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는 총 16점으로, 전통 탕화와 신경향의 탕화가 만나는 접점이라 할 수 있는 구한말 탕화의 영향이 나타나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도상들이 많다. 대부분 화승의 필법과 도상적인 특징이 나타나며, 특히 산신님(1912)은 무신도로는 드물게 기년명이 있고 시기적으로 앞설 뿐만 아니라 근대기 서양화풍의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무신도는 오랜 역사를 지닌 행당동 아기씨당과 함께 앞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

조선시대 전농동 일대는 농사와 친경(親耕)의식과 그 행렬 등으로 대변되는 왕실 농업문화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 또한 서울지역 농악관련 일종의 풍속화로 서 미술사적인 가치 역시 뛰어나다. 또한 ‘·’ 자모로 쓰여진, ‘존격의 존명’과 ‘특정 장면의 도해(圖解)에 대한 기술(記述)’이 있는 방제는 무신도 연구사에 큰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2. 문화재 지정일자 : 서울시보 고시일자

3.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

행당동 아기씨당은 본당인 아기씨당에 7점의 무신도(좌신장, 삼불제석, 아기씨, 산신, 부군내외, 태산노군, 우신장)가 봉안되어 있으며, 옆 건물의 개인신당에는 14점의 무신도(일월성신, 칠성님, 삼불제석, 대사님, 산신님, 용궁부인, 숲당아기씨, 천존대감, 관성제군, 최일장군, 별상님, 대신할머니, 대신마누라님, 오방신장님)가 봉안되어 있다. 이 가운데 아기씨당의 2점(부군내외, 태산노군)을 포함해 개인신당의 14점 모두는 본래 행당동 아기씨당에 봉안되었던 것이 아니라 광진구 자양동 부군당에서 모셔온 것이다.

행당동 아기씨당의 총21점의 무신도는 전통적이거나 개량형 족자로 되어 있다. 보존상태를 보면, 아기씨당의 무신도는 양호하지만, 개인신당 무신도는 심각하다. 육안으로 화면을 판독할 수 없는 것이 많고 화폭안쪽이 그을음과 안료의 색변현상으로 얼룩진 것이 상당수 발견된다. 난곽 밖은 종이나 벽지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것이 많다. 시급히 보존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봉안 장소와 별개로 화풍과 양식적 면에서 매우 다양한 특징이 나타난다. 개인신당의 4점의 무신도(산신님, 숲당아기씨, 별상님, 대신마누라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화승(畵僧)의 필법과 도상적인 특징이 나타나며, 전통 탕화와 신경향의 탕화가 만나는 접점이라 할 수 있는 구한말 탕화의 영향도 함께 나타난다. 도상 및 배경묘사에 선과 색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키고, 유화(油畵)의 질감표현과 함께 금박(金箔)과 금니(金泥)의 사용이 많아 장식성이 두드러진다. 칠보문(七寶紋)의 구슬을 응용한 문양들도 보인다. 또한 구한말에 수입되어 새로운 색깔과 화면의 높은 은폐력으로 애용되던 장단(障丹)의 남용과 경향을 같이 해, 주황색이 주조색을 이루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전체 무신도를 제작시기, 화풍과 도상적 특징, 화면의 난곽 구성, 장황 등으로 조사해 보면, A, B, C, D의 네 유형으로 분류된다.

A유형은 아기씨당에 봉안되어 있는 5점의 무신도(좌신장, 삼불제석, 아기씨, 산신, 우신장)로 우신장 무신도의 뒷붙인 종이 위에 병신(丙申; 1956)의 기년명이 있다. 이들 무신도는 수풀당 아기씨당에도 작품이 남아 있는, 석초당(石焦堂) 봉영(捧榮)이나 그와 관련 있는 화승의 작품들로 추정된다. 이들 무신도는 도상이 간략하고 도식화가 진행되어 있으나, 존상표현이 단아하고 보색 대비와 선을 통한 면 분할이 비교적 분명해 화면이 명징하다. 또한 수풀당 무신도에서처럼 주홍 입술을 통으로 그린 다음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지 않은 묵선(墨線)의 미소선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B유형은 7점으로 아기씨당에 2점(부군내외, 태산노군)이, 개인신당에 5점(일월성신, 용궁부인, 천존대감, 대신할머니, 오방신장님)이 봉안되어 있다. 주황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있으며, 부리부리한 눈과 큼직한 이목구비의 얼굴표현을 비롯해 액자형의 화면 구성 등이 나타난다. 20세기 초에 조성된 것이다.

C유형은 개인신당에 봉안된 5점(칠성님, 삼불제석, 대사님, 관성제군, 최일장군)이다. 화면의 난곽 바깥 사방으로 한지나 벽지가 덧대어져 있다. 일부의 얼굴 표현은 초상화 기법을 보는 것처럼 매우 세밀하며 필력과 표현력이 뛰어나다. 옷깃과 의습자락에 갈색선으로 강렬하게 입체

적인 선과 주름을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20세기 초에 조성된 것이다.

D유형은 개인신당에 봉안된, 1912년 조성의 2점(산신님, 별상님)과 이때에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2점(숯당아기씨, 대신마누라님)을 포함해 4점이다. 방제(傍題)란과 화기(畵記)란을 모두 동일한 화면 구성으로 갖추고 있으며 화풍 또한 같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기년명 있는 무신도로는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의 초기 서양화를 보는 것처럼 유화의 질감표현이 강하게 나타나 매우 주목된다.

산신님의 화기는 다음과 같다.

축원」 경성부두」 모면독도」 이계향목」 동거쥬」 계유성」 니춘의」 장자무신성」 니괴홍」 차자임 자성」 니괴운」 장수발」 원」 임즈십이월」 이십구일」

위의 내용을 풀면 다음과 같다.

축원(祝願)

경성부 두모면(豆毛面) 독도(蠓島 ; 독섬) 이계(二契) 향목동 거주, 계유생(癸酉生 ; 1873년생) 이춘의, 장자 무신생(戊申生 ; 1908년생) 이괴홍, 차자 임자생(壬子生 ; 1912년생) 이괴운. 장수발원(長壽發願), 임자(壬子 ; 1912년) 12월 29일.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는 자양동 부군당에서 모셔온 16점의 무신도를 포함해 총 21점으로, 전통과 근대기 화풍의 접점에서 이룬 다양하고 흥미로운 도상들이 많다. 화승들의 세련된 철선묘(鐵線描)의 운용과 유화질감이 살아 있는 서양화풍의 영향도 나타나는데, 제작시기는 1912년, 1956년 추정, 20세기 초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산신님(1912)은 무신도로는 드물게 기년명이 있고 시기적으로 앞설 뿐만 아니라 근대기 서양화풍으로 그려진 것이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전체 무신도는 오랜 역사를 지닌 행당동 아기씨당과 함께 앞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A유형에 해당하는 5점의 무신도(죄신장, 삼불제석, 아가씨, 산신, 우신장)는 조성연대(1956년)가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한 총 16점을 대상으로 한다.

※ 상세규격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①산신님	16점	77 × 56.5	1912년
②별상님		77 × 56.5	
③숲당아가씨		77 × 56.5	
④대신마누라님		77 × 56.5	
⑤부군내외		101 × 80	20세기 초
⑥태산노군		95 × 58	
⑦일월성신		102 × 70	
⑧칠성님		102 × 70	
⑨삼불제석		102 × 70	
⑩대사님		102 × 70	
⑪용궁부인		110.5 × 58.5	
⑫천존대감		100 × 54	
⑬관성제군		100 × 75.5	
⑭최일장군		100 × 66	
⑮대신할머니		94 × 55	
⑯오방신장님		124.5 × 97	

사진자료



①산신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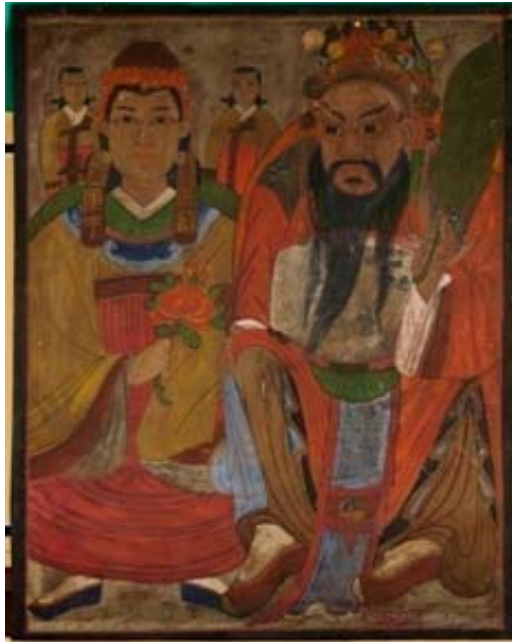
②별상님



③숯당아가씨



④대신마누라님



⑤부군내외



⑥태산노군



⑦일월성신



⑧칠성님



⑨삼불제석



⑩대사님



⑪용궁부인



⑫천존대감



⑬관성제군



⑭최일장군



⑮대신할머니



⑯오방신장님

<붙임>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

전농동 부군당의 무신도는 기년명은 없지만 20세기초에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서울지역 무신도 가운데 매우 독특한 작품군에 속한다. 6.25를 기점으로 여러 점의 무신도가 사라졌으며, 남아있는 11점의 무신도에는 아래 ‘·’ 자모를 병기(併記)해 흘려 쓴 다음과 같은 방제(傍題)가 있다.

‘거사도결입안위, 만방청일산도국괴, 삼불제석안위, 강남국호구별상마마, 정열부인송씨마누하, 조선국공신조씨대감, 덕사마더장군왕신안위, 전비취티주도국괴, 마두하청도국괴 1, 마두하청도국괴 2, 외웅만사도청결입’

이 가운데 ‘존격의 존명’이 기록된 5점의 무신도는 무신도의 일반적인 존명 표기의 예에 속하지만, 나머지 6점은 ‘특정 장면의 도해(圖解)에 대한 기술(記述)’이어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6점의 이 무신도 도상은 지금은 살펴볼 수 없는 서울지역 농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농동 부군당의 주신은 ‘부군할아버지’인 조선초의 공신 조반(趙胖)이다. 고려말 토지 개혁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던 조반이 전농동 부군당의 주신으로 모셔진 것도 농사와 무관하지 않다.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었던 조선시대에 전농동 일대가 왕실의 동적전(東籍田)에 속하고, 1909년에 순종황제가 마지막으로 거동해 소를 끌고 친경(親耕)의식을 행한 것을 보면, 비록 무신도 범주 내에서의 도해이지만, 농악의 한 단면이 엿보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아울러 화사가 부군당에 무신도 도상으로 이를 표현한 것은 종교적 성격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도상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다.

왕의 거동이나 신임 현감(사또) 행차에 영향을 받은 농악은 일반적으로 앞부분이 행렬음악으로 시작하고 뒷부분은 연희 중심이다. 이를 토대로 전농동 부군당의 무신도를 살펴보면, 전배(前陪) 즉, 앞부분인 전배치에 해당하는 대취타 행렬을 표현한 ‘전비취티주도국괴[대열 앞쪽[前陪]의 취타주(吹打奏) 행렬 장면을 담은 도국(都局; 神廳)의 깃발 또는 標幟]’은 흥겨운 현장감이 살아 있다. 왕의 거동을 상징하는 일산(日傘)과 금월부(金鉞斧)가 등장하는 ‘만방청일산도국괴[萬方 靑日傘 都局 깃발 또는 標幟]’는 자세히 도상을 보면, 왕실 위의인 홍일산(紅日傘)이 아니라 그보다 격이 낮은 청일산(靑日傘)이고, 왕실 위의인 금월부가 나타나서 위의 간의 혼재 양상이 드러나 있다. 기물을 든 이들도 병거지에 미투리를 신고 있어서 역시 민간성격이 짙은 농악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마두하청도국괴[馬頭들이 윗사람을 모시는 下廳의 지위로 행렬에 참가하는 장면이 담긴 神廳의 깃발 또는 標幟]’는 말을 관리하는 ‘마두(馬頭)’들이 말과 함께 행렬에 참여한 것이다.

농악의 후배(後陪) 즉, 뒷부분인 후배치에 해당하는 잡색(雜色)의 연희는 거사와 사당이 등장하는 ‘거사도결입안위[居士徒 乞粒 安位]’, 그리고 매사냥꾼인 양반 수알치와 꿩을 모는 털이꾼이 등장하는 ‘외웅만(방)사도청결입[外鷹坊師 都廳 乞粒]’이다. 방제와 도상으로 보면, 잡색을 맡은 이들이 사설을 주고받는 걸립농악에 해당한다.

전농동 부군당의 무신도는 배경을 채색하지 않고 등장인물 위주로 단순히 그려진 것이지만

감각적인 색채 운용을 엿볼 수 있다. 초록색이 주조색인 화면에 짙은 청색을 사용하면서도 채도가 높은 노란색과 적색을 적절히 대비시켜 전체적으로 밝고 산뜻하다. 종교화에서는 잘 쓰지 않는 기하학적인 당초문의 사용이나 무신도임을 의식해 눈동자의 위치를 임의로 달리한 것도 눈에 띈다. 과거의 전통적이고 익숙한 색채나 문양을 일신해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고자 한 화사의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실내가 아닌 야외를 배경으로 한 무신도 도상들은 인물 표현에서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고 개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연희적(演戲的) 요소와 함께 해학성도 갖추고 있어서 흥미롭다.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가 도상의 구성이나 방제의 내용으로 보면 고격의 것도 담고 있어서 이전의 무신도를 모본으로 다시 제작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현재의 무신도가 20세기초에 활동하던 기량 있는 노화사에 의해 그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조선시대에 부군당이 있는 전농동 일대가 ‘농사’와 ‘친경(親耕)의식과 그 행렬’ 등으로 대변되는 왕실 농업문화의 중심에 있었고, 일부 무신도의 방제와 도상에 반영되어 있는 특징들은 서울지역 농악관련 무신도로서 그 가치를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 일종의 풍속화로서 미술사적인 가치 역시 뛰어나다. 또한 아래 ‘·’ 자모로 쓰여진, ‘존격의 존명’과 ‘특정 장면의 도해(圖解)’에 대한 기술(記述)이 있는 방제는 무신도 연구사에 큰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앞으로 중요 자료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세규격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①거사 걸립 (거사도걸입안위)	11점	102 × 63	20세기 초
②일산 행렬 (만방청일산도국기)			
③삼불제석 (삼불제석안위)			
④강남국 호국 별상 마마 (강남국호구별상마마)			
⑤정열부인 송씨마누라 (정열부인송씨마누하)			
⑥조선국 공신 조씨대감 (조선국공신조씨대감)			
⑦대사마 대장군 왕신 (대사마대장군왕신안위)			
⑧취타 행렬 (전비취타주도국기)			
⑨마부1 (마두하청도국기 1)			
⑩마부2 (마두하청도국기 2)			
⑪매사냥 걸립 (외응만사도청걸입)			

사진자료



①거사 걸립



②일산 행렬



③삼불 제석



④강남국 호국 별상마마



⑤정열부인 송씨마누라



⑥조선국 공신 조씨대감



⑦대사마 대장군 왕인



⑧취타 행렬



㉑마부 1



㉒마부 2



㉓매사냥 걸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83호(2012.04.05.)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4호(2015.10.29.)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외부교통개선대책 사업인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1호(2017.01.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하였기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 당초 : 서초구 우면동 445-6~양재동 105-4, 우면동 464-4 ~ 우면동 634-118
- 변경 : 서초구 우면동, 양재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당초 :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외도로(태봉로, 양재천길, 송동길)확장공사
 - 변경 :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대로2-104호선, 중로2-514호선)

다. 사업의 규모(변경)

- 당초
 - 태 봉 로(대로2-1, 대로2-104) : 폭 24~33m, 연장 774m
 - 양재천길(중로1-452) : 폭 16~23m, 연장 814m
 - 송 동 길(소로3) : 폭 6m, 연장 50m
- 변경
 - 태 봉 로(대로2-104, 중로1-241) : 폭 33m, 연장 186m, 폭20m 연장 520m
 - 양재천길(중로3-180) : 폭 12m, 연장 775m
 - 송 동 길(소로3) : 폭 6m, 연장 50m
 - 양재천우안도로(중로2-514) : 폭 14~20m, 연장 1,186m

라. 사업시행자 지정(성명 및 주소)(변경)

- 당초
 - SH공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대표자 : 변창흠)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14년 6월 30일
- 변경
 -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토지세목조서 별첨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설계부(☎02-3410-7609) 또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도면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당초	우면동	636	도	979.0	11.0	SH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제척
	변경	우면동	636	도	979.0	-	SH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2	당초	우면동	636-4	도	42.0	4.0	SH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제척
	변경	우면동	636-4	도	42.0	-	SH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3	당초	우면동	산23-3	임	696.0	696.0	차광자	용산구 보광동 222-8				변경 없음 (2)
	변경	우면동	산23-3	임	696.0	696.0	차광자	용산구 보광동 222-8				
4	당초	우면동	산23-2	도	580.0	580.0	공	서초구				변경 없음 (16)
	변경	우면동	산23-2	도	580.0	580.0	공	서초구				
5	당초	우면동	137-7	도	28.0	28.0	공	서초구				변경 없음 (19)
	변경	우면동	137-7	도	28.0	28.0	공	서초구				
6	당초	우면동	산24-3	임	174.0	174.0	광산김씨퇴 촌공파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81-2				변경 없음 (3)
							조경린	군포시 산본동 1028 삼성A 5-309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도면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6	변경	우면동	산24-3	임	174.0	174.0	광산김씨퇴 촌공파우면 동종친회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81-2				변경 없음 (3)
							조경하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8-803				
							이명호	구리시 인창동 453 성원아파트 103-1301				
							조경리	군포시 산본동 1028 삼성아파트 5-309				
7	당초	우면동	산22-1 1	임	891.0	891.0	이중조	반포동 12 신반포15차APT 43-202				변경 없음 (4)
	변경	우면동	산22-1 1	임	891.0	891.0	박재남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16번길 17-3(구미동)				
8	당초	우면동	산22-1 0	임	897.0	897.0	서동권	서초구 방배동 844-27 롯데캐슬포레스트 805				변경 없음 (7)
	변경	우면동	산22-1 0	임	897.0	897.0	서동권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28길 63, 805호(방배동, 롯 데캐슬포레스트)				
9	당초	우면동	산22-9	임	2,152.0	2,152.0	조석래	성북구 성북동3-1				변경 없음 (9)
	변경	우면동	산22-9	임	2,152.0	2,152.0	조석래	성북구 성북동3-1				
10	당초	우면동	산21-5 2	임	259.0	259.0	윤태식	강남구 청담동81 효성빌라 3-202				변경 없음 (11)
	변경	우면동	산21-5 2	임	259.0	259.0	윤태식	강남구 청담동81 효성빌라 3-202				
11	당초	우면동	산21-5 3	임	12.0	12.0	윤태식	강남구 청담동81 효성빌라 3-202				변경 없음 (12)
	변경	우면동	산21-5 3	임	12.0	12.0	윤태식	강남구 청담동81 효성빌라 3-202				
12	당초	우면동	23-16	도	9.1	9.1	공	서울특별시				변경 없음 (14)
	변경	우면동	23-16	도	9.1	9.1	공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도면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3	당초	우면동	23-15	도	10.1	10.1	공	서울특별시				제척
	변경	우면동	23-15	도	10.1	-	공	서울특별시				
14	당초	우면동	23-14	도	15,124.5	15,124.5	공	서울특별시				변경 없음 (10)
	변경	우면동	23-14	도	15,124.5	15,124.5	공	서울특별시				
15	당초	우면동	14-1	대	278.0	278.0	국	보건복지부				제척
	변경	우면동	14-1	대	278.0	-	국	보건복지부				
16	당초	우면동	15-1	대	2,164.5	2,164.5	공	서울특별시				제척
	변경	우면동	15-1	대	2,164.5	-	공	서울특별시				
17	당초	우면동	17-3	대	2,451.5	2,451.5	(주)KT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제척
	변경	우면동	17-3	대	2,451.5	-	(주)KT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18	당초	우면동	23-13	도	356.6	356.6	공	서울특별시				제척
	변경	우면동	23-13	도	356.6	-	공	서울특별시				
19	당초	우면동	18-7	잡	342.6	342.6	공	서울특별시				제척
	변경	우면동	18-7	잡	342.6	-	공	서울특별시				
20	당초	우면동	18-6	잡	48.7	48.7	공	서울특별시				제척
	변경	우면동	18-6	잡	48.7	-	공	서울특별시				
21	당초	우면동	23-17	도	105.1	105.1	공	서울특별시				변경 없음 (27)
	변경	우면동	23-17	도	105.1	105.1	공	서울특별시				
22	당초	우면동	143-10	잡	247.0	247.0	공	서울특별시				제척
	변경	우면동	143-10	잡	247.0	-	공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도면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3	당초	우면동	143-6	천	516.7	516.7	공	서울특별시				변경 (13)
	변경	우면동	143-6	천	516.7	27.8	공	서울특별시				
24	당초	우면동	143-7	천	137.4	137.4	공	서울특별시				제척
	변경	우면동	143-7	천	137.4	-	공	서울특별시				
25	당초	우면동	143-8	잡	874.5	874.5	공	서초구				변경 (15)
	변경	우면동	143-8	잡	874.5	154.8	공	서초구				
26	당초	우면동	143-9	잡	174.7	174.7	공	서초구				제척
	변경	우면동	143-9	잡	174.7	-	공	서초구				
27	당초	우면동	142-1	대	324.0	32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초구 우면동 142				변경 없음 (25)
	변경	우면동	142-1	대	324.0	324.0	사단법인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28	당초	우면동	140-3	대	62.0	62.0	국	법무부				변경 없음 (21)
	변경	우면동	140-3	대	62.0	62.0	국	기획재정부				
29	당초	우면동	137-2	도	22.0	22.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8)
	변경	우면동	137-2	도	22.0	22.0	국	국토교통부				
30	당초	우면동	137-3	전	305.0	19.0	SH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제척
	변경	우면동	137-3	전	305.0	-	SH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31	당초	우면동	137-6	도	243.0	243.0	공	서초구				변경 없음 (17)
	변경	우면동	137-6	도	243.0	243.0	공	서초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도면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2	당초	우면동	636-3	도	148.0	6.0	SH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제척
	변경	우면동	636-3	도	148.0	-	SH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33	당초	우면동	152-3	전	720.0	1.0	SH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제척
	변경	우면동	152-3	전	720.0	-	SH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34	당초	우면동	636-2	도	57.0	57.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
	변경	우면동	636-2	도	57.0	57.0	국	국토교통부				
35	당초	우면동	산22-7	임	813.0	-	박재남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16번길 17-3(구미동)				추가 (5)
	변경	우면동	산22-7	임	813.0	227.2	박재남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16번길 17-3(구미동)				
36	당초	우면동	산22-2	임	834.0	-	서동권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28길 63, 805호(방배동,롯데캐슬포레스트)				추가 (6)
	변경	우면동	산22-2	임	834.0	453.8	서동권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28길 63, 805호(방배동,롯데캐슬포레스트)				
37	당초	우면동	산22-1	임	4,519.0	-	조석래	성북구 성북동3-1				추가 (8)
	변경	우면동	산22-1	임	4,519.0	863.8	조석래	성북구 성북동3-1				
38	당초	우면동	143	천	34,159.0	-	공	서울특별시				추가 (23)
	변경	우면동	143	천	34,159.0	2,172.8	공	서울특별시				
39	당초	우면동	142	대	26,452.4	-	사단법인국 교원단체총 연합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추가 (24)
	변경	우면동	142	대	26,452.4	1,929.5	사단법인국 교원단체총 연합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도면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40	당초	우면동	140	대	4,268.9	—	국	기획재정부				추가 (20)
	변경	우면동	140	대	4,268.9	172.0	국	기획재정부				
41	당초	우면동	141	대	5,971.8	—	공	서울특별시				추가 (19)
	변경	우면동	141	대	5,971.8	1,133.5	공	서울특별시				
42	당초	양재동	127-5	도	500.1	500.1	공	서울특별시				제척
	변경	양재동	127-5	도	500.1	—	공	서울특별시				
43	당초	양재동	105-25	도	43.4	43.4	공	서초구				변경 없음 (34)
	변경	양재동	105-25	도	43.4	43.4	공	서초구				
44	당초	양재동	100-2	잡	61.0	61.0	공	서울특별시				제척
	변경	양재동	100-2	잡	61.0	—	공	서울특별시				
45	당초	양재동	100-3	잡	7.6	7.6	공	서울특별시				제척
	변경	양재동	100-3	잡	7.6	—	공	서울특별시				
46	당초	양재동	102-3	학	7.9	7.9	공	서울특별시				제척
							SH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변경	양재동	102-3	학	7.9	—	공	서울특별시				
							SH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47	당초	양재동	102-4	학	241.9	241.9	공	서울특별시				제척
							SH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변경	양재동	102-4	학	241.9	—	공	서울특별시				
							SH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도면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48	당초	양재동	102-5	학	17.3	17.3	공	서울특별시				제척
							SH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변경	양재동	102-5	학	17.3	-	공	서울특별시				
							SH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49	당초	양재동	105-23	도	152.1	152.1	공	서초구				제척
	변경	양재동	105-23	도	152.1	-	공	서초구				
50	당초	양재동	105-24	도	8,277.8	8,277.8	공	서초구				변경 없음 (36)
	변경	양재동	105-24	도	8,277.8	8,277.8	공	서초구				
51	당초	양재동	105-22	도	5.2	5.2	공	서초구				제척
	변경	양재동	105-22	도	5.2	-	공	서초구				
52	당초	양재동	105-21	도	21.2	21.2	공	서초구				제척
	변경	양재동	105-21	도	21.2	-	공	서초구				
53	당초	양재동	117-8	대	8.9	8.9	롯데칠성 음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119				제척
	변경	양재동	117-8	대	8.9	-	롯데칠성 음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119				
54	당초	양재동	125-11	잡	106.4	106.4	공	서초구				제척
	변경	양재동	125-11	잡	106.4	-	공	서초구				
55	당초	양재동	105-20	도	376.1	376.1	공	서울특별시				제척
	변경	양재동	105-20	도	376.1	-	공	서울특별시				
56	당초	양재동	126-8	천	1,259.6	1,259.6	공	서울특별시				제척
	변경	양재동	126-8	천	1,259.6	-	공	서울특별시				
57	당초	양재동	126-9	천	90.8	90.8	공	서울특별시				제척
	변경	양재동	126-9	천	90.8	-	공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도면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8	당초	양재동	126-10	천	308.4	308.4	공	서울특별시				제척
	변경	양재동	126-10	천	308.4	-	공	서울특별시				
59	당초	양재동	126-11	천	22.3	22.3	공	서울특별시				제척
	변경	양재동	126-11	천	22.3	-	공	서울특별시				
60	당초	양재동	126-17	천	12.4	12.4	공	서울특별시				제척
	변경	양재동	126-17	천	12.4	-	공	서울특별시				
61	당초	양재동	126-18	잡	310.8	310.8	공	서초구				제척
	변경	양재동	126-18	잡	310.8	-	공	서초구				
62	당초	양재동	126-15	잡	3,662.3	3,662.3	공	서초구				제척
	변경	양재동	126-15	잡	3,662.3	-	공	서초구				
63	당초	양재동	126-16	잡	22.3	22.3	공	서울특별시				제척
	변경	양재동	126-16	잡	22.3	-	공	서울특별시				
64	당초	양재동	126-1	천	71,544.6	-	공	서울특별시				추가 (35)
	변경	양재동	126-1	천	71,544.6	9,957.5	공	서울특별시				
65	당초	양재동	126	천	32,700.1	-	공	서울특별시				추가 (28)
	변경	양재동	126	천	32,700.1	6,704.0	공	서울특별시				
66	당초	양재동	200	공	74,385.0	-	공	서초구				추가 (29)
	변경	양재동	200	공	74,385.0	2,869.3	공	서초구				
67	당초	양재동	201-2	도	8,783.3	-	공	서울특별시				추가 (30)
	변경	양재동	201-2	도	8,783.3	295.6	공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도면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68	당초	양재동	201	공	5,971.2	—	공	서울특별시				추가 (31)
	변경	양재동	201	공	5,971.2	457.1	공	서울특별시				
69	당초	양재동	126-3	천	97.8	—	공	서울특별시				추가 (32)
	변경	양재동	126-3	천	97.8	31.1	공	서울특별시				
70	당초	양재동	126-4	천	3,641.4	—	공	서울특별시				추가 (33)
	변경	양재동	126-4	천	3,641.4	171.5	공	서울특별시				
71	당초	양재동	227-1	잡	13,188.1	—	공	서울특별시				추가 (37)
	변경	양재동	227-1	잡	13,188.1	432.8	공	서울특별시				
72	당초	양재동	227	도	18,667.4	—	공	서울특별시				추가 (38)
	변경	양재동	227	도	18,667.4	569.1	공	서울특별시				
73	당초	양재동	227-2	잡	13,602.2	—	공	서울특별시				추가 (39)
	변경	양재동	227-2	잡	13,602.2	420.5	공	서울특별시				
74	당초	양재동	236	공	146,396.5	—	공	서울특별시				추가 (40)
	변경	양재동	236	공	146,396.5	2,117.0	공	서울특별시				
75	당초	양재동	233	천	48,275.6	—	공	서울특별시				추가 (41)
	변경	양재동	233	천	48,275.6	110.8	공	서울특별시				
76	당초	양재동	237	공	4,507.5	—	공	서초구				추가 (42)
	변경	양재동	237	공	4,507.5	57.2	공	서초구				
77	당초	양재동	238	도	26,434.5	—	공	서울특별시				추가 (43)
	변경	양재동	238	도	26,434.5	135.6	공	서울특별시				
합계	당초	59필지			44,794.8							
	변경	42필지			61,421.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3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2015.09.24)로 결정·변경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02.0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석촌동 183-2번지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를 적용 받고자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858,791	-	858,791	서고397호 ('84.7.4)	-

I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건축물의 용도
 - 1) 건축물의 불허용도(전층) : 변경없음
 - 2) 건축물의 권장용도 : 변경없음
 - 3) 건축물의 지정용도 : 변경

■ 기정

구분	1층 지정용도	비 고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건축자재 등 제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표구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석촌호수길 간선부 ^{주1)}

주1) 가구번호 E1-3~4, E2-1~2, E3-1~4 중 석촌호수길에 대지경계선이 면한 필지(삼학사길, 송파대로, 오금로 및 이면도로에 면한 필지 제외)

■ 변경

구분	전층 지정용도	1층 지정용도	비 고
1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건축자재 등 제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표구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석촌호수길 간선부 ^{주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2호 가목 부대시설(위락시설제외)^{주2)}	-	•대상지역 : 석촌동 183-2

주 1) 가구번호 E1-3~4, E2-1~2, E3-1~4 중 석촌호수길에 대지경계선이 면한 필지(삼학사길, 송파대로, 오금로 및 이면도로에 면한 필지 제외)

2) 지정용도(전층)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용적을 완화 적용 시에 한하여 적용하며, 향후 타 용도로 용도변경이 불가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석촌동 183-2번지	지정용도 신설	• 용적을 완화를 통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의 합목적성을 위하여 지정용도로 신설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1)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2) 용적률 계획 : 변경

구분	기정			변경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지정용도 외 용도	지정용도	
준주거지역 (석촌동 183-2번지)	300%이하	40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300%이하	400%이하	48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상한용적률 산식은,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이내 또는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이내 적용							

주) 지정용도에 대한 허용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건축 시에 한하여 적용하며, 기준용적률로부터 허용용적률 400%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정한 용적을 인센티브 유형(관광호텔 권장용도 중복적용 불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사유	비 고
석촌동 183-2번지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	

3) 높이 계획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건축선·배치·형태 :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방이지역 용도지역 상향가능지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6. '방이지역 이면부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없음

7. 인센티브 항목 : 변경없음

③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④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사항

■ 다음사항을 반영

- 계획부지의 입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축계획 수립 시 석촌호수 주변경관 고려하여 차폐감 최소화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계획 및 디자인 향상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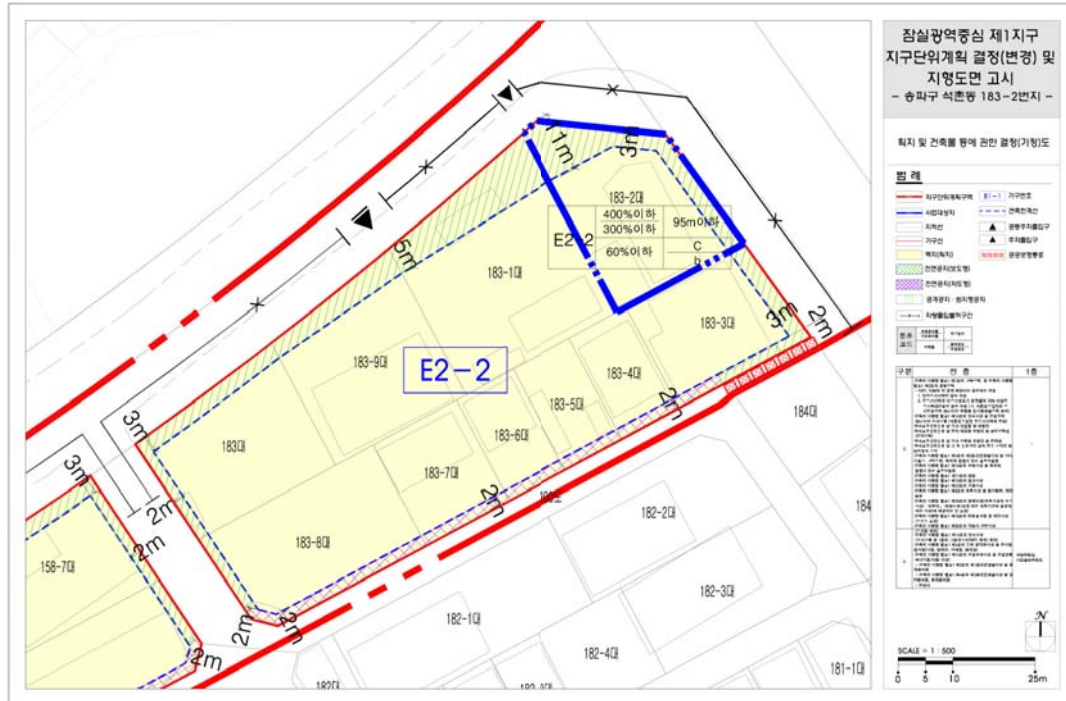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임으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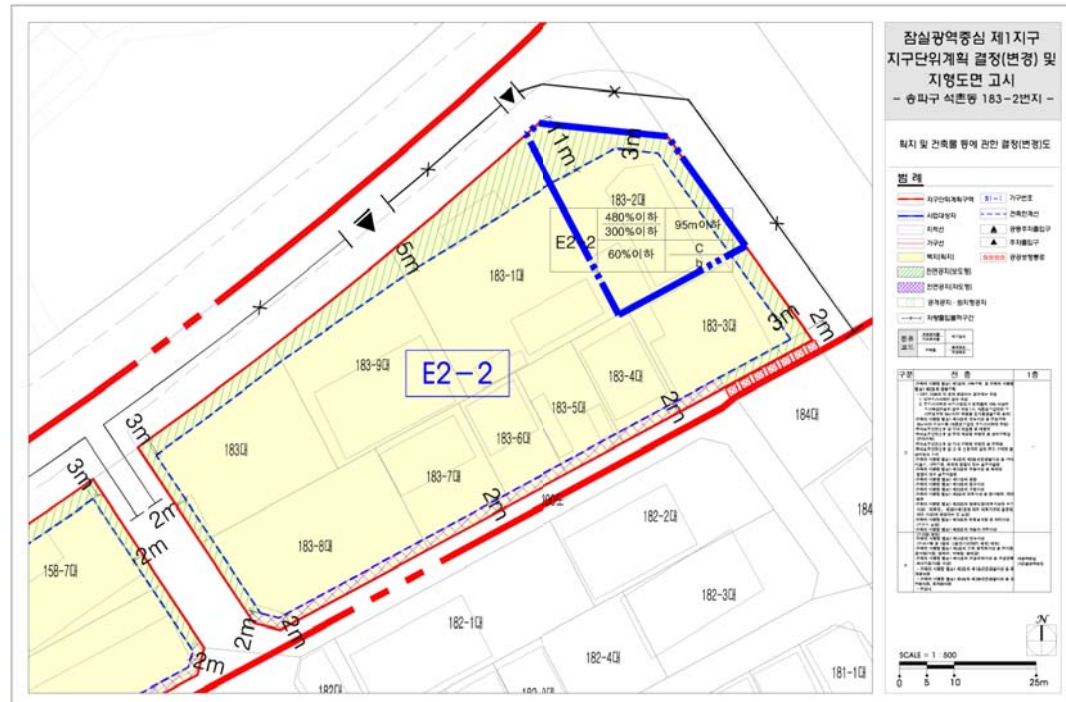
V. 열람장소 : 송파구 도시계획과(☎02-2147-300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8)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74호

환경건설탕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건설탕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아이피씨앤비
2. 대 표 자 : 송인창(1965.02.12.)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길 14, 1016호
4. 업 종 : 환경건설탕회사
5. 등록번호 : 제118호
6. 등록일자 : 2017. 4. 3.
7. 전화번호 : 02-564-548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75호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 나. 위치(면적)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1 일원 (면적 : 266,304㎡)
 - 다.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2. 공개기간 및 방법
 - 가. 공개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나.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의견 제출
 -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첨부된 주민의견서 양식으로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 별도 첨부
5. 주민의견 제출양식 : 별도 첨부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83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승인일자 : 2017. 4. 3.
2.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주요내용

시설명	사업 시행자	위 치	형질변경 면적(㎡)			건축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삼육고등학교 교사시설	학교법인 삼육학원	노원구 공릉동26-38	23,800	23,800	증감 없음	17,249.73	16,777.98	감 471.75

3.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2133-2040), 노원구 공원녹지과(2116-3972)
4. 열람기간 : 시보게재 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8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	엠엘파트너스(주)	이상희	2017.03.03.	서울170022	강남구선릉로801,604호 (신사동,배강빌딩)	500,000	신규등록
2	(주)두승인베스트먼트	김경민	2017.03.10.	서울170023	강남구테헤란로25길6-9,5층 562호(역삼동,석암빌딩)	300,000	신규등록
3	(주)라임도시개발	김선채	2017.03.03.	서울170024	영등포구가마산로364,703호 (대림동)	300,000	신규등록
4	(주)효자촌	김용경	2017.03.07.	서울170025	강남구 학동로 201, 331호(논현동)	300,000	신규등록
5	죽산피에프비(주)	선진추	2017.03.14.	서울170026	영등포구국제금융로10,35층 (여의도동,ThreelFC)	5,000,000	신규등록
6	(주)설원개발	임정명	2017.03.14.	서울170027	강남구학동로342,815호 (논현동에스케이허브)	500,000	신규등록
7	주)더디벨로퍼	조규진	2017.03.14.	서울170028	강남구 연주로 122, 509호(도곡동)	300,000	신규등록
8	배곧랜드마크피에프 비(주)	최정호	2017.03.15.	서울170029	강남구강남대로310,101호 (역삼동,유니온빌딩)	5,000,000	신규등록
9	(주)정연씨앤디	김주만 남태선	2017.03.16.	서울170030	성동구 장터길 23-1(금호동3가)	300,000	신규등록
10	유호산업개발(주)	유정호 유정환	2017.03.20.	서울170031	강남구 테헤란로19길 70(역삼동)	4,600,000	신규등록
11	더효종합개발(주)	조동휘	2017.03.21.	서울170032	강서구 화곡로55길 43,401호(화곡동)	850,000	신규등록
12	투탑건설(주)	나윤화	2017.03.24.	서울170033	강서구방화대로34길92,207호 (방화동,불해빌딩)	505,000	신규등록
13	(주)경도산업개발	이명규	2017.03.27	서울170034	강남구테헤란로311,1608호 (역삼동,아남타워)	300,000	신규등록
14	(주)엠앤에스큐퍼	김명인	2017.03.30.	서울170035	서초구 바우피로 144, 3층(양재동)	300,000	신규등록
15	(주)참좋은월드	길경자	2017.03.31.	서울170036	강남구영동대로85길28,8층 (대치동,성원타워)	300,000	신규등록
16	자이종합건설(주)	이호연	2017.03.17.	서울140043	강서구강서로56가길63,402호 (등촌동,상원빌딩)	전문인력부족	폐업
17	광진개발(주)	성만기	2017.03.17.	서울070001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구의동)	사업포기	폐업
18	(주)범건축종합 건축사무소	송기봉	2017.03.09.	서울130047	강남구강남대로286 (도곡동,부영빌딩)	전문인력부족	폐업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84~468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9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내무부고시 제449호(1958.11.03.) 및 건교부고시 제198호(1971.04.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건교부고시 제147호(1986.04.10.)로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되고 강동구고시 제2015-65호(2015.06.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4호(2016.01.14.)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강동구고시 제2017-29호(2017.03.0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여,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 예정인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단지사업1부 및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사업
- 명 칭 :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산88-3번지 외 108필지 일대

다. 사업시행 규모

- 내 용 : 도로확장 및 신설
- 규 모 : 도로확장 폭 50~93m, 연장 13,86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일 : 2017년 04월(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 준공일 : 2019년 04월(2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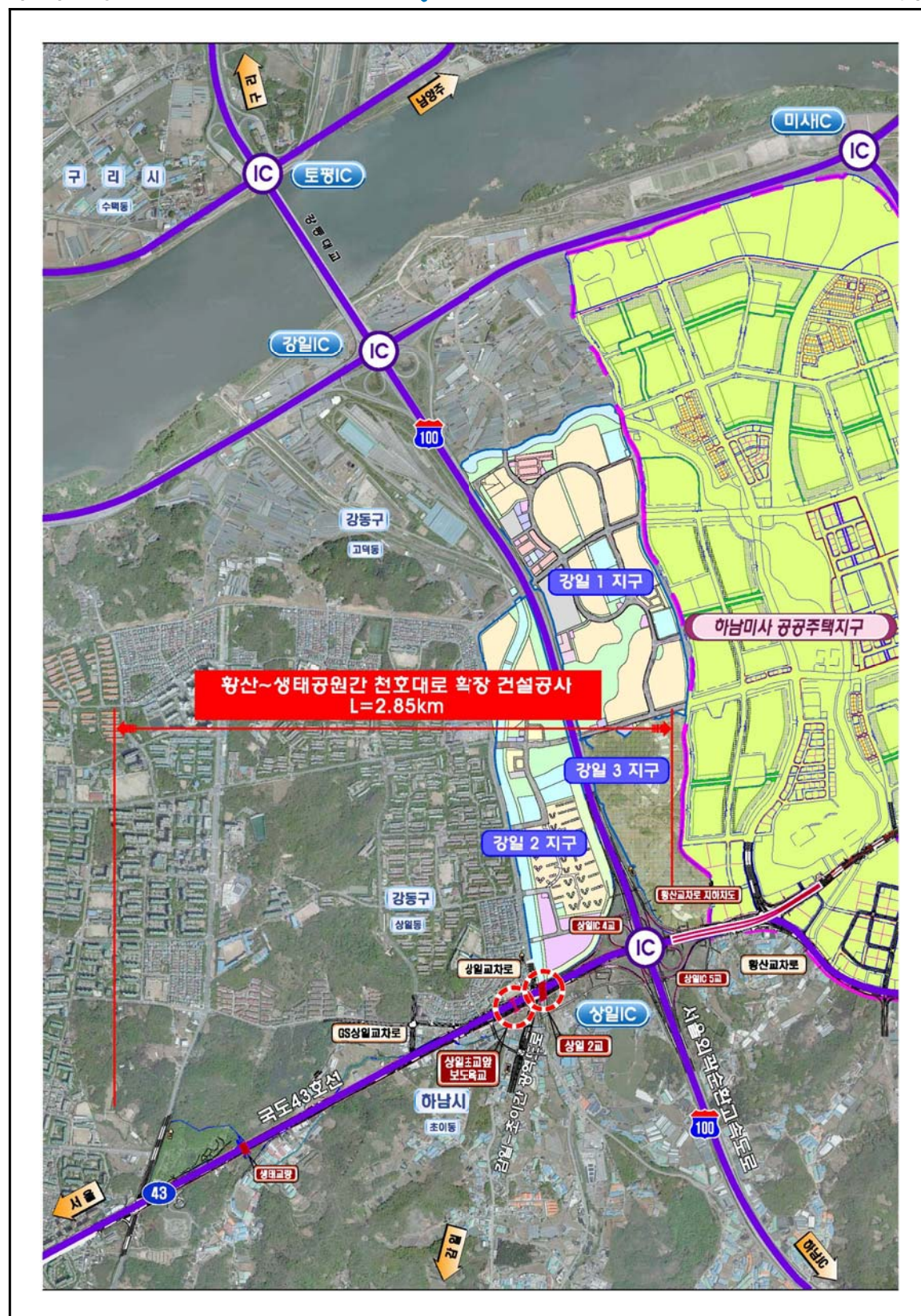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사. 위치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단지사업1부 (☎031-790-9335)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02-2133-808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광로2-5호선)

일련 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둔촌동	산88-1	임	1,496	485	산88-3	임	485	403	-82	공	서울특별시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2	둔촌동	산88	임	4,114	1,209	산88-2	임	1,186	1,186	-23	김호수	청주시 병영동 1141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3	둔촌동	산91	임	36	36	산91	임	36	36		구예순외9인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294	국	남양주세무서	압류	변경없음
4	둔촌동	산87	임	343	343	산87	임	343	343		주정대외3인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54	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압류	변경없음
5	둔촌동	산86	임	31,120	1,212	산86-1	임	1,193	1,183	-29	공	서울특별시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6	둔촌동	산85	공	220	86	산85-1	공	87	69	-17	공	서울특별시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7	둔촌동	558	공	5,902	1,191	558-10	공	1,172	626	-565	공	서울특별시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8	둔촌동	산78	공	4,432	562	산78-1	공	285	285	-19	공	서울특별시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9	둔촌동	산77	공	1,073	800	산77-2	공	258	258		공	서울특별시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10	둔촌동	산77	공	1,073	800	산77-1	공	754	754	-46	공	서울특별시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11	둔촌동	557-3	공	37	37	557-3	공	37	37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2	둔촌동	557-4	공	93	93	557-4	공	93	93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3	둔촌동	557	전	3,018	581	557-5	전	559	559	-22	정명숙	강남구 방배동 807-10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14	둔촌동	557-2	전	9	9	557-2	전	9	9		방희경외 2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3-14 402호	국	역삼세무서	압류	변경없음
15	둔촌동	557-1	전	13	13	557-1	전	13	13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6	둔촌동					산76-1	임	100	100		자산조씨이조 참판진상지식 계손종친회	서울 강동구 길동 305-3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17	둔촌동	산76	임	16,767	531	산76-2	임	559	559	128	자산조씨이조 참판진상지식 계손종친회	서울 강동구 길동 305-3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18	둔촌동	산75	임	582	582					-582						산72-1 합병으로 인한 해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광로2-5호선)

일련 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9	둔촌동	산79	임	6,942	51	산79-1	임	51	51		김영옥외9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86 강선마을 1607-602			변경없음
20	둔촌동	산73	공	1,601	1,337				-1.3 37						산72-1 합병으로인한해제
21	둔촌동	산74-1	임	186	186	산74-1	임	186	186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2	둔촌동	산74	임	3,545	522	산74-3	임	547	547	35	이성용	서대문구 신영동 111-2			분할측량에따른면적조정
23	둔촌동					산74-2	임	10	10		이성용	서대문구 신영동 111-2			
24	둔촌동	산72	공	171	171	산72-1	공	2,127	2,127	1,956	공	서울특별시			산75,산73 합병
25	둔촌동	산71	임	284	217	산71-1	임	251	251	34	문중용	성동구 구의동 257-6			분할측량에따른면적조정
26	둔촌동	산70	임	2,196	282	산70-1	임	309	309	27	이삼순외1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 154-3 위너스아파트 2-601			분할측량에따른면적조정
27	둔촌동	산69	공	159	159	산69	공	159	159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8	둔촌동					산74	임	2,988	14	14	이성용	서대문구 신영동 111-2			금회추가
29	둔촌동					산88	임	2,928	99	99	공	서울특별시			금회추가
30	둔촌동					산86	임	29,927	242	242	공	서울특별시			금회추가
31	둔촌동					산72	공	227	143	143	공	서울특별시			금회추가
32	둔촌동					산77	공	319	292	292	공	서울특별시			금회추가
33	둔촌동					산78	공	3,889	268	268	공	서울특별시			금회추가
34	둔촌동					산76	임	16,108	11	11	직산조씨이조 참판진상지적 계손종친회	서울 강동구 길동 305-3			금회추가
35	둔촌동					산79	임	6,891	8	8	김영옥외9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86 강선마을 1607-602			금회추가
36	상일동	435-1	천	3,445	58	435-1	천	3,445	58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37	상일동	359-3	도	19,870	57	359-3	도	19,870	57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광로2-5호선)

일련 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지번	지목	지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 계	
38	상일동	367-5	천	1,300	367-5	천	1,300	154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39	상일동	443-5	주	3,001	443-12	주	634	634	(주)지에스 칼텍스	서울강남구역삼동 679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조정
40	상일동	443-8	주	921	443-13	주	331	331	(주)지에스 칼텍스	서울강남구역삼동 679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조정
41	상일동	443-9	답	945	443-14	답	226	226	정대호	강남구도곡동 467-18 우성캐릭터빌A 1907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조정
42	상일동	442-13	답	1,089	442-20	답	233	233	박진철외 2인	서울송파구신천동 7-18 롯데캐슬골드 102-1903	송파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15-4	근저당 권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조정
43	상일동	442-1	대	330	442-18	대	299	299	박진철외 2인	서울송파구신천동 7-18 롯데캐슬골드 102-1903	송파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15-4	근저당 권	변경없음
44	상일동	442-8	답	28	442-8	도	28	28	공	하남시				지목변경
45	상일동	441-4	답	2	441-4	도	2	2	공	하남시				지목변경
46	상일동	441-5	도	132	441-7	도	49	49	공	강동구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조정
47	상일동	435-3	도	198	435-10	도	71	71	공	강동구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조정
48	상일동	436-17	대	122	436-17	도	99	99	공	하남시				지목변경
49	상일동	436-7	답	494	436-21	대	33	33	주명순외1 인	서울시 중랑구 동일동 139다길 5	한국특수 형강(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안로77번길 52(학정동)	근저당 권	지목변경
50	상일동	436-9	대	117	436-23	대	171	171	주명순	중랑구중화동 309-32	한국특수 형강(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안로77번길 52(학정동)	근저당 권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조정
51	상일동	436-8	답	781	436-22	답	384	384	김정은외 1인	경기도광주군동부풍산 98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조정
52	상일동	431-3	답	1,714	431-10	답	167	167	김정근외1 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317-507	(주)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상권	근저당 권, 지 상권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조정
53	상일동	431-4	대	191	431-4	대	191	191	이원우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240 2동 1202호(신동아아파트)	(주)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이매동지점)	근저당 권	변경없음
54	상일동	430-5	답	826	430-7	답	389	389	임광순외 2인	상일동 430-5	구천세마 을금고	서울 강동구 하일동 351-3	근저당 권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조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광로2-5호선)

일련 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5	상일동	428-4	대	330	197	428-9	대	194	194	-3	원길연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93 105동 1301호(가락쌍용아파트)	(주)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상일동지점)	근저당권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56	상일동					428-2	답	8	8	8	신동수	상일동 428-1				당초누락
57	상일동	428-5	대	1,110	999	428-10	대	990	990	-9	박장현	강남구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105-707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58	상일동	432-1	답	1,629	65	432-14	답	65	65		이종환	서울 강동구 둔촌동 546신성은하수아파트 101-1208				변경없음
59	상일동	360-10	도	1,405	528	360-12	도	514	514	-14	국	국토해양부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60	상일동	427-11	잡	201	108	427-13	잡	108	108		공	강동구				변경없음
61	상일동	427-10	잡	27	25	427-10	잡	27	27	2	최광수	의정부시 용현동 38 그랜드A 102-406				면적조정
62	상일동	427-6	도	9	9	427-6	도	9	9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63	상일동	425-2	천	3,295	873	425-15	천	852	852	-21	공	서울특별시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64	상일동	426-10	천	129	129	426-10	천	129	129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65	상일동	389	도	93,281	2,777	389-3	도	2,777	2,777	6	국	국토교통부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66	상일동	362-6	답	1,636	681	362-8	답	686	686	5	이재환	하남시창우동 520 은행쌍용A 116-1103	중소기 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 지상권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67	상일동	12-3	도	25,841	134	12-10	도	136	136	2	국	국토해양부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68	상일동	399-6	구	226	135	399-11	구	134	134	-1	공	서울특별시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69	상일동	423	대	264	145	423-4	대	142	142	-3	이재환	하남시창우동 520 은행쌍용A 116-1103	중소기 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길동지점)	근저당권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70	상일동	443-11	답	21	21	443-11	답	21	21		공	강동구				변경없음
71	상일동	441-6	답	138	138	441-6	도	138	138		공	하남시				지목변경
72	상일동	442-11	대	115	115	442-9	대	42	42	-73	공	강동구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광로2-5호선)

일련 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 계
73	상일동 442-14	차	175	2	442-21	차	2	2	박진철외 2인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8롯데캐슬골드 102-193	송파농업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15-4	근저당 권	변경없음
74	상일동 442-9	답	45	12	442-22	답	11	11	공	하남시				분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75	상일동 436-10	대	8	7	436-24	대	7	7	조남식	중랑구 중화동 309-32	한국특수형 강(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77번길 52(학정동)	근저당 권	변경없음
76	상일동 436-16	대	79	79	436-16	도	79	79	공	하남시				지목변경
77	상일동 436-15	답	130	130	436-15	도	130	130	공	하남시				지목변경
78	상일동 431-5	답	107	107	431-5	도	107	107	공	하남시				지목변경
79	상일동 431-8	대	121	121	431-8	대	121	121	김정근외 1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317-507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1 가)	근저당 권	변경없음
80	상일동 431-7	대	7	7	431-7	대	7	7	공	하남시				변경없음
81	상일동 431-6	답	36	36	431-6	도	36	36	공	하남시				지목변경
82	상일동 431-9	대	18	18	431-9	대	18	18	김정근외 1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317-507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을지로1가)	근저당 권	변경없음
83	상일동 430-6	답	27	27	430-6	도	27	27	공	하남시				지목변경
84	상일동 8-2	도	15,208	1,585	8-4	도	1,625	1,625	국	국도해양부				분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85	상일동 427-9	갈	141	77	427-12	갈	77	77	권영숙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정학리 350-1 청학주공A 603-1804	서울경기양 문축산업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92(천호동)	근저당 권	변경없음
86	상일동 432-5	답	370	5	432-16	답	5	5	공	하남시				변경없음
87	상일동 432-2	답	1,043	141	432-15	답	138	138	공	하남시				분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88	상일동 428-6	대	122	122	428-6	대	122	122	공	하남시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복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광로2-5호선)

일련 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9	상일동	360-8	잡	24	24	360-8	잡	24	24		공	하남시					변경없음
90	상일동	360-3	잡	496	496	360-3	잡	496	496		공	하남시					변경없음
91	상일동	427-3	잡	347	347	427-3	잡	347	347		공	하남시					변경없음
92	상일동	428-8	대	288	288	428-8	대	288	288		공	하남시					변경없음
93	상일동	427-4	잡	3	3	427-4	잡	3	3		공	하남시					변경없음
94	상일동	432-12	답	312	13	432-17	답	13	13		공	하남시					변경없음
95	상일동	400-1	답	3,844	706	400-3	답	730	730	24	김학선	성동구송정동 73-21					본할측량에다른면적조정
96	상일동	402-4	잡	9	9	402-4	잡	9	9		임용균외 1인	경기도하남시망월동 301					변경없음
97	상일동	403-2	전	5,135	259	403-12	전	260	260	1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37-2					본할측량에다른면적조정
98	상일동	403-8	도	1,289	1,187	403-13	도	1,255	1,255	68	국	국토해양부					본할측량에다른면적조정
99	상일동					399-9	구	31	31	31	공	강동구					당초누락
100	상일동	12-2	도	17,639	78	12-2	도	17,639	78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01	상일동					산10-5	임	132	132	132	박종희외 1인	서울강동구상일동 20-1					당초누락
102	상일동					산8-9	임	22	22	22	허정산	강남구포이동 72					당초누락
103	상일동	산10-7	도	57	57	산10-7	도	57	57		국	국토해양부					변경없음
104	상일동					436-25	대	22	22	22	공	서울특별시					금회추가
105	상일동					436-18	대	12	12	12	공	서울특별시					금회추가
106	상일동					442-11	도	73	73	73	공	강동구					금회추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면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광장167호)

일련 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07	상일동	399-6	구	226	61	399-11	구	134	61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08	상일동	423	대	264	104	423-4	대	142	104		이재환	하남시창우동 520 은행상용A 116-1103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길동지점)	근저당 권	변경없음
109	상일동	400-1	답	3,844	706	400-3	답	730	730	24	김학선	성동구송정동 73-21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조정
110	상일동	402-4	잡	9	9	402-4	잡	9	9		임용균외 1인	경기도하남시망월동 301				변경없음
111	상일동	403-2	전	5,135	259	403-12	전	260	260	1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37-2	하남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하남시 덕평동 733(역말지점)	근저당 권, 지 상권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조정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91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1) 후원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오회응암점	서울 후-제653호	문승준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 4층 (역촌동, 다인빌딩) (02-305-5249)	상 호 (‘17.02.20)	오회수색점	오회응암점
				소재지 (‘17.02.20)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242, (수색동)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 4층 (역촌동, 다인빌딩)
대왕상사	서울 후-제446호	채영기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3길 19, 806호 (화곡동, 강서포스텔) (010-7124-7912)	소재지 (‘13.08.14.)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6길 32, 806호 (화곡동)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3길 19, 806호 (화곡동, 강서포스텔)
강동건강생활	서울 후-제129호	신양식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145길 13, 2층(명일동) (02-474-1632)	소재지 (‘17.03.06.)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90, 201호 (명일동)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145길 13, 2층(명일동)
아모레퍼시픽 마포월드지사	서울 후-제18호	유지환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 79, 3층 301호(망원동) (02-3142-0841)	상 호 (‘17.01.16.)	아모레퍼시픽마포월드 지사, 휴에스테틱	아모레퍼시픽 마포월드지사
리엔케이 서초지사	서울 후-제496호	강원숙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3길 25, 2층 (사당동) (010-3062-3456)	상 호 (‘16.02.20.)	웅진코웨이 서초1지사	리엔케이 서초지사
				소재지 (‘16.02.20.)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4길 15, 3층 (방배동)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3길 25, 2층 (사당동)
김정문알로에 청량리영업소	서울 후-제50호	윤 숙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45길 7, 1층 (청량리동) (02-965-4902)	전화번호	02-495-7766	02-965-4902
				소재지 (‘17.03.06.)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49, 4층 (청량리동)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45길 7, 1층 (청량리동)
마임우이지사	서울 후-제78호	허미경	서울시 강북구 하천로 1162, 2층(수유동) (02-997-5100)	소재지 (‘17.03.15)	서울시 강북구 하천로 1174, 2층 (수유동)	서울시 강북구 하천로 1162, 2층(수유동)

2) 다단계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주)아프로존	서울-제780호	김봉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2길 7, (역삼동) (02-538-2580)	소재지 (‘17.02.0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81길 42, (역삼동)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2길 7, (역삼동)
(주)파낙셀티알씨	서울-제809호	오현아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5, 5층, 6층(서초동, 엔데버빌딩) (02-552-4456)	소재지 (‘17.02.15)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5층 6층(서초동, 전자부품연구원빌딩)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5, 5층, 6층(서초동, 엔데버빌딩)
(주)파이진글로벌	서울-제812호	구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8, 10층 (역삼동, 동우빌딩) (02-501-1078)	상 호 (‘17.02.21)	(주)이젠코스웰	(주)파이진글로벌
				소재지 (‘17.02.21)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8, 5층 (역삼동, 타워83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8, 10층 (역삼동, 동우빌딩)
(주)땡큐웨이	서울-제828호	지윤조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30길 73, 3층, (역삼동) (02-587-9609)	상 호 (‘17.02.21)	(주)위즈앤코리아	(주)땡큐웨이
(주)빅스카이글로벌	서울-제857호	박옥남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1, 6층(삼성동, 서정빌딩) (1522-6615)	소재지 (‘17.03.14)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29, 4층 (삼성동, 위즈빌딩)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1, 6층 (삼성동, 서정빌딩)
(주)엘파이버엠코퍼레이션	서울-제802호	김영균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95길 15, 8층, (삼성동, 천해빌딩) (1800-8595)	소재지 (‘17.03.13)	(주)엔이엑스티	(주)엘파이버엠코퍼레이션
(주)프리먼스	서울-제861호	이은주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3길 8, 1층 (논현동, 환운빌딩) (02-6949-6944)	소재지 (‘17.03.28)	02-9649-6944	02-6949-6944

3) 다단계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주)조은사람들	서울 - 제730호	조용덕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8, 2층(봉천동, 유양빌딩) (02-538-5533)	'17.02.28.	공제조합해지
엠엔스 인터내셔널(주)	서울 - 제804호	정인화 허민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7, 8층(역삼동) (02-1661-3599)	'16.12.27.	공제조합해지
(주)미랜세상	서울 - 제778호	김완재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3, 202호(잠실동, 위너스빌딩) (02-421-8584)	'17.03.10.	공제조합해지
(주)엘파이브엠 코퍼레이션	서울 - 제802호	김영균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95길 15, 8층(삼성동, 천해빌딩) (1800-8595)	'16.12.27.	공제조합해지

4)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유니베라	서울 후- 제411호	한동애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32, 301호(성산동) (02-307-7014)	'17.03.02.	개인사정
녹십초알로에 등촌지사	서울 후- 제152호	양승자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59길 20, 201호(등촌동) (02-2644-0090)	'17.03.03.	사업부진
유니베라 시흥대리점	서울 후- 제319호	한세희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28, 201호(독산동) (02-892-7828)	'17.03.06.	개인사정
마임청담	서울 후- 제255호	이에스터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3길 8, 지하1층(청담동) (02-3444-0248)	'16.12.02.	영업부진
다미셀 코스메틱	서울 후- 제656호	길영희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87길 15, 2층(성내동) (02-483-7757)	'17.03.13.	영업부진
송파뷰티리더스	서울 후- 제603호	김경구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46길 29, 3층 301호(가락동, 시온빌딩) (02-404-0784)	'17.03.30.	경영악화
케지씨(KGC)이체 연희대리점	서울 후- 제521호	김순용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11길 22, 1-1(연희동) (02-338-6066)	'17.03.30.	개인사정
마임신림 동부지사	서울 후- 제262호	이미숙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51길 41, 2층(신림동) (02-802-0311)	'17.03.27.	경영악화
정관장동인비	서울 후- 제522호	김태연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50, 504호 (불광동, 경인빌딩) (02-2265-5988)	'16.12.30.	경영악화
리엔케이	서울 후- 제143호	안성운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4가길 8-5, (공덕동) (02-703-7757)	'17.01.30.	영업악화
마임무학 동부지사	서울 후- 제506호	문정호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52-1, 301호(도선동) (02-468-7589)	'16.12.28.	대표자 사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7) 또는 민생경제과(☎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99호

제3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기본계획 공고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장

1. 공 고 명 : 제3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기본계획
2.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3. 공고내용 : 제3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내용
 - 계획기간 : 2017년~2021년(5년간)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체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기본계획 개요
 - 서울특별시 기초조사 분석
 - 제2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추진성과 분석
 -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 교통안전정책 목표설정
 - 국외 교통안전정책 및 추진사업
 - 교통안전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계획
 -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02-2133-244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01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공고

도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구 분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널
가. 도로의 종류	특별시도	특별시도
나. 노 선 명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널

2.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구간 및 개요

구 분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널
가. 구 간	영등포구 양화동 10-2 ~ 금천구 독산동 706-1(금천IC)	강서구 신월동 835(신월IC) ~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나. 개 요	왕복 4차로(소형차전용도로) 연장 10.33km	왕복 4차로(소형차전용도로) 연장 7.53km 진·출입연결로 1개소
다. 도로관리청	서울특별시,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서울특별시, 서울터널(주)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사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

5. 해당구간에 있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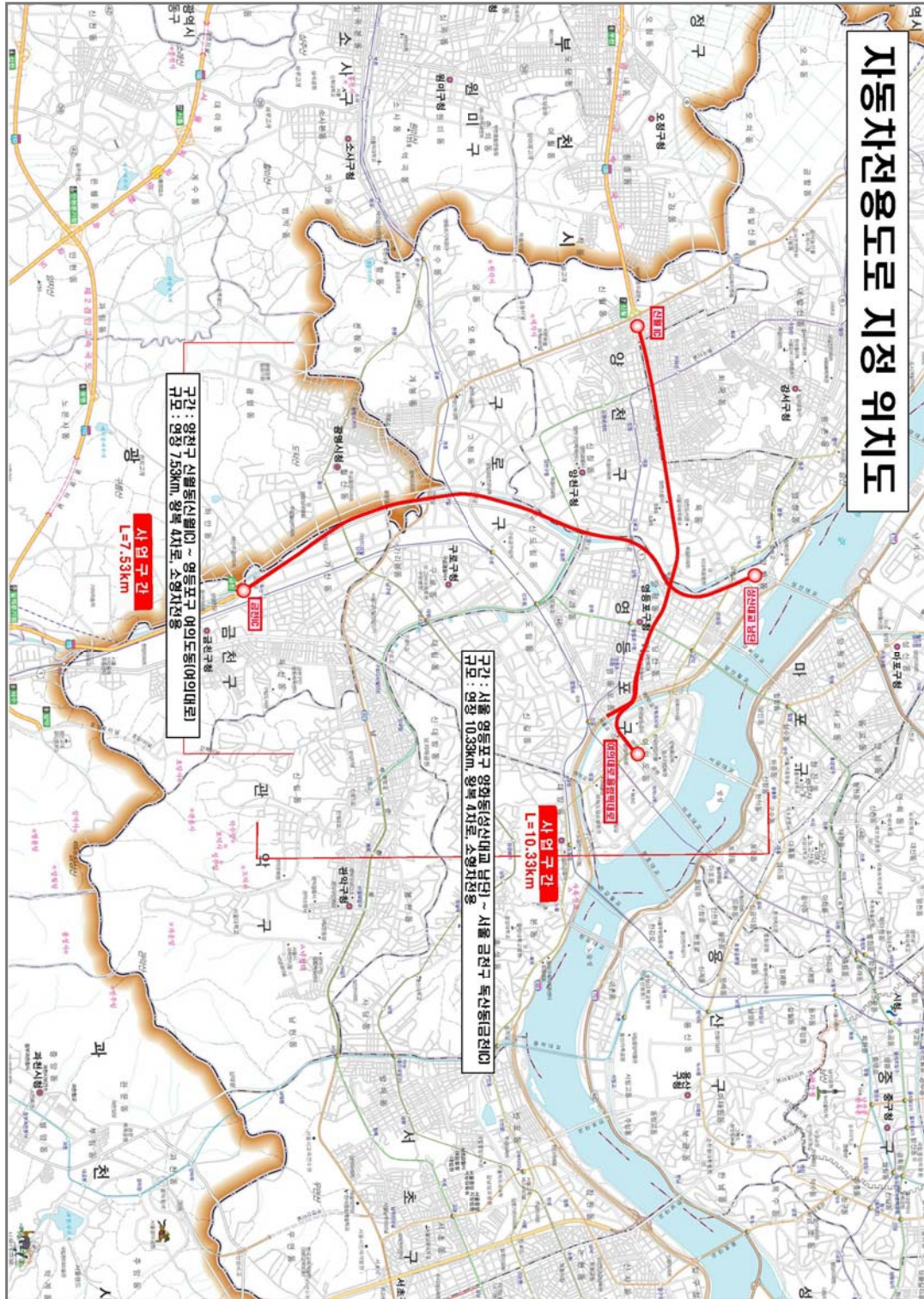
- 서부간선지하도로 : 서부간선도로, 안양천로, 시흥대로, 벚꽃로
- 서울제물포터널 : 국회대로, 오목로, 영등포로

6. 기 타

가.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 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2133-8073),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786-9106), 서울터널(주)(☎070-4660-7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위 치 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04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하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예 고 일 : 2017년 4월 13일(시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종별	종목 명칭	인정 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무형문화재 (개인종목)	제11호 침선장	박광훈	여	1932.07.20
	제29호 등매장	최현열	남	1941.08.20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4. 예고사유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11호 침선장 박광훈 보유자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29호 등매장 최현열 보유자 등 2인은 고령 또는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전수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자 함
5. 의견제출 : 방문제출, 팩스, 또는 우편 제출(공고일부터 30일간)
 - ① 전화 : (02)2133-2616(오문선 주무관) ② 팩스 : (02)768-8873
 - ③ 우편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451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0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2662	2017.3.2.	(주)동도시스템 김유기 110111-0679344	서울 중구 을지로14길 8, (을지로3가)
2	202663	2017.3.7.	(주)아이비케이시스템 조용찬 110111-0760531	서울 중구 퇴계로 141-7, (충무로2가)
3	202664	2017.3.7.	(주)지에스엔코퍼레이션 권순일 134811-0132928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8길 20, 1015호(잠실동)
4	202665	2017.3.7.	(주)바즐시스템 박종철 110111-4111706	서울 영등포구 63로 40 601호(여의도동, 라이프오피스텔)
5	202666	2017.3.10.	(주)엔에스티정보통신 조정희 110111-170263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3-33, 301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2차)
6	202667	2017.3.15.	(주)아이아이에스티 서범석 121111-0205154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에이동 910호(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7	202668	2017.3.15.	(주)에스디에스테크놀로지 임대성 110111-5105667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14, 지하1층(묵동)
8	202669	2017.3.15.	한국렌탈(주) 엄윤기 110111-0639900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41, 7층(청담동, 은성빌딩)
9	202670	2017.3.17.	파나소닉코리아(주) 노운하 110111-210762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7층(서초동, 오피런스)
10	202671	2017.3.21.	(주)아이티서포트 이재학 110111-2975401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8, 18층 1829호(진관동)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1	202672	2017.3.21.	(주)이화글로벌 이혜숙 110111-4897877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4 (대현동)
12	202673	2017.3.21.	(주)씨에스디지털 김주현 110111-312899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7길 41, 4층(역삼동)
13	202674	2017.3.23.	(주)씨비에스라이프 정복수 110111-1109093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1, (목동)
14	202675	2017.3.23.	(주)세영에이앤씨 강진숙 110111-4050061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18, (대방동)
15	202676	2017.3.27.	(주)에스알포스트 오창용 110111-3722348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2, 제6층 615호(구로동)
16	202677	2017.3.27.	(주)디브이케이 박유영 110111-3368069	서울 용산구 원효로39길 19, 2층(원효로3가, 조양빌딩)
17	202678	2017.3.27.	(주)새누 황선오 110111-4555053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810호(가산동,대륭테크노타운12차)
18	202679	2017.3.30.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 왕소봉 110181-0022314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408호(신문로1가, 광화문오피시아 빌딩)
19	202680	2017.3.30.	(주)천명시스템 김경신 110111-5 0 4 3 1 4 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2,305호,306호(여의도동, 대산 빌딩)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
의 신청 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 2133-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07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등록 내역

연번	등록일자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17.3.10.	120713	(주)한성텔플러스 조현무 180111-1078640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13, 상가동 507호(현저동)
2	2017.3.10.	310950	거성일렉콤(주) 박성래 110111-188622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길 7, 301호(방배동,세명빌딩)
3	2017.3.20.	112511	(주)유원이씨에스 박지혜 110111-6299831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75, 4층410호(구의동,크레신타워3차)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동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02-2133-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13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김승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길	일시 : 2017-02-17 07:51 장소 : 천호대로 내용 : 서울06자8939(덤프)차량 축하중 1.9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5. 31.

나. 납부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시고시 제2006-65호(2006.02.23.)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06-263호(2006.07.27.)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서울시고시 제2007-160호(2007.05.29.)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시고시 제2010-413호(2010.11.18.)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대로1-73)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시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366-4

○ 종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419-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의 명칭 : 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대로1-73) 조성사업
- 3. 사업의 규모 : 폭 35m, 연장 1,016m
- 4. 사업 시행자 주소, 성명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 5. 사업기간 : 2006.07.27.~2010.05.31.
- 6.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02-2133-2338)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 : 02-3410-759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1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7-45	(사)대한자전거 연맹 (대표 구자열)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 로 424	- 소외계층 자전거 꿈나무 선 수 발굴 육성 및 학교자전 거팀 운영 지원	270 (현금및물품)	전국	'17.4.7 ~ '17.12.31
						'17.4.7 ~ '17.12.31
2017-46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 (대표 신성호)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 지털1로 119	-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소년 돌봄지원	11 (현금및물품)	전국	'17.4.7 ~ '18.4.6
						'17.5.1 ~ '18.4.30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25호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65-2번지 일원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 지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2155-6783)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처(☎3410-7598)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상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공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서면)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 1)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가) 명 칭 :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65-2일원
 - 다) 면 적 : 137.7천㎡
- 2) 사업시행(예정)자 및 시행방식
 - 가) 사업시행(예정)자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자:변창흠)
 - 나) 사업시행방식 : 수용방식
- 3) 인구수용계획
 - 가) 계획인구 : 3,204인(1,200호)
 - 나) 건설호수 : 1,200호

※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지구지정(안) 참조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65-2일원
 - 2) 평가항목 :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동·식물상),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 수환경의 보전(수질), 환경기준부합성(기상,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
- ※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참조

다.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이상 ('17.4.14.~'17.4.28.)

라.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마.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와 같음)

바.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2155-678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처(☎3410-7598) 및 토목기술부 (☎3410-7758), 서울시청 임대주택과(☎2133-7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28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장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시 유형문화재	흥천사 극락보전 극락구품도 (興天寺 極樂寶殿 極樂九品圖)	1점	152 × 229	1885년 경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흥천사 (대한불교조계종 흥천사)
	흥천사 극락보전 도량신도 (興天寺 極樂寶殿 道場神圖)	1점	109.5 × 112	1885년 경	
	흥천사 극락보전 신중도 (興天寺 極樂寶殿 神衆圖)	1점	155.2 × 225.2	1885년	
	흥천사 천룡도 (興天寺 天龍圖)	1점	109.5 × 112	1898년	
	흥천사 만세루 아미타불회도 (興天寺 萬歲樓 阿彌陀佛會圖)	1점	174 × 271	1890년 경	
	흥천사 만세루 신중도 (興天寺 萬歲樓 神衆圖)	1점	205 × 203	1890년	
	흥천사 만세루 제석천도 (興天寺 萬歲樓 帝釋天圖)	1점	201 × 203	1890년	
	흥천사 도량장엄번 (興天寺 道場裝嚴幡)	16점	일괄 127 × 69	1898년 경 (19세기 말)	
	흥천사 목조여래좌상 (興天寺 木造如來坐像)	1점	높이 56.3 무릎 폭 38 어깨 폭 27	조선 (16~17세기 초)	
	흥천사 목조보살좌상 (興天寺 木造菩薩坐像)	1점	높이 101.5 무릎 폭 65.5	16세기 말 ~17세기 초	
	흥천사 명부전 석조지장삼존상 외 시왕상 일괄 (興天寺 冥府殿 石造地藏三尊像 外 十王像 一括)	27점	조사보고서 별도 표기	17세기 후반 (1873년 개금)	

- 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 홍천사 극락보전 극락구품도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상 우측에 봉안된 이 극락구품도는 화면을 9개 구획으로 나누고, 그 구획 안에 구품의 내용을 도해한 형식으로 이러한 형식의 극락구품도는 화계사(1886), 백련사(1899), 도선사(1903), 봉원사(1903), 수국사(1907), 고양 홍국사(19세기) 등 서울·경기 수도권지역에 남아있다. 고려시대 관경도에서 이어져 변모되어 새롭게 대두된 극락구품도는 19세기에 유행한 도상으로 당시 저명한 화승인 大虛體訓, 惠山竺衍, 鶴虛石雲 등이 참여한 뛰어난 작품이며, 특히 고양 홍국사 극락구품도(19세기)와 유사한 작품으로 비교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홍천사 소장의 왕실발원 신중도(1885)의 제작한 참여한 화승이 이 극락구품의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어, 극락구품도 역시 동시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경기 지역의 극락구품도와 비교되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 홍천사 극락보전 도량신도

홍천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도량신도로서 도량신은 <화엄경> 약찬계에 등장하는 화엄신중의 하나이며 도량의 더러움을 없애는 신이다.

도량신을 단독탱화로 조성·봉안한 매우 드문 예로, 홍천사의 도량신도는 단독탱화로 조성된 도량신도의 대표적 작품으로 19세기 말 도량신 신앙의 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며, 서울·경기지역의 서양화법을 수용하여 독자적인 화풍을 형성했던 대(태)허당 체훈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1885년 조성된 극락보전 신중도와 증명비구, 화승, 시주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1885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

■ 홍천사 극락보전 신중도

군도형식의 신중도로서, 화면을 상하로 나누어 상단에는 제석·범천 등 천부세계를 표현하고, 하단에는 위태천을 중심으로 천룡부를 나타내고 있다. 남아있는 화기 내용으로 보아, 광서 11년인 1885년 대허체훈(大虛體訓)이 책임화승을 맡고 보조화승으로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활약했던 서울경기지역의 대표적 화승 중 한명인 比丘肯罔에 의해 조성된 왕실발원 불화로 짐작된다. 참여 화승들이 만세루에 봉안된 1890년 작 신중도 제작에도 동참하였으며 두 신중도가 공간배치 및 도상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두 불화의 영향관계를 엿볼 수 있다. 이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홍천사 천룡도

홍천사 천룡도는 위태천과 천룡팔부를 함께 그린 것으로서 홍천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다. 화면 중앙에 위태천이 합장하고 서 있으며 천녀와 일월천자, 여러 신중들이 주위에 배치되

어 있다. 인물표현에 음영법이 사용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많이 사용되고, 일부 화려한 금박이 사용되어 19세기 서울 경기지역 불화의 특색을 보여준다. 화기에 의하면 1898년 용담(蓉潭)이 초본을 그렸다. 신중도 중 천룡도 형식은 예가 많지 않은 가운데, 19세기 말 서울 경기 지역의 천룡도 양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 홍천사 만세루 아미타불회도

만세루에 봉안된 아미타불회도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보살, 십대제자, 사천왕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공들이 시주한 왕실발원 불화로 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불화는 수화승 금조(巨照)를 비롯하여 만파정익(萬波定翼), 혜산축연(慧山竺衍), 보암공법(普庵肯法) 등 주로 19세기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화승들이 조성하였다. 조성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1890년 제작된 만세루의 신중도에 수화승 금조 등이 참여한 바, 만세루 신중도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저명한 화승인 금조가 수화승으로 참여한 왕실발원의 불화로써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홍천사 만세루 신중도

화면을 상하로 나누어 상단에는 제석범천 등 천부세계를 나타내고, 하단에는 천룡부를 표현하였다. 극락보전에 봉안된 1885년 조성의 신중도와 채색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도상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이 신중도의 구성에 참여한 화승(碧瀾圖 圀, 比丘肯圖)이 극락보전 신중도 구성에도 참여한 사실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화면 하단의 화기 내용으로 보아 광서 16년인 1890년 금조(巨照)가 수화승을 맡았다. 화기에 의해 조성연대, 봉안사찰, 조성화승이 명확하며, 동참화승의 기록을 통해 극락보전 신중도와의 영향관계 및 화풍 파악, 19세기 후반 서울·경기지역의 신중도 도상 비교 등을 위한 자료적 가치가 있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 홍천사 만세루 제석천도

제석천을 중심으로 천부세계를 표현한 비교적 간단한 구성의 신중도로, 화면 중앙에 제석천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며 천부중과 여신 등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다.

화면 하단 중앙에 화기가 있으며, 조성연대, 봉안처, 화승, 시주자 등을 기록하였다. 광서 16년인 1890년 도편수 ‘금조(巨照)’가 책임화승을 맡고 ‘정익’과 ‘성전’이 참여하였다.

조성연대와 봉안사찰, 조성화원 등이 명확하며, 19세기 후반 한성부와 경기도 지역의 제석천 중심의 신중도 도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가치가 있으며,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홍천사 만세루 제석천도

도량장엄용 의식불화인 오여래도 5점, 사보살도 4점, 팔금강도 7점(8점 중 1점 결실) 등 총 16점이다.

화기가 없어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없지만, 얼굴의 형태와 채색, 문양 등에서 1898년 조성된 홍천사 극락보전 천룡도의 양식과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음영법을 사용하는 등 19세기 말 서울·경기지역의 불화양식을 보여주며, 19세기 말 홍천사의

불교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홍천사 목조여래좌상

홍천사에 전해오는 목조여래좌상으로 크기로 보아 『조선총독부관보』 1811호(1933년 1월 24일)와 『봉은본말사지』(1943년)의 홍천사 목록에 보이는 1척 8촌의 아미타불상으로 생각된다.

허리가 길고 어깨가 넓은 신체 비례에서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전기 불상의 특징을 보이며, 앉은 자세와 신체 비례, 세부 표현 등에서 1606년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 1719호), 동학사 아미타불상, 석가여래좌상 등과 비견된다. 조성연대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양식적으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연구 자료로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홍천사 목조보살좌상

홍천사 목조보살좌상은 조선후기 17세기 전반에 조성된 보살상보다 머리가 크고 어깨가 좁은 편이며, 상반신이 길고 하반신이 넓은데, 조선전기 유행한 신체비례를 보여준다. 양식적 특징과 복장물로 발견된 묘법연화경이 16세기 간행된 점을 미루어 보아 조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크기로 보아 『조선총독부관보』 1811호(1933년 1월 24일)와 『봉은본말사지』(1943년)에 기록된 대세지보살상(3척 7촌)으로 생각된다. 홍천사 목조보살좌상은 보존 상태도 완전하고, 양식상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보아 한국불교조각사 연구의 기준작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홍천사 석조지장삼존상 외 시왕상 일괄

명부전에 봉안된 총 27구의 불상으로 지장삼존상, 시왕상 10구, 귀와상 2구, 사자상 2구, 판관상 2구, 금강역사상 2구, 동자상 6구이다. 지장삼존상과 시왕상 등은 석재로 조성되었고, 사자상과 금강역사상은 흙으로 조성되었다.

홍천사 명부전의 불상들은 조성발원문이 없어서 조성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7세기 후반의 조각승 승호와 그 계보가 만든 불상과 양식적으로 유사하여 1680년대 전후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총독부관보』 1811호(1933년 1월 24일)와 『봉은본말사지』(1943년)에 홍천사 지장삼존상과 시왕상에 관한 기록이 보이며, 17세기 후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2. 의견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① 전화 : (02) 2133-2632 ② 팩스 : (02) 768-8873

③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 ① 전화 : (02) 2241-2653 ② 팩스 : (02) 2241-6536
- ③ 우편 : (02848)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극락보전 극락구품도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상 우측에 봉안된 이 極樂九品圖는 화면을 9개 구획으로 나누고, 그 구획 안에 구품의 내용을 도해한 형식이다. 고려시대 관경도에서 이어져 변모되어 새롭게 대두된 극락구품도는 19세기에 유행한 도상으로 화계사(1886), 백련사(1899), 도선사(1903), 봉원사(1903), 수국사(1907), 고양 홍국사(19세기) 등 서울·경기 수도권지역에 남아있다.

첫째, 이 佛畵를 상·중·하의 3段으로 구분한다면 상단의 중앙〈靈山會〉左, 右는 奏樂天人과 菩薩衆 및 比丘衆이 묘사된 것이다. 즉 설법을 찬탄하는 장면인것 같다. 中段에는 〈須摩堤〉, 즉 극락전을 중심으로 구품연못이 나타나있다. 〈영산회〉 장면만 제외하고 왕생자가 있던 없던 8장면에 모두 연못이 묘사되어있다.

둘째, 각 요소들은 앞 시대의 觀經圖(극락도)와 비교하여 크게 변모했는데, 극락의 환상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특히 관경에 없는 요소들(사자, 사슴, 코끼리, 탑, 대나무숲, 마름모꼴로 형성된 극락땅이 아닌 현실의 정원에 세워진 듯한 기암괴석과 나무, 세 개의 아치형의 문이 연속된 건물 등)은 낯설게 나타난다.

셋째, 士大夫 모습으로 왕성한 왕생자가 표현된 하단 중앙부를 上品觀(14관)이라 한다면 菩薩衆이 왕생자를 맞는 장면은 下品觀(16관), 佛이 왕생자를 맞는 장면은 중품관(15관)이라고 하겠다. 보통 菩薩衆은 上品, 승려衆은 중품, 俗人衆은 하품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14-16관 모두 俗人衆으로 표현되었다.

넷째, 일반적으로 전각 안에 아미타삼존불이 묘사되지만 전각은 비어있다. 불·보살상들은 모두 구름을 타고 마치 왕생자를 맞으러 오는 것처럼 표현된 것은 특징적이다. 이는 內院庵 관경도(1853, 木版本)의 불, 보살상이 연못의 왕생자를 맞거나 上段의 불·보살상이 또 반복되어 마치 왕생자를 극락으로 데려오는듯 두 번 반복되었는데, 상단의 구름을 탄 불·보살상이 홍천사 극락구품도에 나타난 것 같다.

화면 좌우 모서리의 붉은색바탕에 먹으로 쓴 화기난은 연화질과 시주질로 나뉘어져있으나 제작年代가 없다. 그러나 같은 法堂인 극락전에 奉安된 神衆幀의 畵記를 보면, 1885년에 甘露 등 4軸을 金魚片手인 大虛體訓, 惠山竺衍, 鶴虛石雲 등이 상공들의 시주로 조성했다고 적혀있는 바 시주자의 명단(홍씨, 심씨)만 다를 뿐, 大虛體訓, 惠山竺衍, 鶴虛石雲 등 화승들의 이름이 이 불화의 畵記에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1885년에 신중탱과 함께 제작된 것 같다.

이 極樂九品圖는 화면을 9개 구획으로 나누고, 그 구획 안에 구품의 내용을 도해한 형식이다. 고려시대 관경도에서 이어져 변모되어 새롭게 대두된 극락구품도는 19세기에 유행한 도상으로 화계사(1886), 백련사(1899), 도선사(1903), 봉원사(1903), 수국사(1907), 고양 홍국사(19세기) 등 서울·경기 수도권지역에 남아있다.

1885년 당시 저명한 화승인 大虛體訓, 惠山竺衍, 鶴虛石雲 등이 참여한 뛰어난 작품인 바, 특히 고양 홍국사 극락구품도(19세기)와 유사한 작품으로 비교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이 극락구품도와 동시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왕실발원의 신중탱(1885)의 화승이 참여한 이 극락구품도 역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기]

<좌>

緣化秩」證明 幻翁□眞」誦呪 沖虛基教」持殿 映曇普潤」金魚片手大虛體訓 惠山竺衍 鶴虛石雲 性典 玩悟 得訥」供司 雲成」鐘頭 義千 現珠」

<우>

施主秩」大施主」乾命癸酉生洪氏」青信甲午生沈氏大悲華」化主 虛□寶泉」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극락보전 도량신도

도량을 장엄하고 三寶의 도량을 지키는 신장을 그린 道場神圖로, 홍천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다. 도량신은 <華嚴經> 略纂偈에 등장하는 화엄신중 가운데 하나로 도량의 더러움을 없애는 신으로, <華嚴經> 世主妙嚴品 1에서는 부처세계의 티끌 수 같은 道場神, 즉 淨莊嚴幢道場神, 須彌寶光道場神, 雷音幢相道場神, 雨華妙眼道場神, 華纓光계道場神, 雨寶莊嚴道場神, 勇猛香眼道場神, 金剛彩雲道場神, 蓮華光明道場神, 妙光照曜道場神 등의 10 도량신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과거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願力을 성취하여 공양을 널리 일으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량신은 화면 상단의 三曲屏처럼 각이 진 흰색을 배경으로 하여 정면을 향해 앉아있다. 도량신의 뒤쪽 좌우에는 傘蓋와 幢幡을 든 동자가 배치되었으며, 정면 좌우에는 두 명의 신장이 칼과 圓形의 지물을 들고 중앙을 향해 서있다. 도량신은 團領의 붉은 관복에 가슴과 허리에는 각각 角帶를 차고 정면을 향해 앉아있는데, 세필로 얼굴의 입체감과 수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점이라든지 눈과 눈썹을 과장되게 치켜세운 모습, 가슴 아래까지 길게 늘어진 더부룩한 수염, 團領의 관복 좌우 어깨에 문양이 새겨진 모습, 정면을 응시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은 석지(石芝)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이 그린 關聖帝君圖를 연상케 한다. 붉은 색의 의복에는 주름을 표현한 먹선을 따라 바림질로 채색하고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향우측의 신장은 仰髮의 鬼卒모습으로 이마에 검은 띠를 둘렀고, 오른손은 허리춤에 대고 왼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 둥근 지물을 들고 맨발로 서있다. 향좌측의 신장 역시 양발의 귀족모습으로 머리에는 청색의 두건을 쓰고 두 다리를 약간 벌린 채 오른손에 긴 칼을 들고 당당하게 서있다. 도량신의 섬세하면서도 사실적인 안면묘사는 좌우 신장의 얼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불화는 大虛와 鶴虛 등 두 명의 화승이 조성하였다. 수화승인 대허는 19세기 중·후반에 경상도와 서울 경기 일대에서 활동하던 大虛堂(또는 太虛堂) 體訓(體訓, 體訓)으로, 그는 특별한 사승관계 없이 당대 이름난 여러 화승들과 여러 화승들과 교유하며 다양한 기법을 습득하였으며, 1870년대 이후에는 경기도 일대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1885년에는 竺演과 함께 홍천사 극락보전의 <極樂九品圖>를 제작하기도 했다. 화면에 찻농과 얼룩으로 인한 손상이 보이며, 특히 화기의 아랫부분은 검게 변색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이 불화는 화엄신중 가운데 하나인 도량신을 그린 것으로 전해오는 작품이다. 도량신은 보통 10위신중도나 39위신중도에 華嚴神衆의 하나로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독탱화로 조성 봉안되는 경우는 드문데, 홍천사 도량신도는 단독탱화로 조성된 도량신도의 대표적 작품으로 19세기 말 도량신 신앙의 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작품이다. 양식적으로는 전통회화의 초상화 기법을 사용한 얼굴묘사가 돋보이며, 서울 경기지역의 서양화법을 수용하여 독자적인 화풍을 형성했던 대(대)허당 채훈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비록 정확한 조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1885년에 조성된 尙宮發願의 <홍천사 극락보전 신중도>와 證明比丘 및 畫僧, 化主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1885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화기]

緣化秩」證明 幻翁□□」金魚 大虛」鶴虛」化主 應明」化主 靈□」願以此功□」普及□□□」
我等與□」當生極□□」同見無□□」皆供成□□」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극락보전 신중도

帝釋天 및 梵天和 韋馱天을 중심으로 주위로 많은 권속들이 배치된 군도 형식의 신중도(帝釋梵天天龍圖)로서, 화면 전반에 걸쳐 촛농 등 오염이 보이고 안료의 산화와 박락이 심한 편이다. 위태천 투구 및 권속들의 구슬장식과 天龍部 상들의 무기와 관모, 지물, 天童·天女의 지물 등에 부분적으로 高粉法이 사용되었다. 畵記는 화면 하단에 횡으로 길게 마련되어 있는데 하단부가 검게 변하여 일부 판독이 불가하며, 중간부가 찢어져 훼손되어 있다.

가로로 길어진 크기의 화면을 상하로 나누어 상단에는 제석·범천을 위시한 天部世界를 표현하고, 하단에는 위태천을 중심으로 각종 武器로 무장한 天龍部를 나타내었다.

둥근 머리 광배와 장방형 몸 광배를 구비한 상단부 왼쪽(向右側) 위치의 제석천은 궁중복식 모양의 법의를 착용한 채 두 손으로는 흰색 연꽃가지를 받쳐 들고 있으며, 제석천과 대칭하여 위치한 범천 또한 제석천과 거의 유사한 모습에 백색 모란화 가지를 들고 있다. 제석·범천 주위로 중앙을 향해 두 손을 모아 笏을 들고 있는 日·月大臣 및 日宮天子와 月宮天子를 비롯하여 중앙 쪽에는 향로와 과일을 받쳐 든 천녀를 비롯하여 생황·피리·현악기 등을 연주하는 주악 동남·동녀를 그려 넣었다. 그리고 제석·범천 좌우 바깥쪽으로는 傘蓋와 幢幡 및 幢과 扇을 든 천녀 등이 뽁뽁하게 배치되어 있다. 맨 위쪽 상단에는 하늘 공간을 표현하였다.

턱이 둥글어진 모양의 얼굴을 한 제석천과 범천을 위시하여 천녀, 동남·동녀 등의 경우 정교한 세필을 사용하여 상호를 표현하고 피부색을 밝게 처리하여 부드러우면서 아름다운 느낌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단부를 보면 깃털 모양의 장식이 있는 투구를 쓴 무장 모습의 위태천을 중심으로 좌우로 천룡부 상들이 배치되어 있다. 배를 약간 내민 채 몸을 틀고 서서 두 손으로 삼지창을 쥐고 있어 천룡부 수장으로서의 위엄이 엿보인다.

위태천 좌우로는 탕건을 쓰고 깃털부채를 든 상(山神으로 불림)과 어깨에 책을 걸쳐 든 상(龍王神으로 불림), 갑옷을 입고 靑龍偃月刀와 죽절형 武器 및 검 등으로 무장한 천룡부 신중상들이 배치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위태천 좌측(향우측) 위쪽으로 붉고 푸른 머리칼에 입을 벌린 채 이를 드러내고 눈을 부라린 근육질형 상이 보이는데, 예적금강 같은 모습을 하였다. 한편 천룡부의 상들은 대개 상단 천부계의 상들과는 다르게 피부 빛깔이 갈색조를 띠고 부라린 눈에 턱수염과 구레나룻이 덩수룩하며 갑옷에 무장을 하여 천룡계 상답게 강인한 느낌이다.

채색은 적색과 녹색이 주조색을 이루는 가운데 하늘색 계열의 밝은 청색이 사용되었으며, 위태천의 투구 및 갑옷과 삼지창, 검과 각종 기물 등에 고분법을 적용하고 금(색)을 올려 탁해진 적색과 짙고 어두운 암록색의 화면에 경쾌함을 불어 넣어준다.

그럼 하단부에 남아 있는 화기 중의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 신중도는 光緒 11年인 1885년 ‘大虛體圖’이 책임화승을 맡고 ‘碧瀾園, 比丘肯因, 比丘妙□’ 등이 보조화승으로 동참하여 조성되었으며 감로왕도 등과 함께 네 폭을 그려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표 시주자로 상궁 김씨와 상궁 홍씨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종황제와 명성왕후 민씨, 순종과 순명효황후 민씨 등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왕실발원 불화로 짐작된다.

이 신중도의 경우 홍천사 만세루에 봉안되어 있는 1890년 작 신중도(제석범천천룡도)와 색채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공간배치 및 도상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극락보

전 신중도 조성 시의 참여화승 가운데 ‘碧瀾圖閣, 比丘肯圖’ 이 만세루 신중도 조성 시에도 동참하고 있다는 데 그 이유가 있으며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홍천사 극락보전 신중도는 관독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조성연대 와 조성화승 파악이 가능함은 물론, 왕실발원 불화로서 1890년 조성의 홍천사 만세루 소재 신중도와의 직접적인 영향관계 및 화풍 파악에 있어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동참화승 ‘肯圖’ 의 경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활약하였던 서울·경기지역의 대표적 화승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홍천사 극락보전 봉안의 신중도(제석범천천룡도)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기]

‘光緒十一年乙酉五□□五日極□□畫成神衆幀□□幀甘露閣四輶點閣□□二十三日…主上殿下圀李氏玉體□□聖壽萬國 王妃殿下圖興閔氏玉體□□聖壽齊年 世子邸圀李氏寶體□□聖壽□□ 嬪宮邸圀圖興閔氏貴□□聖壽長□…金魚 片圀 大虛體圖 碧瀾圖閣 比丘肯圖 比丘妙□…施主圀 尙宮清圖圀亥生金因圖體 尙宮□戌生洪氏□□月保體…’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천룡도

이 불화는 神衆圖 형식의 하나로 韋馱天과 天龍八部를 함께 그린 천룡도로서, 홍천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다. 천룡팔부는 보통 불법을 수호하는 八部衆, 즉 天·龍·夜叉·乾達婆·阿修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 등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천룡도라 할 때는 제석천이나 범천 등 善神은 표현되지 않고 위태천을 중심으로 무장의 신장들이 함께 묘사되는 신중도 형식을 말한다.

화면 중앙에는 위태천이 합장하고 서 있으며 주위에는 천녀와 日月天子 및 여러 신중들이 배치되었다. 韋馱天(Skanda)은 녹색의 두광을 지니고 새 날개깃으로 장식된 화려한 투구를 쓰고 합장한 두 손 위로 삼고저 같은 것을 받들고 있는데, 투구장식 및 肩甲부분을 금박으로 처리하여 화려한 느낌을 준다. 천녀는 꽃으로 장식된 모자를 쓰고 두 손으로 향로와 과일이 든 쟁반을 들고 있다. 천녀 옆에는 관복을 입고 홀을 든 인물이 서있는데, 향우측 인물은 흰색의 달이 그려진 관을 쓰고 복두칠성이 그려진 홀을 들고 있어 月宮天子로 추정되며, 책관을 쓰고 홀을 든 향좌측 인물은 남장사 신중도(1824년)의 日宮天子와 동일한 모습이어서 日宮天子로 추정된다. 화면 하단에는 중앙에는 상투머리에 검은색 투명두건을 쓰고 오른손에 白翼扇, 왼손에 영지버섯이 든 바구니를 들고 있는 山神과 금문양으로 장식된 검은 두건을 쓰고 서책을 들고 있는 竈王神이 배치되었으며, 이들 옆으로는 활과 화살 및 칼, 화염보주 등을 들고 서있는 신중이 배치되었다.

인물표현은 음영법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강조하였으며 채색은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많이 사용되었고, 기물과 복식 일부에 화려한 금박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채색법은 19세기 서울 경기지역 불화의 특색이기도 하다. 화기에 의하면 이 그림은 1898년에 蓉潭이 模像, 즉 초본을 그렸다고 했으나 片手 다음에는 화승의 이름이 지워져 있어 불화조성화원은 확인할 수 없다.

이 불화는 위태천과 천룡팔부를 간단하게 그린 천룡도로서 1898년에 蓉潭이 초본을 제작하였다. 일반적인 천룡도와 달리 위태천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하단의 산신과 조왕신 및 기타 신중이 부각되는 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의복 및 기물 등에 금박을 사용하여 채색이 돋보인다. 인물묘사에는 섬세한 바림질과 세칠의 묘사로 인해 입체감과 사실성이 돋보이며, 간략하게 표현한 옷주름에도 활달한 필력이 엿보인다. 신중도 중 천룡도 형식은 유례가 많지 않으며 특히 서울·경기지역의 천룡도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 이 작품은 비록 제작시기는 늦지만 19세기 말의 서울·경기지역의 천룡도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화기]

향우측 : 大韓光武二年戊「戌十二月十六日神」供十九日夜點眼「□安于三角山」興□寺「緣化所」證明翠山錦□「暎曇普□」誦呪「兩潭明□」乘法「模像蓉□」片手比丘□「鐘頭」沙彌「茶角」別供沙彌□「供司沙彌□」都監「化主」報靈□

향좌측 : 大施主「乾命壬戌生□□」坤命丙子生□□「兩主保體」董子戊戌生□「保體」壽福增長□「引勸大施主」坤命乙卯生□□「罪滅福□」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만세루 아미타불회도

1890년 作 만세루 아미타불회도는 다수의 상공들이 시주한 왕실발원의 불화로 수화승 공조(巨照)를 비롯하여 만파정익(萬波定翼), 혜산축연(慧山竺衍), 보암공법(普庵肯法) 등 주로 19세기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화승들이 조성하였다.

화기에 이 불화의 조성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전각인 만세루의 1890년 作 두점의 신중도 역시 수화승 공조(巨照) 등이 참여한 바, 동시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8위의 보살, 십대제자, 타방불, 사천왕, 천부중 등이 배치되어 있다.

화면의 중앙에는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아미타불이 두광과 신광을 등지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손모양을 하고 있다. 본존불 좌우에는 연꽃 등을 든 8위의 보살 및 사천왕이 모두 倚坐像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왕실발원의 이 불화에는 값비싼 재료인 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바, 持物부분에는 주로 金箔이, 天衣 등 복식의 문양에는 金泥로 그렸다. 특히 아미타불의 신광에 사용된 금은 구불구불한 선과 변화 있는 금색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빛이 방사하듯 보여 예배자의 시선을 중앙의 아미타불로 향하게 한다.

화면 하단부 밑부분에 흰색바탕에 먹으로 쓴 화기난이 마련된 바, 이 불화의 조성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세루의 1890년 作 두점의 신중도 역시 수화승 공조(巨照) 등이 참여한 바, 동시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1890년에는 홍천사 大房에서 여러 점의 불화를 함께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인근 사찰인 봉국사[奉國寺: 神德王后(?~1396)의 원당] 大房에 봉안하기 위한 불화도 함께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수월도량공화불사(水月道場空花佛事)’와 관련하여 불화가 제작된 점이다. 이 불사는 19세기 말에 홍천사를 비롯하여 파주 보광사, 수원 청련암, 삼각산 화계사 등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설행되었다.

동참시주인 다수의 상공들 중 가장 먼저 기록된 갑신생 하씨 正德慧는 1878년 화계사 명부전 시왕도(1, 3대왕도), 1878년 개운사 감로도, 1884년 진관사 영산전 석가모니불도 등 여러 불사에 시주자로 기록된 인물이다.

87.6cm, 104.6cm, 84.5cm의 비단 세 폭을 이어 가로로 긴 화면의 바탕을 마련한 1890년 作 만세루 아미타불회도는 일반 불교신도들의 이름과 함께 동참시주로서 상공들이 다수 참여한 왕실발원 불화로 값비싼 재료인 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점이 돋보인다. 채색, 필선, 장식, 문양 등에서도 정교함이 드러나 있다.

특히 결가부좌한 본존불 좌우의 8위 보살 및 사천왕이 모두 의좌상을 한 좌세는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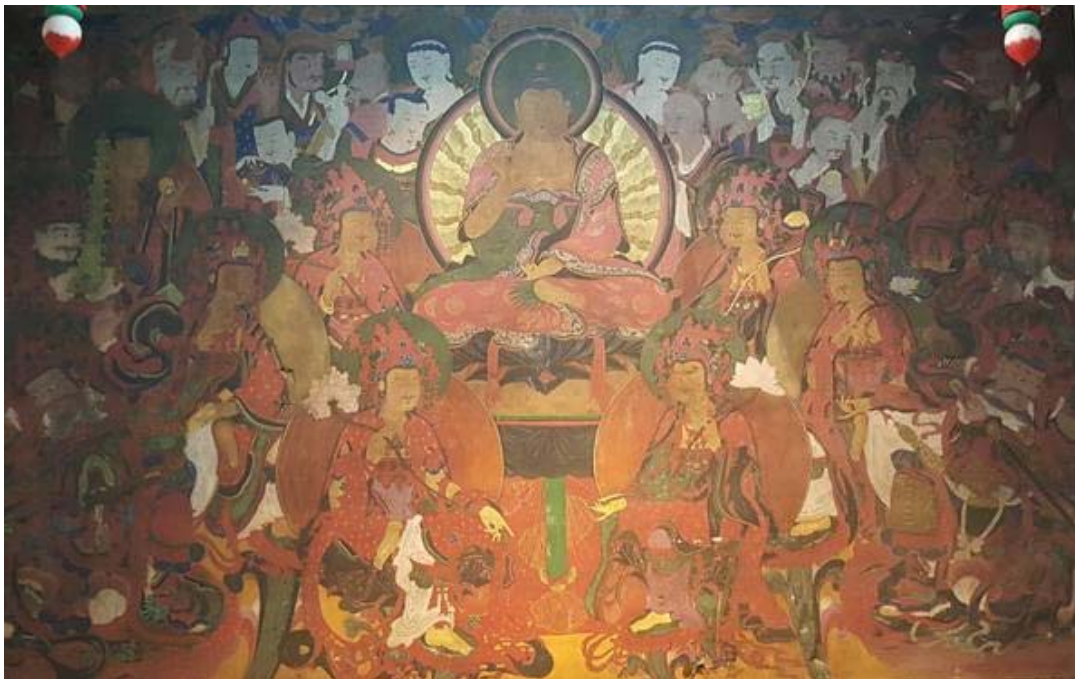
당시 저명한 화승인 공조가 수화승으로 등장한 이 아미타불회도는 왕실발원 불화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화기]

山興天寺水月」道場空花佛」事本寺大○」上壇幀一軸」願佛幀一軸」觀音一尊像」改金」神衆幀一軸」帝釋幀一軸」各房願佛」一軸」一尊像改粉」一尊像改金」南巡童子海」龍王改彩」奉國寺大房」上壇幀一軸」神衆幀一軸」各房願佛幀」一軸」觀音幀一軸」願佛改金」本月十六日神」供二十五日夜」點眼奉安于」本寺」緣化所」證明翠山錦哲」誦呪暎曇普潤」懶庵允祚」金魚都片手亘照」模像碧隱誌閑」萬波定翼」蕙山竺衍」明應幻鑑」普庵肯法」錦城性典」玩明應基」比丘慧照」比丘戒禪」景林」慧觀」等閑」沙彌敬恩」鍾頭沙彌法念」淨桶」沙彌斗仁」萬成」別供」供司」比丘法泉」茶角沙彌法念」造餅比丘熙法」秉法」持殿懶庵允祚」都監」化主」比丘坦照」施主」清信女乙未生趙氏」妙法月」清信女癸未崔」氏普惠心」坤命乙巳生元氏」

同參施主」尙宮清信女甲申」生河氏正德慧」尙宮癸未生朴氏」尙宮丁亥生尹氏」尙宮丙子生裴氏」尙宮壬辰生金氏」尙宮丁酉生宋氏」尙宮丙申生洪氏」尙宮辛丑生李氏」清信女己酉生朴氏」坤命癸亥生白氏」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만세루 신중도

가로와 세로가 거의 동일한 크기의 정방형 바탕 위에 帝釋天과 梵天을 중심으로 天龍部를 거느린 韋馱天과 天神, 天女, 童女, 童男 등 天部の 무리를 그린 신중도이다. 화기가 기록된 화면 하단은 부분적으로 얼룩과 찢어진 부분, 안료 박락과 찌꺼기에 의한 오염 흔적이 엿보인다.

書記는 화면 테두리 흰색 바탕 위에 별도의 구획 없이 먹으로 조성연대, 봉안처, 조성화원, 시주자 등이 기록되어 있다.

화면을 크게 상하로 나누어 상단에는 제석·범천을 위시한 天部世界를 나타내고, 하단에는 위태천을 비롯하여 여러 무기를 들고 무장한 천룡부를 표현하였다.

등근 머리광배에 장방형 몸광배를 구비한 상단부 왼쪽(向右側)의 제석천은 마치 궁중의복처럼 화려한 법의를 착용한 채, 두 손으로는 왼 어깨에 비껴 연꽃가지를 들었다. 제석천과 대칭으로 자리하고 있는 범천 또한 오른 어깨에 비껴 모란화 가지를 들고 있는 점만 다를 뿐 제석천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다. 제석천과 범천 주위로는 笏을 든 日·月大臣 및 日宮天子와 月宮天子를 비롯하여 傘蓋와 幢幡을 든 천녀,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 동남·동녀, 일종의 부채인 扇과 幢을 든 천녀 등이 뽁뽁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맨 위쪽 상단에는 하늘 공간을 표현하였다.

턱이 가름하니 둥글어진 얼굴의 제석천과 범천을 위시하여 천녀, 동남·동녀 등의 상들을 보면 정교한 필선을 사용하여 상호를 표현하고 밝은 피부색을 하여 천부세계를 나타낸 듯 곱상하고 우아함이 느껴진다.

하단의 천룡부 수장인 위태천은 깃털 모양의 장식을 갖춘 투구를 쓴 무장 모습으로 배를 약간 내민 채 두 손으로 삼지창을 쥐고 서 있다.

위태천 좌우로는 탕건을 쓰고 깃털부채를 든 신중상(山神으로 불림)과 책을 어깨에 기대어 들고 있는 신중상(龍王神으로 불림), 갑옷을 입고 靑龍偃月刀와 죽절형 武具 및 검으로 무장한 천룡부의 신장상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 천룡부의 상들은 상단 천부세계의 상들과 달리 어두워진 피부 빛깔에 모두 무장을 한 채 길고 덩수룩한 수염을 하고 부러진 것처럼 눈을 크게 표현하여 강인한 느낌을 준다.

채색은 이 시기의 다른 불화들과 마찬가지로 적색과 녹색이 주조를 이루는데, 적색의 경우 탁해지고 녹색 또한 짙고 어두운 암록색을 하여 전반적으로 화면이 무거워진 느낌이다. 이를 해소하기라도 하듯 삼지창과 검 등의 무기, 각종 器物과 冠帶, 의복 등에 부분적으로 금을 사용하여 채색하거나 문양을 그려 넣음으로써 밝아지고 활기가 느껴진다.

또한 이 신중도 조성 시 홍천사에 별도의 불사 도량을 개설하여 홍천사 大房의 상단불화 1축을 비롯한 원불도 1축과 신중도 1축, 제석천도 1축 조성과 함께 아미타불상 改粉 및 관음보살상 改金, 원불 1존상 改金, 南巡童子 및 海上龍王의 改彩도 이루어졌음이 파악된다. 그리고 인근 사찰인 봉국사 봉안의 대방 상단불화 1축과 원불도 1축, 신중도 1축을 조성하고 원불 1존상의 개금도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신중도의 도상을 살펴보면 홍천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1885년 조성의 신중도(제석·범천·천룡도)와 하늘 공간 처리와 색채의 채용에서만 약간의 차이점이 엿보일 뿐 도상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이 신중도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화승 가운데 ‘碧瀾園 圀, 比丘肯園’의

경우 극락보전 신중도 조성 시 동참화원이었다는 데 있다고 하겠으며, 동일 본을 사용하여 그렸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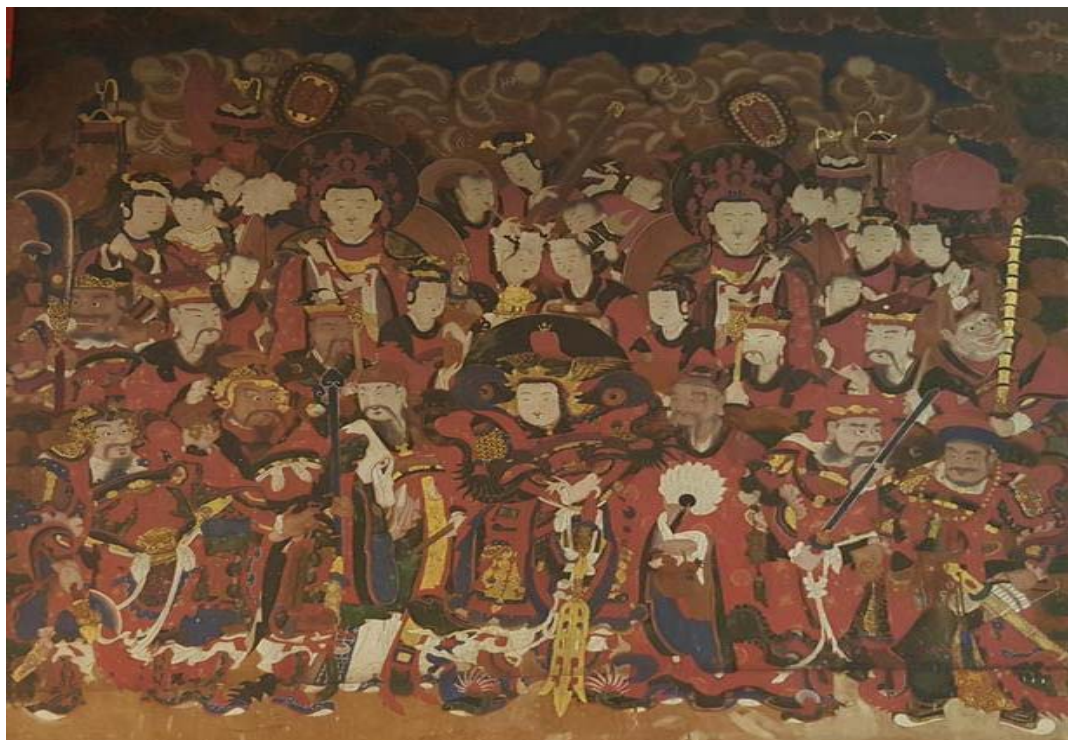
이 신중도는 화기에 의해 조성연대와 봉안사찰 및 조성화승 등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은 물론, 19세기 후반 한성부 지역의 신중도 도상 비교 및 수화승 ‘궁조’와 동참 화승 ‘궁법, 축연’, 그리고 극락보전 신중도 동참화승 ‘(因)團, 궁團’과의 영향관계 및 화풍 파악에 있어 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특히 ‘궁조, 궁법, 축연’은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걸쳐 서울·경기지역에서 대활약을 하였던 대표적 화승들로서 불화의 격이 짐작된다.

이에 홍천사 만세루 봉안의 신중도(제석범천천룡도)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화기]

‘大清光緒十六年庚寅十月日三角山興天寺水月道場空花佛事 本寺大房上壇幀一軸 願佛幀一軸 神衆幀一軸 帝釋幀一軸 阿彌陀佛改粉 觀世音菩薩改金 願佛一尊像改金 南巡童子 海上龍王改彩 奉國寺大房上壇幀一軸 願佛幀一軸 神衆幀一軸 願佛一尊像改金 本月十六日神供二十五日夜點眼奉安于本寺…金魚都片手 亘照 模像 普庵肯法 碧隱誌閑 萬波定翼 蕙山竺衍 明應幻鑑 錦城性典 玩明應基 比丘慧照 比丘戒禪 比丘景林 比丘慧觀 比丘等閑 沙彌敬恩’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 신중도는 光緒 16年인 1890년 ‘亘照’가 수화승을 맡고 ‘普庵肯法 碧隱誌閑 萬波定翼 蕙山竺衍 明應幻鑑 錦城性典 玩明應基 比丘慧照 比丘戒禪 比丘景林 比丘慧觀 比丘等閑 沙彌敬恩’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만세루 제석천도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 규모로 제석천을 중심으로 天部世界の 여러 신들을 그린 비교적 간단한 구성의 신중도이다.

녹색 안료 일부의 박락과 변색이 보이고, 화면에는 부분적으로 뿔핍과 함께 찢음으로 오염된 흔적을 볼 수 있다.

화면 하단 중앙쪽으로 화기란을 마련하여 조성연대, 봉안처, 화승, 시주자 등을 기록하였다.

화면의 중앙의 제석천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며 제석천을 감싸듯 天部衆과 天女 등의 권속들이 빙 둘러 배치되어 있다.

제석천의 경우 원형의 頭光과 장방형 身光을 구비한 모습으로 정면을 향하여 두 손을 합장하고 있다. 두광은 짙은 암록색인 반면 신광은 토황색에 가까운 밝은 갈색 바탕에 황색의 구불구불한 선과 직선을 반복적으로 그어 마치 몸에서 빛이 방사하는 것처럼 처리하여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한편 제석천 주위로는 관을 쓰고 笏을 든 왕 모습의 천부중 8위가 배치되었는데 하단에는 제석천을 향하여 八꼴을 이루며 좌우로 각 3위씩 6위를 두고, 상단 어깨 좌우로는 각 1위씩 2위의 천부중을 그려 놓았다. 천부중은 遠遊冠 형식의 관모를 쓴 상이 4위, 方形 또는 半月形 日月冠을 쓴 상이 4위로 일월관을 쓴 상의 경우 日宮天子와 月宮天子로 추정된다. 그리고 상단 천부중 옆으로는 幢幡을 들고 과일을 받쳐 든 天女의 모습이 보이며, 상단 중앙부 제석천 머리 위 좌우로는 幢과 扇을 들고 있는 두 명의 童女가 자리하였다.

왕의 모습을 한 천부중은 턱이 두툼하니 통통한 얼굴에 눈과 코를 가는 먹선으로 그리고 주위에 열게 음영을 가하였는데, 눈동자가 대부분 가운데 쪽으로 몰려있어 해학적인 느낌이다.

채색의 경우 의복과 관 및 광배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주로 나타나는 탁한 赤色과 暗綠色이 주조를 이룬 반면, 각 존상의 피부색은 흰색에 가까운 정도로 밝게 처리하고 하늘 공간과 관 및 의복에 밝은 청색을 사용하여 환한 느낌을 준다. 천부중들이 들고 있는 홀과 관모에 부분적으로 금이 사용되고, 옷 위에 그려진 문양 일부에도 금을 사용하였다. 배경을 이루는 구름은 녹색과 밝은 갈색 구름으로 바름질을 가하여 입체감을 주고 있다.

화면 하단 중앙의 書記의 내용으로 보아, 이 불화는 淸信女 乙未生趙氏妙法月과 乙巳生元氏의 시주로 光緒 16년인 1890년 도판수 ‘금조’가 책임화승을 맡고 ‘정익’과 ‘성진’이 참여하여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화는 조성연대와 봉안사찰, 조성화원 등이 명확할 뿐 아니라, 19세기 후반 한성부와 경기도 지역의 제석천 중심의 신중도 도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채색과 존상의 형태 등에 있어서도 19세기 후반의 양식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화기]

大清光緒十六年庚寅十月日三角山興天寺空花佛事

本寺他本幀畫上中幀合七軸改金改彩改粉尊像合六位

本月十六日神供二十五日夜點眼奉安于本寺

緣化所
 證明 翠山錦哲 映曇普潤
 誦呪 懶庵允祚
 金魚 都片手 亘照
 模像 萬波定翼 錦城性典
 鍾頭 沙彌法念
 斗仁
 茶角 沙彌法念
 供司
 比丘法泉
 別供
 淨桶 萬成
 都監
 比丘坦照
 化主
 施主 清信女乙未生趙氏妙法月
 坤命乙巳生元氏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만세루 제석천도

도량장엄용 의식불화인 오여래도·사보살도·팔금강도로써, 오여래도 5점, 사보살도 4점, 팔금강도 7점(8점 중 1점 결실) 등 총 16점이다. 오여래도·사보살도·팔금강도는 불교의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야외 의식도량에 현괘되어 도량 주위를 結戒하고 수호하는 기능을 맡은 도량장엄용 불화로 대부분 괘불도와 함께 조성된다.

五如來圖는 南無多寶如來(孤魂들로 하여금 탐욕을 버리게 하고 法材를 貝足케 함), 無妙色身如來(누추하고 험상한 형상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원만하게 함), 南無甘露王如來(바늘처럼 가는 목구멍을 개통시켜 甘露味를 먹게 함), 南無廣博身如來(六道의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허공과 같은 청정한 法身을 얻게 함), 南無離怖畏如來(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涅槃의 즐거움을 얻게 함) 등 5폭으로, 각 폭의 향우측 상단에 존상의 명칭이 적혀있다. 오여래는 수인과 착의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두 녹색의 두광과 흰색의 신광을 지니고 붉은 법의를 입고 붉은 연꽃 위에 두 발을 딛고 서있다. 다보여래와 감로왕여래는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들어 2, 3지를 구부리고 왼손은 가슴부근으로 올려 엄지와 3지를 맞대고 있으며, 이포외여래는 오른손을 길게 무릎 아래로 늘어뜨리고 왼손은 가슴부근으로 올려 엄지와 3지를 맞대었다. 광박신여래는 두 손을 가슴 부근으로 올려 손가락을 맞대고 묘색신여래는 두 손을 벌려 설법인을 취하였다.

四菩薩圖는 오여래도와 같이 불교의식을 행할 때 도량을 장엄하는 역할을 하는 번이다. 일반적으로 장엄용번에 그려지는 사보살은 金剛索菩薩, 金剛眷菩薩, 金剛愛菩薩, 金剛語菩薩이지만, 홍천사 번의 경우 그림에 기록된 명칭으로 볼 때 神衆壇에서 奉請하는 104位신중 가운데 方便擎物眷菩薩(어느 곳이든지 모임이 있는 곳이면 그 권속들을 데리고 가서 갖가지 방편으로 깨달음을 일깨우는 보살), 現身調伏愛菩薩(중생따라 신통을 나타내어 잘못된 사람을 조복하는 보살), 普警群迷語菩薩(청정한 운음으로 널리 깨달음을 주는 보살) 등 세 보살과 大聖引路王菩薩 등 4구를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 보살은 모두 녹색의 두광과 백색의 신광에 붉은색의 보관을 쓰고 소매폭이 넓은 붉은 천의를 입고 좌측 또는 우측을 향해 합장한 채 연꽃 위에 두 발을 딛고 서있다. 반면 인로왕보살은 幢幡을 든 동자와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靈山齋를 통해 천도된 망자들은 극락으로 인도하기 위해 인로왕보살이 하강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八金剛圖는 사보살도, 오여래도처럼 불교의식을 행할 때 그 도량을 장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엄용 불화이다. 靑除災金剛(중생들의 전생의 재앙을 없애줌), 辟毒金剛(중생들의 온갖독을 破해줌), 黃隨求金剛(모든 공덕을 주재하여 소망을 성취시켜 줌), 白淨水金剛(보장을 주재하여 열녀를 없애 줌), 赤聲火金剛(부처님을 보면 몸에서 빛이 나고 바람처럼 달려가는 금강), 定除災金剛(자비의 눈으로 物을 보아 지혜로 재난을 없애 줌), 紫賢神金剛(굳게 단혀있는 마음의 땅을 파헤쳐 중생들을 깨우침), 大神力金剛(物을 따라 중생을 조절하여 지혜를 성취하게 함) 등으로 구성되지만, 여기에서는 黃隨求金剛圖가 결실되어 7폭만 남아있으며 대신력금강 대신에 대예적금강도가 포함되어 있다.

7폭 모두 가는 먹선을 이용하여 전체 화폭의 안쪽에 방형으로 화면을 구획하고 그 중앙에 금강의 모습을 크게 부각시켜 묘사하였다. 붉은 옷에 두건을 쓴 紫賢神金剛을 제외한 나머지 금강은 모두 근육이 불거진 신장의 모습으로 칼·창·철퇴 등을 들고 있는데, 백정수금강은 마치 南

極星(壽星老人)처럼 정수리가 높이 솟아있는 모습이 흥미롭다. 또한 대예적금강은 3面3目8臂像으로 손에는 金剛鈴, 印璽, 寶劍, 法輪, 鐺, 牽索 등을 들고 있으며, 다른 금강들과 달리 방형의 대좌위에 두 다리를 벌린 채 정면을 응시하고 앉아있다. 대예적금강은 석가모니불의 화신으로서 일체의 악을 제거하는 위력을 가졌는데, 팔금강을 거느리고 불법을 옹호하며 중생을 교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보통 8금강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대신력금강 대신에 대예적금강을 함께 그린 것이 특이하다.

홍천사 도량장엄번은 팔금강 중 黃隨求金剛을 제외한 16점이 남아있는데, 화기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조성연대는 알 수 없다. 오여래도와 사보살도, 팔금강도 등 도량장엄번이 일반적으로 괘불도와 함께 조성되는 것으로 보아 현존하는 홍천사 괘불도(1832년 작)와 함께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홍천사 괘불도와 번은 양식이 달라 함께 조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장엄번은 얼굴의 형태와 채색 및 문양 등에서 1898년에 제작된 홍천사 극락보전 천룡도의 양식과 유사하여, 조성연대는 1898년 경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음영법을 사용하는 등 19세기 말 서울·경기지역의 불화양식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19세기 말 홍천사의 불교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사진자료



①묘색신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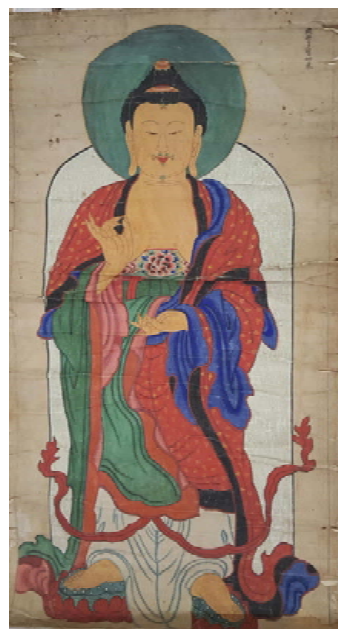
②광박신여래



③이포외여래



④감로왕여래



⑤다보여래



⑥현신조복예보살



⑦보경군미어보살



⑧방편경물권보살



⑨대성인로왕보살



⑩청제재금강



⑪벽독금강



⑫정제재금강



⑬백정수금강



⑭자현신금강



⑮대예적금강



⑯적성화금강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목조여래좌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천사길 29(돈암동) 홍천사에 전해오는 목조여래좌상은 높이 56.3cm로 조선시대에 조성된 중소형 불상이다. 불상의 크기로 보아 조선충독부 관보(1933년)와 『봉은본말사지』에 실린 「홍천사 귀중품 목록」에 보이는 1척8촌의 아미타불상으로 생각된다.

불상은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데, 허리가 길고 어깨가 넓은 장대한 신체의 비례는 조선시대 불상 가운데서도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전기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주목된다. 얼굴을 약간 앞으로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세를 취하고, 불신(佛身)의 크기에 비해 얼굴은 작은 편이며, 그에 비해서 머리의 측면 폭은 넓다.

육계가 낮아 머리와의 경계가 드러나지 않는 두부에는 나발이 큼직하고 중앙에 반달형의 중간계주와 정상에 둥근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가 표현되었다. 개금이 두꺼워 이목구비의 세부를 알아보기 어려우나 미간의 백호에는 수정이 박혀있고 우뚝한 콧날과 넓은 인중, 미소 띤 자비로운 입가에서 차분하고 단엄한 상호를 보인다.

대의(大衣)를 입은 착의형식은 가사를 두벌 겹쳐 입은 이른바 이중착의법(또는 변형 편단우견)으로 오른쪽 어깨에 부견의(覆肩衣)로 불리는 옷이 걸쳐지고 대의자락이 왼쪽 어깨 뒤로 넘겨져 늘어졌다. 앞가슴은 U자형 넓게 열려 안에 입은 내의(승각기)가 겹쳐서 사선의 주름을 이루는 것이 잘 드러나고 가부좌한 두 다리를 덮은 옷자락은 오른발을 반쯤 덮고 무릎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양 무릎위에 주름을 이루고 있다. 양 손은 통통하고 손가락 하나하나가 힘 있게 조각되었다. 수인(手印)은 설법인(說法印, 下品中生印으로도 불림)으로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닿 듯이 가까이 하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 엄지와 중지를 맞닿 듯 가까이 하고 있다.

불상의 뒷면에는 넓은 직사각형의 복장공이 있으나 현재 불상의 바닥에 인위적으로 뚫은 가로지름 10.2cm, 세로지름 11cm의 원형 복장공이 뚫려있고 복장물은 없어진 상태이다. 다만 지본목서의 다라니 2건과 발원자명이 목서된 목판(13cm x 9.1cm)이 남아있는데, 다라니 2건은 처음 조성 당시의 것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불상은 얼굴을 앞으로 내민 듯한 자세를 비롯해서, 허리가 길고 어깨가 넓은 장신형의 신체 비례와 체구에 비해 작은 얼굴과 이목구비의 표현, 상호 등, 세부 표현에서 1606년에 조성된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 1719호)과 매우 유사함을 보인다. 특히, 사선으로 표현된 내의가 비스듬히 물결처럼 휘어진 것과 살이 많아 두터운 손과 구부린 손가락의 형태는 동학사 아미타불상과 비교될 만하고, 다리를 덮은 옷주름의 표현은 본존 동학사 석가여래좌상과 흡사하다. 공주 동학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이 17세기 초의 작품인 것을 감안할 때, 홍천사 목조여래좌상 역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조각승 석준(釋俊)과 각민(覺敏) 등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삼불좌상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홍천사 목조여래좌상도 이들 조각승 유파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천사 목조여래좌상은 조성발원문이나 복장이 남아있지 않지만, 조형적으로 우수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양식적인 면에서 볼 때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무렵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목조보살좌상

홍천사 극락보전에 봉안된 목조보살좌상은 높이 101.5cm의 중대형 보살상으로, 나무로 된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보관은 정면을 향하여 날고 있는 두 마리의 봉황이 좌우대칭을 이루며, 화문(花文)과 연화문 장식 등이 붙어 있고, 상단에 다섯 개의 화염문과 측면에 좌우로 관대(冠帶)가 매달려 있다. 보관 겉면에 몇 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장식 일부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머리 정상에 높은 보계[상투]가 있고, 보관 밑 이마에 머리카락이 단정히 처리되어 있으며, 보살의 머리카락이 귀를 타고 내려와 어깨 위에 세 가닥으로 늘어져 있다. 얼굴은 조선후기 제작된 불상에 비하여 역삼각형에 가까운 가름하다. 머리는 어깨에 비하여 큰 편이지만, 상반신이 길고 하반신이 넓어 안정된 신체비율을 보인다. 이목구비가 단정한 편이고, 선정(禪定)을 하듯이 가늘게 뜬 눈의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고, 코는 뽕족하고 콧등은 짧아 조선후기에 제작된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정형화된 인상과 다르다. 미간 사이에는 얼굴에 비해 큰 백호가 있다. 양 손은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무릎에 놓인 오른손과 어깨까지 치켜든 왼손에 연봉오리가 달린 줄기를 자연스럽게 들고 있다. 대의 안쪽에 편삼을 걸치고,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이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끝자락이 엉덩이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대의 안쪽에 가슴을 덮은 승각기는 상단이 자연스럽게 접혀 있어 연관형으로 처리된 17세기 중반 이후에 제작된 보살상과 차이가 난다.

홍천사 목조보살좌상의 복장물은 이전에 대부분 없어졌고, 조성 시기와 연화질을 밝힐 수 있는 복장발원문도 남아있지 않다. 문화재 지정 조사를 계기로 남아있는 복장물을 조사한 결과, 1543년(嘉靖22, 癸卯) 황해도 토산 석두사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 6-7권(앞부분 망실), 1578년(萬曆6, 戊寅)에 경기도 용인 광교산 서봉사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 4-5권 등의 경전과 주서다라니, 다수의 비단 편만 남아있다.

복장에서 발견된 경전 1543년 석두사에서 펴낸 『묘법연화경』 6-7권 마지막 장에 묵서된 내용은 시주질에 속한 인물들이다.

홍천사 목조보살좌상은 제작 시기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선시대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기년명 불상이 수 백점 조사되어 양식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우선 홍천사 목조보살좌상은 신체비례에서 조선후기, 특히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보살상보다 머리가 크고 어깨가 좁은 편이다. 또한 보살상이 상반신이 길고 하반신이 넓어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비례는 조선후기보다 조선전기에 유행했다. 홍천사 목조보살좌상은 15세기에 조성된 경북 영주 흑석사 불상(1458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천주사 불상(1482년)과 달리 신체비율에 약간의 왜곡이 있고, 16세기 후반에 제작된 문경 대승사 불상(1586년) 등과 유사한 편이다. 또한 발견된 복장물 중에 『묘법연화경』이 모두 16세기 간행되어 보살상의 조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홍천사 목조보살좌상은 내부에서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양식적인 특징을 통하여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살상이 홍천사에 언제부터 봉안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전기에 왕실 후원 사찰로 유명한 홍천사는 1536년에 한성부에서 홍천사의 빈터를 직급에 따라 관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보면 16세기 중반에 완전히 폐사되었

다. 이후 1799년에 스님들이 홍천사 중창을 발원한 후, 1853년(철종4) 5월에 구봉계장(九峰啓壯)이 대웅전을 창건하고, 다른 사찰에서 불상들을 이운하여 삼존상으로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전 불상은 1933년 1월 24일에 발간된 『조선총독부관보』 1811호에 홍천사 귀중품으로 “아미타불(1척 8촌), 관음보살(2척2촌), 대세지보살(3척 7촌)”이라 적혀 있고, 1943년에 안진호 스님 등이 수집한 자료를 묶은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에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을 나열하고 있는데, 목조보살좌상을 대세지보살로 적어놓았다. 따라서 홍천사 목조보살좌상은 보존상태도 완전하고,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 한국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 작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복장물 『묘법연화경』 6-7권 묵서]

전면 - 大施主 趙孟童 兩主, 林順連 兩主, 吳先 兩主, 李碩孫 兩主, 申論石 兩主, 金氏繼德保体, 李根山 兩主, 徐檢成兩主, 李業成 兩主, 盧成山 兩主

후면 - 崔守連 兩主, 田千孫 兩主, 金石 兩主, 郭孫 兩主, 崔順根 兩主, 幹善道人 法能 保体, 嘉靖四十五年丙寅(1566)五月日竟祚

참고 1) 1933년 1월 24일, 조선총독부 관보 제1811호 사찰유재산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홍천사(興天寺) 귀중품

명칭	개수	품질	형태	크기
아미타불	1	목제도금	좌상	높이 1척8촌
관음보살	1	철제도금	"	높이 2척2촌
대세지보살	1	목제도금	"	높이 3척7촌

참고 2)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

홍천사지(興天寺誌)

소상(塑像)

番號	名稱	員數	品質	形狀	寸法	作者	年代
1	阿彌陀佛	1	木質金相	坐	높이 : 1.80 너비 : 90	未詳	未詳
2	四十二手觀音	1	鐵質金相	坐	높이 : 2.27 너비 : 3.50	未詳	未詳
3	大勢至菩薩	1	木質金相	坐	높이 : 3.30 너비 : 1.30	未詳	未詳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석조지장삼존상 외 시왕상 일괄

홍천사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삼존상을 비롯하여 시왕상 10구, 귀왕상 2구, 사자상 2구, 판관상 2구, 금강역사상 2구, 동자상 6구로 총 27구가 봉안되어 있다.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 대부분 존상은 석재(石材)로 조성되고, 사자상과 금강역사상은 흙으로 만들었다.

본존인 지장보살상은 좌상으로, 총 높이가 84.5cm인 중소형 불상이다. 도명존자(높이 74cm)와 무독귀왕(높이 81.5cm)은 입상이고, 시왕과 의자가 하나의 돌에 조각된 시왕상(조강대왕 총 높이 114.6cm)과 판관 등은 입상이다. 사자상과 금강역사상(높이 135-138cm)은 재료와 크기가 다른 존상과 차이가 난다.

본존인 지장보살상은 민머리의 성문비구형(聲聞比丘形)으로, 상체를 앞으로 조금 내밀고, 신체와 같이 조각된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손바닥에 둥근 보주를 들고 있고, 왼손은 편상태로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았다. 이러한 손의 형태는 조선후기 제작된 석조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인(手印)이다. 보살은 각진 얼굴에 가늘게 뜬 눈, 콧등이 평평한 삼각형의 코, 미소를 머금은 입, 길게 늘어진 귀를 가지고 있다. 목은 짧게 수평으로 형식화 된 삼도(三道)가 새겨 있다.

착의법은 대의 안쪽에 편삼(扁衫)을 입고,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반달모양으로 덮고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왼쪽 어깨의 대의자락은 수직으로 내려와 복부(腹部)에서 편삼과 겹쳐져 있다. 이러한 겹쳐진 표현은 17세기 중반에 제작된 목조불상에서 편삼이 대의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것을 사실적으로 조각한 것과 차이가 난다.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은 복부에서 앞으로 한 가닥의 옷주름이 늘어져 있고, 그 옆으로 낮은 옷자락이 펼쳐져 있다. 대의 안쪽에 가슴을 가린 승각기(僧脚崎)는 상단이 수평이고, 내부에 대각선으로 간략하게 접혀 있다. 불상의 뒷면은 목 주위에 대의를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 자락이 늘어져 있다.

지장보살의 협시인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은 지장과 크기가 비슷하다. 도명존자는 민머리에 합장을 하고, 무독귀왕은 문관복(文官服)에 원류관을 쓰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두고 차수(叉手)하고 있다. 얼굴형과 이목구비(耳目口鼻)에서 풍기는 인상은 도명존자와 유사하다.

지장삼존상의 좌우에는 벽면을 따라 왼쪽[向右]에 홀수 대왕을, 오른쪽[向左]에 짝수 대왕을 배열하였다. 시왕상의 사이사이에 동자상과 불단 앞에 귀왕(鬼王), 판관(判官)을 세워놓았다. 한쪽 벽면에 사자(使者)와 무기를 든 금강역사가 서 있다.

명부전 내 존상들은 대부분 복장구가 열려 있고, 일부 복장구가 훼손되지 않은 시왕상이 있다. 기존 재)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도록에 제4 오관대왕상에서 1873년에 시왕을 개채한 원문이 발견되었다.

홍천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은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아 조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후기 제작연대가 밝혀진 기년명(紀年銘) 불상이 수 백점 조사되어 양식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홍천사 명부전 불상은 경주 지역에서 산출되는 불석을 이용한 점과 17세기 후반에 조각승 승

호와 그 계보가 만든 불상과 양식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1680년대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명부전 불상과 양식적으로 비슷한 석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은 경북 청도 덕사(1678년), 경남 창원 성주사(1681년), 부산 기장 장안사(1684년) 등 영남 지역에 주로 남아있어 19세기 후반 이 지역에서 이운되어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홍천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은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선후기 기년 명 불상과 양식적인 특징을 비교하면, 17세기 후반에 영남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보살상이 홍천사에 언제부터 봉안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전기에 왕실 사찰로 유명한 홍천사는 1536년에 한성부에서 빈터를 직급에 따라 관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보면, 폐사(廢寺)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799년에 스님들이 홍천사의 중창을 발원한 후, 1853년(철종4) 5월에 구봉계장(九峰啓壯)이 대웅전을 창건하고, 1855년에 명부전이 건립되었다(참조1).

이 명부전 불상은 1933년 1월 24일 『조선총독부관보』 1811호에 게재된 홍천사 귀중품 대장에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등이 총 27점이 적혀 있고(참조2), 1943년에 안진호 스님 등이 수집한 자료를 묶은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에 지장보살삼존상이 존재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참조3). 따라서 홍천사 명부전 불상은 보존 상태로 완전하고, 17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시왕개채원문]

十王改彩願文

伏以願滅四生六途法界●●多劫生來諸業障我●●廣大募緣成就佛事奉安于
漢東三角山興天寺以●●●●者受者生者亡者願諸●障悉消●世●行菩薩道
願共法界諸衆生 同八彌陀大願海

證明 青峰應策	比丘 釋云	施主秩
寬河海禪	比丘 善益	乾命辛未生 金氏
幻般道岸	改彩拜 在根	坤命甲辰生 金氏
幻隱允定	比丘 釋祚	乾命甲申生 張淳奎

龍隱快雲 都監 秀山當潤

會主 應化元淳 別座 靈隱寶泉

誦呪 春潭度憲 鍾頭比丘 在學

龍海修晶 比丘 善旭 同治十貳年癸酉五月日

比丘 在謙 淨桶比丘 敏初

金魚 比丘 在典 茶角沙彌 頓法

比丘 奉炯 都化主 漢鏡學能

(●는 없어진 부분)

참고 1) 《京畿右道楊州牧地三角山興天寺寮舍重創記文》

寺本以興天古社 三遷爲新興寺 而唯我太祖神德后貞陵항포奉供之所也 聖后神明之德 國家追獎之典及先王 臣筭啓之請 詳悉於菱洋土所贊屠維協治(己未)之記 則不敢疊架 而寺之前後剏修因緣實有所稱頌敬服矣 蓋其剏也 性敏師久而住持 其頽也 敬信師繼而修葺 迄于憲宗丙午(1846) 啓壯師先建七星閣 而爲國祚祝釐之所 越己酉(1899)春 性慧師獨剏寂照庵 而說念佛觀禪之室 哲宗癸丑(1853) 啓壯師又剏大雄殿, 而廣開人天之化問 乙卯(1855)春 舜猷師親建冥府殿 而薦生靈之迷道如上種種功德 亦莫非自上愛護之德 則將欲報之罔極矣 事之未遑者 惟波寮舍 而遷延已久 頽廢益甚 嗚呼盛哉 我聖上卽位之明年乙丑(1865) 自雲峴宮 發無漏之妙因 行一施之洪恩 募化各道列邑 收若干財 而其材瓦鐵物亦皆恩念所賜矣 於是 處均掌其材 贊奎董其役 召嶺南名匠 不月竣事 左右之分翼 前後之布排 比前倍蓰 而寺如是重重新新而興矣 既落成 改其扁曰興天寺 蓋因其舊制而然矣噫 國家之另加護念 同一益茂於仙李萬歲之春 而若其均奎及快明應策諸上士 其餘各當所費之師亦一敏老之後 毘而相繼於無窮 則五佛冥冥福國 何啻萬世而止哉 小衲生長蓬華之下 幽蟄寂滅之場 昧於事體 拙於文字 而亦在臣民之一 則油然有忠君愛國之誠 故稽首再拜而以爲記 崇禎紀元後四甲己巳 重陽節 四佛山人 景雲以祉 謹識 道庵門孫 尙月堂 天如 書梓

참고 2) 1933년 1월 24일, 조선총독부 관보 제1811호 사찰유재산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흥천사(興天寺) 귀중품

명칭	개수	품질	형태	크기
지장보살	1	목제도금	"	높이 2척7촌
도명존자	1	석제도채	입상	높이 2척3촌
무독귀왕	1	"	"	높이 2척6촌
대왕	10	"	좌상	높이 3척
판관	2	"	입상	높이 2척6촌
녹사	2	"	"	높이 3척2촌5분
거령신	2	토제도분	"	높이 4척7촌
동자	6	석제도채	"	높이 1척7촌
사자	2	"	"	높이 3척3촌

참고 3)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 흥천사지(興天寺誌)
소상(塑像)

番號	名稱	員數	品質	形狀	寸法	作者	年代
1	地藏菩薩	1	木質金相	坐	높이 : 2.70 너비 : 1.50	未詳	未詳
2	兩補處尊	2	玉質彩相	立	높이 : 2.30 너비 : 1.10	未詳	未詳
3	大王	10	石質彩相	坐	높이 : 3.00 너비 : 1.10	未詳	未詳

※ 상세규격

명칭	수량	규격(cm)	
①지장보살상	1	높이 84.5	무릎 너비 56
②무독귀왕	1	높이 81.5	어깨 너비 28.5
③도명존자	1	높이 74	어깨 너비 26
④~⑬시왕상 / 제1대왕	10	높이 87.0~93.2 / 총 높이 114.6(높이 91)	무릎 너비 35~44
⑭⑮귀왕상	2	높이 67.5~77	어깨 너비 24~25
⑯⑰판관상	2	높이 72~76.5	어깨 너비 24~25
⑱⑲사자상	2	높이 93.5~98	어깨 너비 27~28
⑳㉑금강역사상	2	높이 135~138	최대폭 37~43
㉒~㉖동자상	6	높이 37.5~56	어깨 너비 13~17.5

사진자료



석조지장삼존상(①지장보살좌상 ②무독귀왕 ③도명존자)



④ 제 1 진광대왕의좌상(좌) ⑤ 제2초강대왕의좌상(우1) ⑥ 제3송제대왕의좌상(좌2) ⑦ 제4 오관대왕의좌상(우2)



⑧제5 염라대왕의좌상(좌3) ⑨제6 변성대왕의좌상(우3) ⑩제7 태산대왕의좌상(좌4) ⑪제8 평등대왕의좌상(우4)



⑫제9 도시대왕반가상(좌5) ⑬제10오도전륜대왕반가상(우5)



⑭귀 왕상(2구)



⑮판관상(2구)



⑯사자상



⑰인왕상(2구)



⑱동자상(6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37호

2017년도 제7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 가. 심의일시 : 2017. 4. 6.(목) 10:00 ~ 12:3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6건 8작품 (조각 7, 회화 1)
 라. 심의결과 : 승인 5작품, 부결 3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7년 제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	강서구 마곡 더랜드 파크	조각	LOVER	○		
2-1	영등포구 영등포 1-4구역	조각	hope		○	시각적인 부조화
2-2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각	수직의 정원	○		
3	서초구 서초우성2차아파트	조각	I'm fine	○		
4-1	중구	조각	Blossom	○		
4-2	서울역 센트럴자이	조각	영원한 사랑		○	작품의 독창성 부족
5	강남구 미왕빌딩	회화	물방울	○		
6	송파구 퀀즈파크 9	조각	두 개의 기둥을 위한 앙상블 (Ensemble of two columns)		○	작품의 독창성 부족 설치위치 부적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3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대상 기간 : 2017.01.01. ~ 2017.03.31. 28개 단체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부서
2106	국제다문화 스포츠협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398 (상일동) 2층 고덕빌딩	한상진	2017-01-03	○다문화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다문화 장애 스포츠 활성화 ○다문화 국제 문화교류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107	퇴직공무원 재능기부강사 상록자원봉사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송인로2길 61 (길음동) 제분산상가동 105호	한근수	2017-01-12	○전문교육으로 재능기부 강사 양성을 통한 퇴직 자 인력풀 관리 ○퇴직 공무원의 사회 참여 및 재능기부와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정보제공 ○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강사 및 인력의 재능기부 와 봉사활동 관련 사업 ○재능기부 강사단 참여 자 모집, 교육, 현장배치 등 퇴직자 경력 활용 일자리 관련 제반 업무	행정국 자치행정과
2108	엘비스프레슬리서 울기념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142 (예장동)	이규진	2017-01-12	○로큰롤음악 보급 ○대중문화 콘텐츠 향상 ○관 광 선진화 등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109	나눔건강생활협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송인로19-7 (미아동)	조명환	2017-01-13	○건강한 생활과 사회문화 및 건강개선을 위한 교육과지원 ○장애인, 미혼모, 소년소녀가장, 노 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지원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자연환경보호, 시민 교육 ○시민의 건강 증진에 대한 연구, 홍보, 책자 발간 사업 등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110	비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44-7(서교동)	남지은	2017-01-17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및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운영 ○지역발전 일환의 사업 및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등의 마을사업 ○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중심으로 한 체험학습 및 온·오프라인 교육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111	통일경제포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9길 24-1 (영등포동) 301호	정서영	2017-01-20	○한반도 통일 관련 상시강연 및 캠프, 아카데미 교육, 세미나 강사 양성 ○통일의식 조사, 해외 사례 연구 및 탐방, 한반도 통일모델 연구 및 출 판사업 등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2112	리플리히 청소년 오케스트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0 (자양동)	주재연	2017-01-24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문 화 복지 지원 ○청소년 및 지역 주민 음악교육 ○문화소외지역 대상 공연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원사업	주관부서
2113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6나길 35 (봉익동) 605호	천명수	2017-01-24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제안 및 수행 ○지역 역사 자원 조사 ○지역 매거진 발행 등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2114	희망25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27-2 (충무로4가) 일우빌딩 2층	김성만	2017-01-23	○비영리분야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 컨설팅 ○비영리분야 자원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 실천 관련 캠페인 ○비영리분야 임직원 들의 네트워크 활동 지원 ○국내외 지원 및 봉사 활동 ○기타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115	골목문화예술마당 명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0길 14 (필동1가, هن즈빌딩) 4층	박동훈	2017-01-25	○지역내 노후건물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 시개발계획 기획·진행 ○지역민과 전문가 간의 협력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도시 환경 개선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허브 구축 ○미술 전시 공간 설치 사업 ○미술 전시회 사업 ○미 술 관련 창작 활동 지원 사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2116	사단법인 동북아교육문화교 류협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57 (장안동) 603호	최영표	2017-01-25	○동북아국가간의교육, 학술, 문화연구와 교류 및 후 원관련행사의개최 ○ 동북아국가 간의 교육자 치단체, 학교, 기관, 민간단체의 교류 알선 및 자매결연 지원 ○ 동북아국가 간 학교, 단체, 기관의 상호연수, 체험, 교환 프로그램의 운영 ○ 동북아국가의 언어학습 보급 및 그 지원 사업 ○ 기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사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2117	대학생 공간디자인 연합회 유이드(UIID)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학생회실	김도우	2017-01-25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익적인 역사, 문화 기 반의 도심재생 프로젝트 참여 ○ 대중에게 공간 경험적 가치를 제공하는 전시활동 ○ 각 대학 공 간 관련 학문 주제에 대한 정기적인 학술교류(월 1회)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2118	더좋은 은평 포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3 (대조동) 3층	김성호	2017-02-10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생태환경 정화 및 자 원봉사활동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 교육, 복지 등의 사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 관
2119	사단법인 일과 건강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면목동, 원진재단부설녹색 병원) 7층	양길승	2017-02-16	○노동자 안전, 보건 관련 교육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 저감 활동	일자리노동정책 관 노동정책담당관
2120	안중근평화재단청 년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여의도동, 한서리버파크) 1009호	정광일	2017-02-16	○안중근 평화마라톤 ○안중근 평화축구대회 ○ 안중근 정신 찾기 자전거 대행진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원사업	주관부서
2121	(사)한국장수축구 협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2길 6 (중곡동)	김종민	2017-02-16	○장수축구의 보급 및 대회 운영 ○노인생활체육 의 저변확대와 건강증진 사업 ○생활체육의 국내 외 교류사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122	광진마을공동체네 트워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12길19 (화양동)	이해남	2017-02-22	○마을공동체 관련 법령, 정책, 사업운영 등에 대한 정책사업 ○주민과 활동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마을주민들이 일상으로 소통하고 교 류할 수 있는 생활문화 사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 관
2123	서울청소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17 (논현동) 1층	유인휘	2017-02-23	○깨끗한 골목길, 공원 및 하천 등 청소활동 ○ 사회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활동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124	아시아 미래지식인포럼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0길 10 (응암동, 서문교회)	배경임	2017-02-28	○미래의 아시아 지식인들을 네트워킹하여 공존, 공생의 초석 마련 ○대한민국 청년들과 유학생들 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미래평화 담보 ○아시 아의 평화 및 공생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 및 토 론회 개최 ○기타 포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 요한 부대사업 등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2125	맘키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2길100 -15 (양재동, 기쁜소식강남교회)	차경희	2017-03-02	○가정화목을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인 성교육 행사 진행 및 상담서비스 지원 ○가족 인성교육 캠프운영서비스 ○임산부 부모교육 ○ 부모인성 교육을 통한 부부갈등해소 프로그램 실 시 등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126	동대문마을넷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68-2 (제기동) 3층	심상구	2017-03-0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연구개발, 교육, 홍 보 등의 사업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활 동가 양성 사업 ○지역 주민의 경제 활동 증진 및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 화를 위한 각종 위탁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를 위한 각종 이벤트 및 자원봉사 사업 ○그밖 에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 관
2127	용산사람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36길24 (한남동)	최준	2017-03-07	○마을공동체 관련 법령, 정책 등에 관한 사업 ○주민과 활동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 ○ 마을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 는 생활문화 사업 ○마을공동체 관련 홍보 사업 ○그 외 용산사람들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수익사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 관
2128	동고동락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68 (거여동)	장철진	2017-03-08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문화 스포츠 교 류사업 ○문화스포츠를 통한 남·북한주민 사회 통합 ○북한이탈주민의 화합·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	행정국 자치행정과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원사업	주관부서
2129	(사)대한황실 문화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89 (와룡동) 3층	이상협	2017-03-22	○전통문화의 현대화 접목을위한 문화컨텐츠 개발사업 ○전통문화 자료 및 예술품 수집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사업 ○문화예술가의 창작활동 영역 제공 사업 등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130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의 목소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28-4 (성산동) 2층	김철	2017-03-27	○한국과 일본의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민간 활동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다양한 민간 활동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양국의 화해를 위한 시민활동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관한 토론, 심포지엄, 저술, 출판, 기타 연구와 공론을 촉진하거나 기여하기 위한 활동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도모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의 교류활동 ○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기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활동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기부금의 모금과 관리 활동 등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2131	친구사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39-1(묘동)	김찬영	2017-03-28	○성소수자 인권옹호를 위한 인권 침해 대응 및 지원 ○성소수자 상담, 문화개발 ○커밍아웃 프로젝트100, 성소수자 인권지지 프로젝트 ○성소수자 문화생활 콘텐츠 제작사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132	서울지구시민 운동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0길 7 (창성동) 2층	윤수정	2017-03-28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시 사업 등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133	좋은세상 이웃사람들	서울특별시 양천구 등촌로 80 (목동, 삼성빌딩) 202호	이광원	2017-03-30	○기초수급, 차상위 틈새계층(장애인, 홀몸어르신,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정서지원, 물품지원, 건강지원, 여가지원 사업 ○재능나눔 사업 ○후원결연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4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대상 기간 : 2017.01.01. ~ 2017.03.31. 39개 단체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사유	주관부서
88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용산구지역본부 (구, 환경보호국민운동 용산구지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3길 17 (청파동3가) 2층	박동현	2017-02-14	단체명칭 변경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62	서울흥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22, 흥사단회관 2층 (동숭동)	김다호	2017-02-03	대표자 변경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114	해병대 관악전우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54-1 (신림동) 가로공원 내	조인	2017-02-21	대표자 변경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528	(사)환경교육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5길 21 (대흥동) 골드빌딩1층	이대형	2017-03-31	정관 및 주사무소 변경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593	대안교육연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혁신파크 1-309	태영철	2017-03-30	주된사무소 변경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767	의거 귀손용사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51 (길음동, 유명환의원) 지1층	유인덕	2017-02-10	주된사무소 변경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897	성미산 청소년 교육활동 연구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3나길 6 (성산동)	이충훈	2017-03-02	대표자 변경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947	(사)청년여성문화원	서울특별시용산구대사관로31길 24, 2층 (한남동, 캠퍼스빌딩)	진민자	2017-02-10	대표자 변경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966	시민119산악구조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87 (녹번동) 302호	김진미	2017-01-23	대표자 변경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130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2길 35 (상도동, 백구주택) 301 호	김도은	2017-01-19	대표자 변경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1141	함께하는문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역곡말길 9 (역곡동, 내곡동종합시설) 3층	김은주	2017-01-10	주된사무소 변경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사유	주관부서
1156	서울송파JC미래재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36길 17 (방이동) 202호	최종철	2017-02-23	단체명칭 변경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1272	사단법인 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구, 우당이회영선생기념 사업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10길 17, 우당기념관 (신교동)	홍일식	2017-02-08	단체명칭 변경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1274	송파녹색자전거봉사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74 (방이동) 성내천 테니스장	박복심	2017-03-28	대표자 변경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1273	씨라이트 에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07 (구로동, 오피스1) 369호	임두연	2017-02-15	주된사무소 변경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1339	한국청소년희망드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길 8 (반포동, 반포프라자) B171호	이기운	2017-03-30	주된사무소 변경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1370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2길 63-3 (독산동) 4층 금천구 NPO 지원센터	조은하	2017-02-14	대표자 변경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1422	공익실천네트워크 (구, 공익실천연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6 (역삼동, 현익빌딩) 1212 지하1층	문경철, 김 연진	2017-02-07	명칭, 대표자, 소재 지 변경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1432	강동녹색자전거봉사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33길 16 (천호동) 1층	김홍식	2017-03-27	대표자 변경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1467	교육공동체 단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5길 3-23 (석촌동)	김승태	2017-02-27	주된사무소 변경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1529	사단법인 효창원7위선열 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09-1, 401 호(청파동1가, 대산빌딩)	이명수	2017-01-05	대표자 변경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1607	서울시어머니안전지도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24, 2층 (신림동, 새한빌딩)	이현주	2017-02-03	대표자 변경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1632	한국나눔문화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42길6, 2층 (면목동, 미소피부)	김진순	2017-01-20	대표자 변경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1639	공익법률기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503호	오재욱	2017-03-09	대표자 변경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1722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전문가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인로1길 83-9 (내곡동, 농업기술센터청사)	심진석	2017-01-18	대표자 변경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사유	주관부서
1731	서울에너지다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2길 28 (방학동, 도봉여성센터, 보육정보센터) 3층 여성창업지원실 내 창업보육실 2호	오여주	2017-03-27	주된사무소 변경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730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1동 504호	조혜인	2017-03-10	대표자 변경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1754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 (가양동, 가양테크노타운) 304-2	이상근	2017-02-08	주된사무소 변경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1767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246 (마천동, 송파구 재활용센터)	송금옥	2017-01-23	대표자 변경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860	한국생활효실천운동본부 (구, 효나라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길 34 (온수동, 예시안) 201호	조은섭	2017-03-27	단체명칭 변경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1868	캠퍼스 에너지 세이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외로43길 15 (양재동, 로얄퀀클러하우스) 5층	강해원	2017-02-17	대표자 변경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875	착한 뉴스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6023호	오민영	2017-01-24	주된사무소 변경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1969	사람과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견지동, 조계사) 신도회관 4층	이동명	2017-03-09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1973	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36 (합정동) 상일빌딩 501	김혜애 외 2	2017-03-13	정관 및 소재지 변경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984	롤링주빌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1동 4층 4F001호	유종일	2017-02-02	주된사무소 변경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2015	강남마을넷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21 (일원동, 일원역) 지하2층 6호	김오경	2017-01-02	대표자 변경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016	시민안전파수꾼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65 (명동1가, 보림빌딩) 601호	권용희	2017-01-26	주된사무소 변경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2057	생명문화학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마포동, 한신빌딩) 1303호	하상훈	2017-03-13	대표자 변경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84	(사)중랑문화연구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공원로 7-3 (망우동)	남화창	2017-03-21	주된사무소 변경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4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동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대상 기간 : 2017.01.01. ~ 2017.03.31. 1개 단체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관부서	말소일	말소사유
1857	영등포구 복지인 사랑나눔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다길 13-5 (신길동) 106호	신박문	2015-01-23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017-01-03	신청말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45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 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1항·제7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7조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 임원 등의 선출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을 정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예고 앞서 그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행정예고기간: 2017. 4. 13. ~ 2017. 5. 4. (20일 간)
2. 행정예고목적: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3. 공고방법: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보(공보)
4. 개정이유: 그 동안 표준선거관리규정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정하고자 함
5. 의견제출 및 문의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02-2133-72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나. 의견서 제출방법: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1층) 또는 이메일(hyjeong@seoul.go.kr)

다. 의견서 기재사항

-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 1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20호(제정 2015. 5. 7.) 관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 및 조 정관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정관 등”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 또는 조합설립추진위 원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의 조합임원·대의원 또는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의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 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 및 조 합 정관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정 관 등”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 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의 조합임원·대의 원 또는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이하 “임원 등”이 라 한다)의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 문구 정리
제2조(성격) 이 규정은 조례 제47조에 따라 조합 등이 임 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정함에 있어 관 계법령·조례·정관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정에 맞게 작성한 <u>최소 기준</u>으로서 다른 기준에 우선 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성격) 이 규정은 조례 제47조에 따라 조합 등이 임 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정함에 있어 관 계법령·조례·정관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정에 맞게 작성·보급한 <u>규정</u>으로서 다른 기준에 우선 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문구 정리
제3조(기본원칙) 조합은 임원 등의 선출의 민주적이고 투 명한 선거관리업무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공정한 선거의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는 직접, 보통, 비밀, 평등의 원칙에 의한다. 3. 조합원(또는 토지동소유자)은 제2호의 원칙 범위 내에 서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4. 조합 등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의 사무는 제2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 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 다.	제3조(기본원칙) 조합은 임원 등 선출의 민주적이고 투명 한 선거관리업무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 리해야 한다. 1. ~ 3. 변경 없음 4. 조합 등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사무는 제2호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 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문구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제4조(선거관리규정 등의 작성) ① 조합 등은 이 규정에 따라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한다.	제4조(선거관리규정 등의 작성) ① 변경 없음	
1. 제3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8조, 제40조 내지 제54조를 확정할 것.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그 외의 규정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3. 당해 사업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규정 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조례, 이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관할 구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1.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7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0조,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2조, 제23조 제2항·제3항,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 내지 제6항, 제31조, 제33조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제6항,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0조 내지 제54조를 확정할 것 2.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 제39조, 제55조는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3. 변경 없음 ② 변경 없음	- 확정(강행)이 필요한 조항을 명확하게 정리 (제14조제1항 추가) -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한 조항을 명확하게 정리
제5조(민법 등의 준용) ① 본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민법 등 관계 법률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 등의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4조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제2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개정 2015.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 등이 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이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15.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u>고시한 날부터</u>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 등이 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이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문구 정리
<부칙 신설>	부 칙 <개정 2017. 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u>고시한 날부터</u>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전에 인가·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은 제1조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거쳐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 개정된 규정 부칙 신설
[별표] ○○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조합 정관에 따라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대의원을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조합 정관에 따라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대의원을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구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은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라 함은 조합 총회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 2. “정관”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임원”이라 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 및 이사, 감사를 총칭하여 부르는 지위를 말한다.(부조합장이 있는 경우 부조합장을 포함한다.) 4. “조합장”이라 함은 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5. “대의원”이라 함은 법 제25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는 조합원의 대표를 말한다. 6.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시행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로서 법 제19조 규정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7. “대의원회”라 함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를 말한다. 【주】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법 제25조제3항), 대의원회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영 제36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조합장의 경우 대의원의 지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관에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을 명시할 필요 있음. 8. “총회”라 함은 법 제24조에 의한 총회로서 정비사업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라 함은 조합 총회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 2. ~ 3. 변경 없음 4. “조합장”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대의원”이라 함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자를 말한다. 6.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로서 법 제19조 규정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7. 변경 없음 【주】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법 제25조제3항),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도록(영 제36조 제1항)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에 해당함 8. “총회”라 함은 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로서 정비사업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를 말한다.	- 문구 정리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선임, 보필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이하 “조합 신탁위”라 한다.)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선거인)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가 실시되는 사업 시행구역 내 조합원을 말한다. 【주】 “조합원”의 자격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의 경우 조합실립인가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 하며, 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아니 함.	변경 없음	
제5조(선거권 등) ①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위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선거권이 법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 1인에게 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내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조합 신탁위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8조제1항 1호 내지 2호 각 목 에 따른 다물건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조합원 또는 동의 자수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선거권이 있을 것임.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위임장·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 신탁위는 위임자 등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 선거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 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 【주】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 여 종전에 이미 선임동의서 및 위임장·지정서를 제출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권리변동이 없어 별도로 제출하기 전까지는 종전에 제출한 선임동의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제6조(피선거권 등) ①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자 는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적합한 선거인은 피선거권이 있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 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피 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 목적의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또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주】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합 정관에 따라 거주 조건을 삭제 또는 확대하거나, 정비사업 추진단계가 이 주개시 이후인 경우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음. 또한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피 선거권이 있음을 사전에 정할 수 있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제6조(피선거권 등) ① 변경 없음 ② 변경 없음 1. ~ 6.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서 소속된 자 <후단 신설>	7.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정산인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직원으로 소속된 자. 이 경우 피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로 함	- 정비사업 조합 해산 이후 관련직무를 수행하는 정산인 추가, 유사분야 등 겸직제한을 적용하는 기준시점에 논란이 없도록 명시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이 규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선거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 선거위원은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 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거위원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거위원”이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임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주】 조합임원·대의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화하고, 임기만료 이후 임원·대의원이 처리한 업무의 효력에 대한 법률적 분쟁방지를 위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후임자 선임업무 를 개시하여야 함. 1. 선거위원 등록기간 및 장소 2. 선거위원 신청자격 【주】 선거위원 등록자격은 조합장이 사전 대의원회와 협의하여 0인 이상의 선거인의 추천을 받은 자, 범죄경력에 없 는 자로 정할 수 있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 ②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3. 모집 인원 초과 등록 시 선관위원 선정방법 등 【주】 정수 이상의 선관위원이 등록하였을 경우 공정선거 사무를 수행할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의원에서 비밀투표 또는 공개추첨 방식 등으로 선임할 수 있음. ③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의 결의를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다만, 정수 이상의 선관위원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의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주】 선관위원의 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규모 및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정수 이상의 선관위원이 등록되어 선관위원의 선임을 하였을 경우 공정선거 사무를 수행할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하여 대의원에서 비밀투표 또는 공개추첨 방식 등으로 선임할 수 있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의원의 결의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해당 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관할 선거위”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선거인이 아닌 자를 선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등 보수 및 실비는 조합 선관위가 부담한다. 【주】 선거관련 전문적인 지식,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 ⑤ 선관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른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종료된다. 【주】 선관위원의 임기는 제47조제1항에 의한 당선자 공고까지 종로 한다. 단, 선관위원장 및 간사는 선거관리 업무가 종	③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의 결의를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다만,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의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주】 선관위원의 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규모 및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 공정선거 사무를 수행할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하여 대의원에서 비밀투표 또는 공개추첨 방식 등으로 선임할 수 있음 ④ 변경 없음 ⑤ 선관위원의 임기는 총회의 임원·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른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종료된다. 【주】 변경 없음	- 문구 정리 - 5인 이상 9인 이내가 원칙임 - 문구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로된 이후에도 제52조에 따른 선거관련 자료의 인계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⑥ 조합장은 조합 선거위가 구성되고 선거사무가 개시되기 전에 선거사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용 집기와 조합원 명부 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정보를 조합 선거위에 제공하여 선거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주】 조합 선거위 사무실은 공명선거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조합사무실 또는 임후보자 소유 및 임차건물과 별도로 둘 수 있음. ⑦ 조합의 임원·대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 또는 직원, 임후보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신설>	⑥ ~ ⑦ 변경 없음 ⑧ 조합원의 수가 100인 미만인 조합으로서 별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한다(이하, 같다). 【주】 조합원의 수가 100인 미만으로 도정법 상 대의원회 구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의 경우, 이사회에서 선거위원 후보자를 등록 받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할 수 있음(이하, 본 규정에서 공통 적용)	- 도정법 상 대의원회 구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 고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 ① 조합 선거위에는 선거위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선거위원장과 간사는 선거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위원장과 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 회의소집은 조합장이 하며,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조합 선거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출된 선거위원 중 연장자,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 선거위는 조합 선거위가 구성되는 즉시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 ① ~ ② 변경 없음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위원장과 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 회의소집은 조합장이 하며,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조합 선거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장이 최초 회의소집을 아니할 경우에는 선출된 선거위원 중 연장자,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회의소집 및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조합 선거위는 조합 선거위가 구성되는 즉시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조합장이 정해진 기간 내 최초 회의소집을 하지 아니할 경우, 선거위 구성 등 원활한 선거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④ 선거위원회장은 조합 선거위원을 대표하고, 총회(임원선출 총회에 한한다.) 등의 임시 의장이 된다. 조합 선거위는 정관에서 정하는 총회 등 기간에 대하여 그 지위를 가진다. ⑤ 선거위원이 임기 내 사망 또는 사퇴 등 결위된 경우에는 조합 선거위는 제7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후보자 등록 또는 선거위원의 추천을 받아 조합 선거위의결로서 즉시 선임해야 한다. ⑥ 조합 선거위는 선거관리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하는 선거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주】 선거관리에 필요한 선거사무보조원은 선거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조합 선거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여야 한다. ④ ~ ⑥ 변경 없음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등) 조합 선거위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관리계획의 수립 2. 선거와 관련한 안내 및 홍보와 각종 공고 3. 선거인 명부 작성·확정 및 선거인 신원 확인 4. 후보자 등록 접수·자격심사 및 확정공고 5.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6. 투표 및 개표 관리 7. 투표지의 유·무효 심사 및 판정 8. 당선자 공포·공고 9. 선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심사 및 판정 10. 선거일(총회 등의 개최일) 확정 11.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에 관련 사항의 결정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등) ① 선거위원장은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 선거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② 선거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선거위원장은 조합 선거위원을 소집해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대표자가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조합 선거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 조합 선거위원은 선거위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의결 방법을 제3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 등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변경 없음	
제11조(보수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거위원의 수당 등 보수 및 실비 2. 공정선거지원단 소속원의 수당 및 실비 3. 선거사무보조원을 두는 경우 그 수당 및 실비 4. 사무실의 임차료 5. 그 밖의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경비 등 ② 제1항에 의한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는 선거관리계획으로 확정한다. 【주】 선거위원·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당 등 보수는 시간·일 단위 또는 당해 선거사무 전체를 1석으로 보수를 결정할 수 있음.	변경 없음	
제12조(선거관련 조합의 지위 등) ①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거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12조(선거관련 조합의 지위 등) ①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거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합 선거위 요청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정을 거친 사항에 한하여 조합사무국 및 정비업체 등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현실적으로 조합 및 정비업체 등 업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조합 선거위 요청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원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주】 신설 ② 조합의 임원·대의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이외에 조합 선관위의 선거업무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공명선거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7조제3항, 제8조제6항, 제14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선관위원, 선거사무보조원, 공정선거지원단 및 투·개표 참관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공명선거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엄정한 증립의 입장에서 이 규정에 의한 선관위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조합 선관위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주】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사업 관련자로 작성·제공 등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며(OS 홍보요원 등 불공정한 개입 불허), 선거관리계획 수립 시 또는 필요 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만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② ~ ③ 변경 없음	
제13조(선거관리계획 작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소집하여 조합임원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략적인 선거일 및 선거일정 2. 선거해야 할 임원·대의원 수 3. 조합 선관위 업무 등(각종 양식 작성 등) 4. 선거비용 등의 지급방법 및 시기 5.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주】 선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예시) 예) 선거사무보조원 선임, 공정선거지원단 구성·업무·조치결과 공개방법, 신고 포상금,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 연장·재설정,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벽보·현수막의 규격·수량, 어캐퍼의 크기 및 내용, 선거사무원의 수,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선거공보의 원고 작성방법, 투표관리관, 투·개표 사무 원 및 참관인, 사전투표 장소·기간·운영 및 투표함 보관소, 우편 투표용지 송부·기표·회송방법, 우편 투표자의 선거인명부 표시방법 등과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③ 조합 선거위가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의원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공정선거지원단) ① 조합 선거위는 선거와 관련한 정관 및 본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인 중에서 신청·추천 등 조합 선거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후보자 확정공고 전까지 구성한다. 【주】 당해 정비사업의 규모, 조합원 및 임후보자의 수 등 여건에 따라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를 조합 선거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변경 없음	
제15조(부정선거의 단속·조사 등) ① 조합 선거위와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부정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감시·조사·단속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시·조사·단속에 적발된 정우 조합 선거위는 의결로 그 위반정도에 따라 중지·정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는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방법 및 범위는 조합 선거위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본 규정에서 정한 제한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합 선거위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	제15조(부정선거의 단속·조사 등) ① ~ ③ 변경 없음 ④ 누구든지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합 선거위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	- 명확하게 문구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구비하고 위반자를 지명하여 신고해야 한다. ⑤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으로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지급금의 상환, 횡수,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결정은 조합 선관위의 의결에 따른다.	는 증빙자료 구비하고 위반자를 지명하여 신고해야 한다. ⑤ 변경 없음	
제16조(후보자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조합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주】 후보자가 등록기간 이후 임의·고의로 사퇴하는 경우 추가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임후보 등록 시 사전에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동기 필요서류(취임 승낙서, 입감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③ 후보자등록 이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2. 후보자서약서의 서약내용을 위반한 행위 3. 추천서가 금품제공 등으로 부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4.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선출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5.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6. 기타 조합 선관위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는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조합 선관위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다만, 타 기관·업체 등의 법률자문을 받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후보자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① 변경 없음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조합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주】 후보자가 등록기간 이후 임의·고의로 사퇴하는 경우 추가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임후보 등록 시 사전에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조합선립등기 필요서류(취임 승낙서, 입감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③ ~ ⑤ 변경 없음	- 명확하게 문구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⑤ 조합 선거위는 제4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를 결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 및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에게 3일의 범위 내에서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관리 경비) ① 선거에 관하여 조합 선거위에서 부담하여야 할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조합이 부담하며, 조합은 사전에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조합 선거위는 선거관리에 사용된 경비에 대하여 비용지출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 없음	
제18조(선거관리의 위탁 등) ① 조합 또는 조합 선거위는 선거를 관할 선거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사무의 위탁범위는 제9조에 따른 조합 선거위의 직무 범위 내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변경 없음	
제19조(선거관리 지원 등) 조합 선거위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선거관리에 대한 지원업무가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선거위원 구성(정수 이상으로 선거위원이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2. 조합원이 아닌 선거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구청장 또는 관할 선거위는 전·현직 공무원, 변호사 또는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3. 사전투표소, 합동연설회 및 총회장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 선거위가 부담한다. 4.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6. 위반행위 단속·조사결과 판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투표의 유·무효 판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조합 선거관리와 구청장 또는 관할 선거위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		
제2장 선거인명부 등 제20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조합 선거관은 해당 사업 시행구역 내 선거인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조합이 작성·제출한 조합원 명부를 이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당 해구역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선거인명부에는 등재번호,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현재 주지), 성별,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는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다음날까지 작성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의 열람, 사전투표용, 우편(방문)투표용, 선거일투표용을 작성하되 예비비용으로 2부를 작성한다.	제2장 선거인명부 등 제20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조합 선거관은 해당 사업 시행구역 내 선거인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조합이 작성·제출한 조합원 명부를 이기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표소유자 및 대리인 등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 변경 없음	- 명확하게 문구 정리
제21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정정) ① 조합 선거관은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3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2. 열람장소 3. 열람방법 4. 열람내용 5. 이의신청방법 6. 그 밖에 조합 선거위가 따로 정하는 사항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주】 당해 정비사업의 규모, 조합원의 수, 정비사업 단계가 이주인 경우 등 여건에 따라 조합원의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조합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조합원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에 누락·오기 또는 명의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조합 선관위는 이를 확인하여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의 소유물이 양도·양수 및 증여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 권리변동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선거일 투표시간 내에 조합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공고 이후에 소유권 변경 등 권리변동으로 선거인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선거권 보호를 위함.		
제22조(선거인명부 확정) ①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선거공보 발송일전까지 확정해야 하며, 이 경우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 선관위가 확정공고한 선거인명부는 사업시행구역의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조합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선거의 후보자에 게 제공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를 교부받은 후보자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선거인명부 확정) ①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선거공보 발송일전까지 확정해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었음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 선관위가 확정공고한 선거인명부는 사업시행구역의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조합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선거의 후보자에 게 제공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를 교부받은 후보자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명확하게 문구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제3장 후보자 등 제23조(후보자등록 기간) ① 후보자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 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 이상(공휴일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주】 당해 정비사업의 규모, 조합원 수, 제24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요건 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후보자 등록기간과 시간을 조합 선평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선거 일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공고를 포함하여 선거일 공고를 하거나, 사전에 후보자 등록공고를 선평할 수 있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록 기간에 등록한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한 경우 조합 선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등록기간을 연장 또는 재설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선평위가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후보자 등 제23조(후보자등록 기간) ① 후보자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 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 이상(공휴일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주】 변경 없음 ② ~ ③ 변경 없음	- 직장인 등 퇴근시간을 감안하여 후보자 등록 시간 연장
제24조(후보자 추천) ①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선평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 선평위가 정한 추천서 양식에 따른다. 1. 조합장 : 선거인 00인 이상의 추천 2. 감사 : 선거인 00인 이상의 추천 3. 이사 : 선거인 00인 이상의 추천 4. 대의원 : 선거인 00인 이상의 추천 5. 부조합장 : 선거인 00인 이상의 추천 【주】 조합원 수 등 조합 여건에 따라 선거인 1인의 중복추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② 대의원 후보자는 동별·통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토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구역 내 소수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추천되어야 한다.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제25조(후보자등록 공고 등) ① 조합 선거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 기간 2. 등록 장소 3. 선출(또는 연임)해야 할 임원·대의원의 수 4. 등록 시 제출서류 5. 후보자등록 요건 6. 후보자 자격심사 기간 7. 그 밖에 조합 선거위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②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23조에 따른 후보자등록 공고에 따른 기간 내에 조합 선거위에게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규정 서식) 1부 2. 추천서(규정 서식)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반명합관사진 2매 6.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거주 목적이 아닌 상가소유자의 경우 영업 등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8.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주】 신설 9. 범죄사실증명서 1부 10. 선거관리규정 준수 및 정관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③ 조합 선거위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25조(후보자등록 공고 등) ① 변경 없음 ② 변경 없음 1. ~ 2. 변경 없음 3.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1부(후보자등록 신청서에 후보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지필로 서명) 4. ~ 7. 변경 없음 8. 변경 없음 【주】 근무처 폐업, 해외법인 등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보험가입 증명서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인정 9. 범죄사실조회 동의서 및 선거관련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10. 선거관리규정 준수와 법 제23조 및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③ ~ ④ 변경 없음	- 법 제17조 규정과 일치 - 부득이한 사유로 경력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서류 인정 - 「형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범죄사실증명서 제출 대신 서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공지원자에게 관할 정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수리하되,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2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 ④ 조합 선거위는 제2항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신청 또는 사퇴신청·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등록 마감 후 조합 선거위가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는 해당 사실의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신설>	⑤ 후보자등록 마감 후 조합 선거위가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는 해당 사실을 적극 소명하여야 한다. ⑥ 조합 선거위는 제2항제9호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공지원자에게 관할 경찰서로 범죄 사실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지원자는 법 제23조 및 규정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조합 선거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찰서로 범죄사실조회 요청(조합설립인가 시 구청장이 확인하고 있음) - 피선거권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후보자가 직접 소명 -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공지원자에게 관할 경찰서로 범죄사실조치를 요청하여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 받도록 변경
제26조(기호배정 및 후보자확정 공고 등) ① 조합 선거위는 후보자가 피선거권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호를 배정한다. 이 경우 기호배정은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② 후보자의 기호가 배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확정 및 기호배정 사실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변경 없음	
제4장 선거일 등 제27조(선거일 등 공고) ① 선거일은 총회개최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 선거위가 총회개최 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1. 등록한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될 경우 또는 장소의 확보 등 조합 총회 개최 준비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거일 공고 이후에 천재지변 기타 명백하고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3. 제18조에 따라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조합 선거위는 선거일정 등을 선거일 14일전까지에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임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 개최 공고와 같이 할 수 있으며, 다른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거명 2. 선거인 3. 선거일 4. 투표 및 개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5. 제25조제1항에 의한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동시에 공고하는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선거 또는 조합 총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선거기간은 후보자 확정공고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28조(선거운동 등)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 등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② 누구든지 임원 등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 할 수 없다.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1. 선거인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등 관련자에 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 의사표시 등을 하는 행위 2. 제1호에 의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1호에 의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유포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⑥ 선거운동은 후보자 확정공고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총회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후보자의 연설에 한하여 허용한다.	변경 없음	
제29조(기부행위의 제한) ①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 및 후보자의 가족관계 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로 행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 외에 법령 또는 본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환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그 소속기관·단체·시설의 유급 사무직원 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에 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 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30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조합 선거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의 원고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 또는 후보자 확정공고일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 모두 동일하게 정한다. 【주】 선거공보 원고의 제출기한은 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공보의 검토 및 발송기간 등 선거일정을 고려하여 조합 선거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선거공보의 원고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③ 조합 선거위는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의 원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2항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의 원고는 조합 선거위가 인쇄하여 선거일 14일전까지 선거인에게 등기 발송하되, 총회 등 개최 안내문, 우편 투표용지 등과 동봉 또는 제본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조합 홈페이지와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공보의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 등이 상이한 선거공보의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조합 선거위의 명령에 따라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후보자가 정정 또는 철회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후보자에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원고작성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고, 인쇄 및 발송비용은 조합 선거위가 부담한다.		
제31조(선거별) ① 선거별 및 현수막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선거위가 사전에 선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대의인회와 협의하여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과 수량은 조합 선거위가 따로 정한다. ② 선거별의 제출기한, 기재사항 및 위반내용 등에 대한 조치는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 선거별에는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경력란에 게재하게 할 수 있음. ③ 제1항에 따라 선거별을 게시하는 경우 조합 선거위는 선거 종료 즉시 선거와 관련된 모든 선거별 및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주】 관할 구청과 사전에 광고물에 관한 협의 등 허용여부 선행검토 필요.	변경 없음	
제32조(합동연설회) ① 조합 선거위는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선거일전 또는 선거당일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 각 후보자별 소견발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조합 선거위는 임후보자 및 조합원 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의한 합동연설회 개최 횟수와 생략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임후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동연설회 발표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제33조(후보자 지지의 방법 등) ① 후보자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선거위는 야간에 할 수 없도록 정할 수 있다. 【주】 과열 선거운동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 등의 보호를 위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등 시간을 정하여 지지활동을 금지할 수 있음. 1. 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 후보자 본인에 한하여 허용하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2. 인터넷상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3. 후보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4. 후보자임을 표시하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구역 내 거리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깨띠의 크기, 내용은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후보자는 홍보를 위해 평함을 배포할 수 있다. 6. 후보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원을 선정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선거사무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원의 수는 5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주】 선거사무원의 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규모, 조합원 및 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조합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조합 선거위는 제1항에 따른 지지행위가 이 규정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삭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주】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예, 3일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이내)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의신청은 각하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음. 또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제조치를 철회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 ③ 후보자 등은 과열 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선거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제1항 각호의 방법 및 제28조 내지 제32조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제5장 투 · 개표 등 제34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으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1인이 1표로 직접 선거한다. ③ 투표소 투표관리를 위해 투표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④ 조합의 임원 · 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거인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선거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다만,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주】 다수 후보자 등록으로 조합 총회 동의요건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결선투표를 통하여 당선자로 선출토록 사전에 결정할 수 있음. 예) 결선투표 시 결선투표 대상인 후보자에게 투표한 우편 투표권은 결선투표를 한 것으로 인정하며, 기타 후보자에게 투표한 우편 투표권은 기권표로 한다. 이 경우 결선투표 개시 전 총회 성원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⑤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다만, 조합장의 경우 총회에서 가 · 부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주】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 가 · 부 투표 또는 최소득표수 이상으로 사전에 당선인 결정기준을 정할 수 있음. <후단신설>	제5장 투 · 개표 등 제34조(선거방법) ① ~ ③ 변경 없음 ④ 조합의 임원 · 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주】 변경 없음 ⑤ 변경 없음 【주】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 가 · 부 투표 또는 최소득표수 이상으로 사전에 당선인 결정기준을 정할 수 있음(단, 추진위원 또는 대의원의 경우에는	- 표준정관에 따른 재개발 정비사업 임원(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이상 동의), 재건축정비사업 임원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동의), 대의원(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동의) 선출 요건이 다르므로 문구 조정 -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 회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한 후보자 수 이상으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⑥ 조합 선관위는 투·개표사무를 보조할 투·개표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수당과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 ⑥ 조합 선관위는 투·개표사무를 보조할 투·개표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수당과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	별정 정족수 충족을 위한 후보자 수 이상으로서 정수 미만인 경우에도 정수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음) ⑥ 변경 없음	로서 정수 미만인 경우에도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제35조(투표) ① 투표소는 선거인수를 고려하여 당해 사업시행구역 내 일정한 장소나 인접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비밀투표가 보장되도록 설치한다. ② 투표는 조합 선관위가 감독하며,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찰경찰서에 경찰공무원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투표소에는 투표를 위한 선거권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단, 구청 및 관찰 선관위 관계자 등 조합 선관위가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주】 투표시간은 투표일(공휴일, 연휴), 투표소, 기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④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선거인명부와 대조·확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신분증의 종류는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을 준용한다.	변경 없음	
제36조(투·개표 참관인) ① 조합 선관위는 투·개표참관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2인 이상 5인 이하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참관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의 수는 후보자별로 동일하게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③ 참관인은 투·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제37조(개표) ① 개표는 조합 선관위가 감독하며,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찰경찰서에 경찰공무원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개표소는 투표소와 같은 장소로 한다. 단, 장소협소 등 동일 장소에서 개표하기가 어려울 경우 인접한 장소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개표소에는 선관위원, 개표사무원, 개표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단, 구청 또는 관할 선관위 관계자 등 조합 선관위가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개표는 임후보 직위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며 후보자별 득표수는 조합 선관위에서 발표한다.	변경 없음	
제38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경우 1.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기표가 안 된 경우 3. 기표가 불확실한 경우 4. 소정의 기표용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한 경우 5. 우편 투표용지가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조합 선관위에 도착한 경우 6.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	변경 없음	
제6장 사전투표 제39조(사전투표)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를 제고를 위해 선거일 이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일 14일전까지 사전투표의 방법과 장소·시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변경 없음	
제40조(사전투표 방법) ① 사전투표 장소는 당해 사업시행구역 내 적절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제40조(사전투표 방법) ① 사전투표 장소는 당해 사업시행구역 내 일정한 장소나 인접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투	- 제35조와 일치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한다. ② 사전투표 기간 중 후보자를 대신하는 사전투표참관인을 선거인 중에서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조합 선거위가 부담한다.	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변경 없음	
제41조(사전투표 기간) 사전투표 기간은 조합 총회 개최 공고일(선거일 공고)부터 선거일 7일 전까지 1일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조합 선거위가 따로 정한다. 1. 사전투표일은 직장인 등의 투표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휴일로 지정한다. 2. 사전투표일을 평일로 정할 경우 투표시작 시간은 오전 6시, 마감 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변경 없음	
제42조(사전투표 장소) 사전투표 장소는 경우 공정선거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선정하여야 하며 조합 선거위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제32조에 따른 선거일 전에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합동설명회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주】 사전투표 장소는 선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 소유 및 임차건물 등 오해의 소지가 없는 장소로 선정할 수 있다.	제42조(사전투표 장소) 사전투표 장소는 공정선거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선정하여야 하며 조합 선거위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제32조에 따른 선거일 전에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합동설명회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주】 변경 없음	- 문구 정리
제43조(사전투표 절차 등) ① 사전투표한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자로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는 조합 선거위가 따로 정한다. ② 사전투표는 직접투표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전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은 조합 선거위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변경 없음	
제44조(사전투표함의 봉인) ① 사전투표함은 조합 선거관위가 제작한 투표함으로 하되, 후보자 또는 참관인들이	제44조(사전투표함의 봉인) ①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확인한 후 시·군·구청에 보고한다. ②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는 조합 선거위가 따로 정하며, 공정한 투표함 보관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u>개표개시시간</u> 전까지 구청장에게 투표함의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전투표함을 보관 장소에 보관 또는 반출, 투표소에 설치 할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의 입회하여 해야 한다. ④ 사전투표함은 투표개시 전 투·개표 장소로 조합 선거위가 이송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표참관인과 동행한다. ⑤ 사전투표함의 개봉은 투표일 선거시간이 종료된 이후 개표가 개시된 이후 개봉한다.	②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는 조합 선거위가 따로 정하며, 공정한 투표함 보관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u>개표개시시간</u> 전까지 구청장에게 투표함의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④ 변경 없음 ⑤ 사전투표함의 개봉은 투표일 선거시간이 종료되고 개표가 개시된 이후 개봉한다.	- 문구 정리 - 문구 정리
제7장 우편투표·전자투표 제45조(우편에 의한 투표) ① 조합 선거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에 직접참석 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우편(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선거인이 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 선거위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조합 선거위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 우편 투표용지가 포함된 선거공보의 발송기한은 선거일 이 회송용 봉투를 발송하여 선거일 전에 조합 선거위에 도착되어야 할 기한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③ 제2항에 의한 우편 투표용지 송부·기표·회송 방법에 대하여는 조합 선거위가 따로 정한다. ④ 우편으로 투표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우편 투표자로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는 조합 선거위가 따로 정한다.	제7장 우편투표·전자투표 제45조(우편에 의한 투표) ① 변경 없음 ② 선거인이 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 선거위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일 <u>종료</u> 전까지 조합 선거위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 변경 없음 ③ ~ ⑤ 변경 없음	- 등기우편 배송 소요시간을 시간단위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도착 예정시간을 최대한 인정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⑤ 조합 선관위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우편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즉시 봉인된 투표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함의 봉인·보관·입회·이송에 대하여는 제4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전자투표) ① 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에 의한 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2. 조합 선관위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호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변경 없음	
제8장 당선인 등 제47조(당선자) ① 조합 선관위는 개표완료 즉시 개표결과 및 당선자를 조합 홈페이지 및 클린업시스템에 공고한다. ② 당선자는 당선자 공고로서 그 지위를 득한다.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주】 임기개시일 :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정관 등으로 반드시 정할 필요 있음. 예) 임원 : 최초·변경선임은 선임된 날로부터, 연임은 연임총회일로부터, 보궐선임은 변경등기일로부터 개시(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대의원 :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 추진위원 :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		
제9장 보궐선거 등 제48조(보궐선거 등) ① 임원, 대의원 등의 임기 중 궐위된 자의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단, 조합장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제4조에 의한 “선거인”은 “대의원”으로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거위원의 수를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며, 제7조 내지 22조 및 제39조 내지 제46조 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주】 궐위된 대의원의 후보자는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선거인 〇〇인 이상으로 한다. ③ 임원, 대의원 중 궐위된 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장은 즉시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위한 대의원회 소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하여야 한다.	제9장 보궐선거 등 제48조(보궐선거 등) ① 변경 없음 ②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선거인”은 “대의원”으로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거위원은 대의원 중 후보자를 등록한 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3인 이상 7인 이하로 선임하여 선거위를 구성하며, 제7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8조 내지 제22조 및 제39조 내지 제46조 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주】 변경 없음 ③ 변경 없음	-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위원 구성에 대한 후단 문구 등을 명확하게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제49조(추진위원회에서의 선거) ①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기만료 또는 결위원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제2조 내지 제48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정관”을 “운영규정”으로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임원·대의원”을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으로 “조합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총회”를 “주민총회”로 하며, 제7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의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제25조제2항 9호의 “정관 제17조”를 “운영규정 제16조”로(삭제), 제20조제1항의 “조합원명부”를 “추진위원회명부”로 제34조제5항 단서 및 제48조제1항 단서의 “조합장”은 “추진위원장·감사”로 한다. ③ 추진위원(추진위원장, 감사는 제외한다.) 중 결위원 자가 발생할 경우 추진위원장은 즉시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소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이 임기 중 결위되어 추진위원의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추진위원회에서의 선거) ①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기만료 또는 결위원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제2조 내지 제48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정관”을 “운영규정”으로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임원·대의원”을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으로 “조합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총회”를 “주민총회”로 하며, 제7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의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제20조제1항의 “조합원명부”를 “추진위원회명부”로 제34조제5항 단서 및 제48조제1항 단서의 “조합장”은 “추진위원장·감사”로 한다. ③ 추진위원(추진위원장, 감사는 제외한다.) 중 결위원 자가 발생할 경우 추진위원장은 즉시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소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이 임기 중 결위되어 추진위원의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하여야 한다.	- 문구 정리 - 오기 수정 및 항 정리
제50조(권한의 대행 등) ① 제48조에 따른 조합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조합장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결위원 경우 부조합장, 상근이사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한다. ② 제49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결위원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권한의 대행 등) ① 제48조에 따른 조합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조합장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결위원 경우 부조합장, 상근이사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변경 없음	- 문구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③ 제49조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 하 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하며, 이 경우 정수 이상 선관위원이 등록된 경우 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 ④ 제49조제3항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을 보궐선 임 하 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추진위원회”으로 하며, 이 경우 정수 이상 선관위원이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 ⑤ <신설> ⑥ <신설>	③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하며, 이 경우 선 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 임은 구청장이 한다. ④ 추진위원의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 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추진위원 회”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 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회의 의결 정족수 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직무 대행자 포함)의 직무 수 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 록을 받아 제7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을 선임하는 경 우에는 제13조제3항의 “대의원회의 의결”을 “공공지원자 승인”으로, 제31조제1항의 “대의원회”를 “공공지원자”로 한다.	- 명확하게 문구 정리 및 관련조항 추가 - 명확하게 문구 정리 및 관련조항 추가 - 이사회 의결 정족수 미달 또는 추진위원장 (직무 대행자 포함) 필 위 등으로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상황으 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 여 공공지원자의 역할 확대
제51조(창립총회에서 선거) 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영 제22조의2에서 정한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55조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조합”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 “정관”을 “정관(안)”으로 “총회”를 “창립총회”로 “조합원”을 “토지등소 유자”로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제10장 보 칙 제52조(선거 관련 자료의 보관) 조합 선거위는 선거관리가 종료된 후 모든 선거관계 일체의 서류를 선거위원장 및 간사가 봉인 후 조합에 인계하여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조합 정관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변경 없음	
제53조(선거 관련 자료의 공개) 조합 및 조합 선거위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자료, 조합 선거위 회의록을 조합홈페이지 및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유권해석 등) ①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거위원에서 선거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 ② <신설>	제54조(유권해석 등) ① 변경 없음 ② 조합 선거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구역별 현황, 정관 및 인허가 진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유권해석 하여 관리감독 철저(추가 법령해석 등은 구청장이 시장에게 질의)
제55조(민법의 준용 등) ① 본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민법 등 관계 법률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부 칙 이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정관 또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 총회 또는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정관 또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 총회 또는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 §25① <개정 전>

공고 제 호

후보자등록 공고문(예시)

20 년 ○ 월 ○ 일 실시하는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임원·대의원(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 선거일정 및 후보자 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 월 ○ 일

○○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1. 선출인원 및 임기 : ○명(2년)
2. 선거기간 : 20 . ○. ○. ~ ○. ○.
3. 후보자등록기간 : 20 . ○. ○. ~ ○. ○.
4. 등록장소 : 조합 선관위 사무실
5. 후보자등록서류
 -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규정 서식) 1부
 - ② 추천서(규정 서식) 1부
 - ③ 인감증명서 1부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 ⑤ 반명함판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거주 목적이 아닌 상가소유자의 경우 영업 등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⑦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⑧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⑨ 범죄사실증명서 1부
 - ⑩ 선거관리규정 준수 및 피선거권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약속하는 서약서

【별지 제7호】 §25① <개정 후>

공고 제 호

후보자등록 공고문(예시)

20 년 ○ 월 ○ 일 실시하는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임원·대의원(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 선거일정 및 후보자 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 월 ○ 일

○○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1. 선출인원 및 임기 : ○명(2년)
2. 선거기간 : 20 . ○. ○. ~ ○. ○.
3. 후보자등록기간 : 20 . ○. ○. ~ ○. ○.
4. 등록장소 : 조합 선관위 사무실
5. 후보자등록서류
 -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규정 서식) 1부
 - ② 추천서(규정 서식) 1부
 - ③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1부(후보자등록신청서에 후보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 ⑤ 반명함판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거주 목적이 아닌 상가소유자의 경우 영업 등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⑦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⑧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⑨ 범죄사실조회 동의서 및 선거관련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⑩ 선거관리규정 준수 및 피선거권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별지 제8호】 §7②, §25②1 <개정 전>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임원·대의원(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 선거 (후보자) · (선관위원)등록 신청서(예시)		사진 3×4cm
성 명	(한글) ○ ○ ○ (한자 ○ ○ ○)	
주 소	서울특별시 ○○구 ○○길 ○○ (○○동 ○○번지 ○○호) ○○아파트(연립)○○동○○호	
권리내역	(물건소재지)	
	토지 : m ² , 건물 m ² (지분소유 여부:) %	
생년월일	19○○ 년 ○○월 ○○일(만○○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 ○	직 위 대표
직장주소	서울시 ○○구 ○○길 ○○ (○○동 ○○번지 ○○호)	
경 력 및 이 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20○○.○○.○○.	
	20○○.○○.○○.	
위와 같이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임원·대의원(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 선거 (후보자)(선관위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입후보자(신청인): ○ ○ ○ (인) ○○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선관위원 등록시 1,7,8,9,10호에 한함)	1. 후보자 등록 신청서(규정 서식) 1부 2. 추천서(규정 서식)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반명함판사진 2매 6.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거주 목적이 아닌 상가소유자의 경우 영업 등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8.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9. 범죄사실증명서 1부 10. 선거관리규정 준수 및 정관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주: 1. 허위경력, 허위학력을 기재하면 후보자 등록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기재.		

【별지 제8호】 §7②, §25②1 <개정 후>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임원·대의원(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 선거 (후보자) · (선관위원)등록 신청서(예시)		사진 3×4cm
성 명	(한글) ○ ○ ○ (한자 ○ ○ ○)	
주 소	서울특별시 ○○구 ○○길 ○○ (○○동 ○○번지 ○○호) ○○아파트(연립)○○동○○호	
권리내역	(물건소재지)	
	토지 : m ² , 건물 m ² (지분소유 여부:) %	
생년월일	19○○ 년 ○○월 ○○일(만○○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 ○	직 위 대표
직장주소	서울시 ○○구 ○○길 ○○ (○○동 ○○번지 ○○호)	
경 력 및 이 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20○○.○○.○○.	
	20○○.○○.○○.	
위와 같이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임원·대의원(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 선거 (후보자)(선관위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입후보자(신청인): ○ ○ ○ (서명) 지장날인 ○○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선관위원 등록시 1,7,8,9,10호에 한함)	1. 후보자 등록 신청서(규정 서식) 1부 2. 추천서(규정 서식) 1부 3.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1부(상단 신청인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지장 날인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반명함판사진 2매 6.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거주 목적이 아닌 상가소유자의 경우 영업 등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8.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9. 범죄사실조회 동의서 및 선거관련 정보제공 동의서 각1부 10. 선거관리규정 준수 및 <u>피선거권의</u> 결격사유가 없음을 약속하는 서약서	
주: 1. 허위경력, 허위학력을 기재하면 후보자 등록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기재.		

【별지 제19호】 §20① <개정 후>

-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임원·대의원(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 선거 -

선 거 인 명 부(예시)

[illegible]

작성연월일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간사) (인)
 화 인 자 : (선관위원장) (인)

주 : 1. 명부기재방법

- ① 등재번호란에는 투표구단위로 그 구역안의 주소의 지번순 또는 통·리·반 또는 선거인의 성명
가·나·다 순이나 생년월일 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② 물건지 주소란 에는 선거인의 소유현황을 기재하며, 건물과 토지가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한다.
※아파트 등은 동과 호수를 ()안에 기재한다.
- ③ 공유지분일 경우 소유주 전체를 기재한다.
- ④ 성명 란은 선거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단, 대표소유자선임 또는 대리인 지정의 경우에는 두
줄로 작성하고, 그 위에 대표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 후, 비고란에 사유와 연월일을 기
재하고 선관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한다.
- ⑤ 투표용지수령인 란중 “(가)”란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며(사전선거를 포함한다), “(나)”란은 선거의 일부무효, 결선투표로 인한 재선거 등을
실시할 때에 한하여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다.
- ⑥ 비고란의 기재와 선거인명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합 선관위는 이의·불복신청 또는 명부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비고
란에 기재하고 선관위원의 사인을 날인한다.
나.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명부확정 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 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두 줄로 삭제하고, 오기의 발견 시는 그 오기된 글자만 두 줄로 삭제하되, 각각 비고란에
그 사유(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 등재자·오기)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선관위원장의 사
인을 날인한다.
다.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오기된 자를 발견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다만, 조합 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한 후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 작성시 위란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다. 단, 쪽
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3.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청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 쪽의 대청부분에 선과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우편 투표용지 추가>

우편 투표용지 작성(예시)**① 후보자 선출정수를 초과하는 때 투표용지**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임원·대의원(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 선거

기 호	성 명	기 표 란
1	○ ○ ○	
2	○ ○ ○	
3	○ ○ ○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선거관리위원
 인

절
취
선
일련번호

②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정수 이내인 때 찬반 투표용지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임원·대의원(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 선거
후보자 성명 : ○ ○ ○

찬 성	반 대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선거관리위원
 인

절
취
선
일련번호

주 : 1. 규격은 조정하여 사용하되, 일련번호 기재 시 선거인에게 우편 발송 직전 절취하여 발송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란'의 날인은 우편 투표용지 업무를 진행한 조합(추진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날인하여 발송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46호

2017년 국제 청년분야 사회적경제 민간보조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7년 국제 청년분야 사회적경제 민간보조사업 공모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1. 지원사업 분야

- 사회적경제 국제 청년 캠프(민간행사보조)
- 사회적경제 국제 청년 창업 프로그램 운영(민간경상보조)

2.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2천만원 이상 사회적경제 국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제 외 대 상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3. 사업추진기간 : 2017. 5월 ~ 2017. 12월

- 사업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별 추진 기간 별도 결정

4. 지원규모 및 심사

- 신청서 작성 시 아래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신청하고, 분야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액 신청

지원사업 분야	보조금 예산	지원사업수
사회적경제 국제 청년 캠프 -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캠프기간동안 숙박, 강의 워크숍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설확보 - 국제적인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소개 등 검증된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국가에서 고른 해외인사 초청 - 사회적경제 청년 국제 네트워크 구축 - 해외·국내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에게 사회적경제 비전 제시 - 사회적경제 관련 창업, 일자리 등 실천 방안 소개	190백만원	1
사회적경제 국제 청년 창업 프로그램 운영 - 국내 청년이 해외에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국내 교육연수 → 국외 창업 모델 발굴 및 사회적기업 창업) - 안정적인 해외 사회적기업 창업·운영 방안 및 지속적인 해외 사회적기업 창업의 발전 방안 확보	280백만원	1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17. 4. 13.(목) ~ 4. 28.(금)
- 접수기간 : 2017. 4. 27.(목) ~ 4. 28.(금) 9:00 ~ 18:00
- 접수방법 : 市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에 접속 신청

주 의 사 항

■ 마감일 18:00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에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 허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스캔파일) 1부

7.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사회적경제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서류심사에 통과한 단체에 대해 심사(통과여부 개별 통보)
 - 단체별로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후 최종심의
 - 심사용 사업계획서(자체서식 PPT 발표본, 제본) 6부 제출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합성, 사업 수행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심사일시 : 2017. 5. 11.(목) 예정
- 발표일시 : 2017. 5. 12.(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8.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평가

-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서 상 집행계획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 교부
- 보조결정 통지(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비 집행 금지
 - 긴급한 필요 등으로 사전 집행이 필요할 경우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집행
- 수행상황점검(중간점검) 및 최종성과평가(사업완료 후)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18년도 지원 사업 결정시 반영
-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등 최종정산 자료제출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추진에 따른 조사,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신청단체수 등 추진상황에 따라 심사 및 발표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담당자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김민철 주무관
- 연락처
 - 전 화 : 02-2133-5490
 - 이메일 : prayer@seoul.go.kr

※ 제안요청서(신청서식 포함)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 고시/광고 에서 확인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7-3호

재산등록사항 공개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직위	(전)원장	성명	박기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증전가액	변동액 (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건물 167.08㎡	794,000	78,000	0	872,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본인	자동차	2013년식 BMW 520D 배기량(1,998cc)	40,920	0	5,660	35,260	공시지가변동	
▶ 예금(소계)								
			1,363,030	510,423	325,627	1,547,826		
본인		우리은행 148,365(21,767 증가), 삼성생명보험 85,000(30,000 증가), 우체국 92,509, 신한생명보험 18,000, 국민은행 20,089(1,114 증가), 한국투자증권 170,557(992 감소)	482,631	118,910	67,021	534,520	큰딸의 수입증가에 따른 저축증가	
부		(주)KEB하나은행 38,910, 우리은행 32,558(2,540 감소)	74,008	11,500	14,040	71,468		

장녀	국민은행 3,000, (주)KEB하나은행 539,357(157,351 증가), 외환은행 0(22,600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02,000(320 증가), 삼성생명보험 100,000, 하나생명보험 5,160(2,706 증가), 교보생명보험 101,700(140 증가), 신한은행 50,000, 한국투자증권 40,621(2,470 감소)	806,391	380,013	244,566	941,838	큰딸의 수입증거에 따른 저축증가
총 계		2,197,950	588,423	331,287	2,455,086	증감액 : 257,136천원 (가액변동: 72,340천원)

소속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직위	원장	성명	박봉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액)	비고	
▶ 토지 (소계)					1,916,905		
배우자	임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산 101 - 1번지 5,206.50㎡			31,239		
배우자	전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463번지 3,233.00㎡			231,159		
배우자	대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254 - 1번지 646.00㎡			1,036,184		
배우자	하천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31번지 1,757.00㎡			296,933		
배우자	잡종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42번지 380.00㎡			70,680		
배우자	대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43번지 342.00㎡			102,155		
배우자	임야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43 - 1번지 14.00㎡			3,570		
배우자	도로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254 - 2번지 198.00㎡			0		
배우자	대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254 - 5번지 107.00㎡			144,985		
배우자	임야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43 - 2번지 5,142.00㎡			0		
배우자	임야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43 - 3번지 19.00㎡			0		
배우자	임야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43 - 4번지 4.00㎡			0		

배우자	임야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43-5번지 75.00㎡	0	
배우자	임야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43-6번지 70.00㎡	0	
▶ 건물 (소계)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역삼역키아파트 건물 112.20㎡	506,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역삼역키아파트 건물 124.10㎡ 중 62.05㎡	424,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역삼역키아파트 건물 124.10㎡ 중 62.05㎡	424,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소계)				
본인	자동차	2013년식 K7 배기량(2,400cc)	3,141	
배우자	자동차	2016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00cc)	4,810	
▶ 예금 (소계)				
본인		중소기업은행 84,280, 농협중앙회 4,659, 동부화재해상보험 5,320	94,259	
배우자		미래에셋대우(주) 319, 농협중앙회 4,570, 중소기업은행 4,452, 미래에셋생명보험 6,429	15,770	
장녀		중소기업은행 809, ING(네덜란드)생명보험 3,200, 미래에셋증권 24,743	28,752	
장남		중소기업은행 1,348, 우리은행 212, 미래에셋증권 28,338	29,898	
▶ 증권 (소계)				
배우자	상장주식	기업은행 59주	1,032	
배우자	금융채	기업은행 59주	319	
장녀	상장주식	씨앤에스 1,000주	4,440	
▶ 채무 (소계)				
본인	금융기관채무	중소기업은행 80,000, 공무원연금공단 931	80,931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역삼역키아파트	650,000	
본인	기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현대캐피탈 8,000	8,000	
▶ 고지거부 사항				
차녀		등록제외	-	
총계			2,714,395	

서울시교육청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7-71호

서울특별시의회 안건 제출 공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연번	의 안 명	제 출 자	의안번호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관리담당관)	1736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관리담당관)	1737
3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평생교육과)	1738
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학교지원과)	1739
5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재정과)	1740

구 고 시

◆ 동대문구고시 제2017-27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12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결정 취지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한 이문동의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쉼터 조성 등을 통한 주민 정서함양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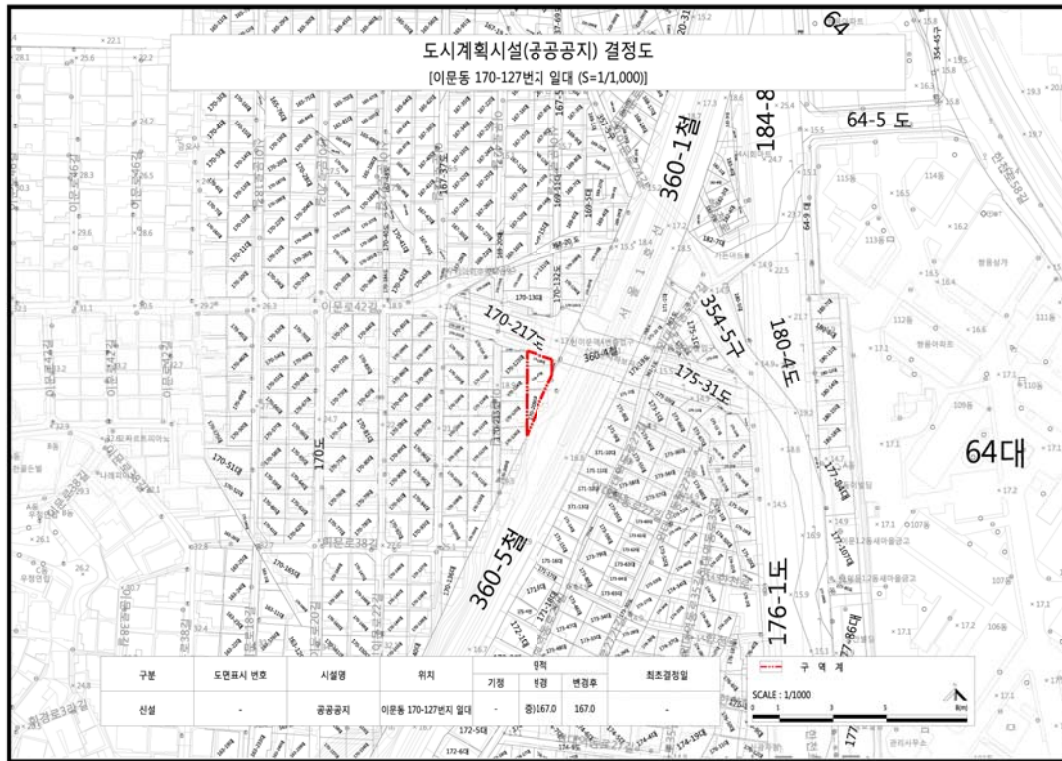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동대문구 이문동 170-127번지 일대	-	증) 167	167	-	-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2127-4585) 및 공원녹지과(☎2127-4396)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동대문구고시 제2017-2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6-91호(2016.12.27)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7-154호(2017.2.23)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열람공고된 제기동 728-3호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728-3번지

나. 사 업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사업(공공공지)

다. 사 업 명 칭 :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라. 사 업 규 모 : 공공공지 조성 201.3㎡

마. 사업 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사. 사용할 토지, 물건조서 : 별첨

아. 계 재 방 법 : 시보게재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2127-4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토지 및 물건조서

토 지 조 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관리종류 및 내용	
1	제기동	728-3	대지	201.3	201.3	민건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728-3	민명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37-1		
								민경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90 103동 304호		
								민병규	서울특별시 종랑구 면목로 72길 14, 401호		
								민병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1길 18, 407호		
								민미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01		

◆ 중랑구고시 제2017-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17-12호(2017.03.0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토지 조서 내용 오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중랑구청 도로과(02-2094-2691~2695)에 비치하며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13일
중랑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48-53~135-29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중화동 148-53~135-29간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의규모 : 도로확장, 폭 6m, 연장 45m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변경없음]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17.12.31.까지 [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변경없음]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중화동 148-53~135-29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성 명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등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중화동	148-175	대	27	27	양준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58(중화동)	문성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58(중화동)	가압류	148-40 분할
2	중화동	148-42	대	238	25	조운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59길 33 102동 104호(답십리동, 우성그림아파트)			대지권 설정	당초
2	중화동	148-176	대	25	(15/238)×25	이경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366-17	근해안강 망수산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05-4(구월동남지점)	근저당권	변경
					(33.2/238)×25	이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4-44				
					(33.2/238)×25	박은화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62, 202호(중화동, 미래하이츠)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마포로지점]	근저당권	
					(33.2/238)×25	김영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7길 17-5(망우동)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33.2/238)×25	김명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48-42 미래하이츠 302호	중앙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35-8(이튼타워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삼성동지점)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33.2/238)×25	박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48-42 401호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화현동 1가 203 [군자역지점]	근저당권	
2	중화동	148-176	대	25	(18.5/238)×25	김명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65-102 4층 401호	서울경기양 돈축산업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92(천호동)	근저당권	변경
					(38.5/238)×25	한진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62, 501호(중화동, 미래하이츠)	국민건강보 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빈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3	중화동	148-177	대	35		박영숙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활산로236번길 12	주식회사하 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중화동지점	근저당권	148-4 4분할
4	중화동	148-178	대	23	23	한석현 (1/2) 박제강 (1/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1020번길 32, 101동 1201호(공익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1020번길 32, 101동 1504호(공익문)	관악농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원로 1366(독산동) (신독산지점)	근저당권	148-5 3분할
5	중화동	148-180	도	156	156	최광천	성북구 성북동 145-24	성북세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압류	148-5 9분할
6	중화동	148-163	대	29	29	유승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4동3404호(송도동,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7	중화동	135-42	대	6	6	황금복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56(중화동)	박종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56(중화동)	가등기권	135-2 9분할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중화동 148-53~135-29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소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의권리	
1	중화동	148-178	건물(1층)	연외조	14	한석현 (1/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1020번길 32, 101동 1201호(공의문)					
			담장	시멘트 블록조	1식	박재강 (1/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1020번길 32, 101동 1504호(공의문)	관악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66(독산동) (신독산지점)	근저당권	
			대문	철제	1식							
2	중화동	148-177	담장	시멘트 블록조	1식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황산로236번길 12					
			대문	철제	1식	박영숙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가건물	판넬	7							
3	중화동	148-175	담장	시멘트 블록조	1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58(중화동)	문성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58(중화동)	가압류	
			대문	철제	1식	양준호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중랑교지점]	근저당권	
			가건물	스레트	2							

☐ 위 치 도



☐ 현 황 사 진



◆ 은평구고시 제2017-35호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7호(2004.02.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75호(2006.03.09.)로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된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녹번동 144-40 외 2필지(녹번동 147-7, 148-23) 공동개발 변경(경미한 사항) 제안 내용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은 평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사유

- 공동개발(규제) 필지(녹번동 147-7, 148-23)와 자율적 공동개발 필지(녹번동 144-40)를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여 공동개발(신축) 추진

나.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 획지의 규모 및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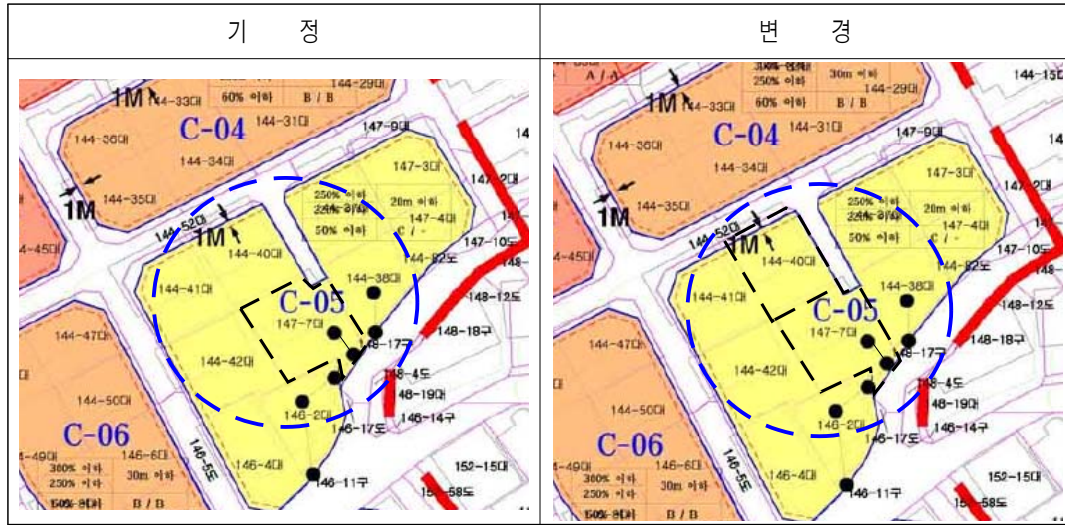
구 분	위 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 고
기 정	녹번동	144-40	188	-	• 자율적 공동개발
		147-7	205	224	• 공동개발 지정
		148-17	19		
변 경	녹번동	144-40	188	405	○자율적 공동개발 : 144-40 ○공동개발(지정) : 147-7, 148-23 ※ 공동개발(지정) 및 자율적 공동개발 필지는 공동개발(3필지)이 가능함
		147-7	205		
		148-23	12		

※ 조서 내용 중 녹번동 148-17 번지에서 분할된 녹번동 148-23 토지 면적은 필지 분할 결과, 면적(감소) 정정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함.

다.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라.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마.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공동개발 필지 : 녹번동 144-40, 147-7, 148-23)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마포구고시 제2017-5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1. 마포구 망원동 380-42 우중호 외 2인이 시행하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단지형다세대 123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건축과(☎02-3153-9405)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13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 업 명 : 망원동 380-42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신축
나. (공동)사업주체

- 우중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04(목동)]
- 김현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24길 11-21(목동)]
- 최경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04 302호(목동,대명피렌체)]

다.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80-42

라. 대지면적 : 2,274.7㎡

마.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570.82㎡(7개동)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123세대)

바. 사업시행기간 : 2016. 02. 15. ~ 2017. 04. 30.

사. 사업계획승인일 : 2016. 02. 05(변경승인일 : 2017. 04. 11)

아. 변경승인 내용 :

- 연면적 27.48㎡ 증가
- 101동 지하1층 통신실 24.84㎡ → 102동 지하1층 통신실 및 물탱크실 21.54㎡ 변경
- 건축면적 109.08㎡ 증가

자.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

차. 관련도면 : 마포구청 도시환경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문의: ☎02-3153-9405)

◆ 강서구고시 제2017-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6호(1976.08.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설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16- 1016호(2016.9.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한 『강서구 방화동 271-1~258-1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서구 방화동 271-1 ~ 258-1간

나.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명 : 강서구 방화동 271-1 ~ 258-1간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규모 : 도로개설(B=10m, L=200m) 등

마. 사업시행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 성 명 : 강서구청장

바.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17.12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 붙임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도로과(☎2600-69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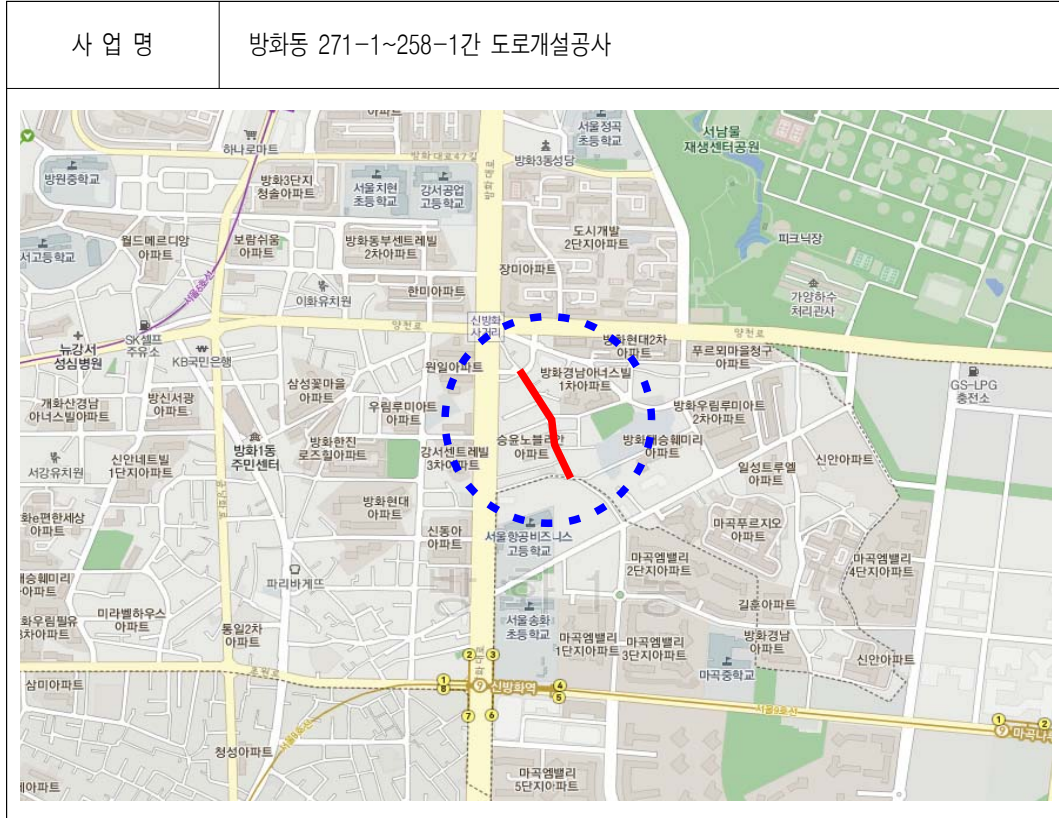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업명 : 방화동 271-1 ~ 258-1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방화동 272-1	구거	109	109	권우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1-162	1/1				
2	방화동 273-6	답	5	5	강윤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80-42	1/29				
					심명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69-1 남양연립 라동 203호	6/29				
					강춘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324-1	4/29				
					강옥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323-3 옥산연립 다 101	4/29				
					강주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09-138	4/29				
					강경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324-1	6/29				
3	방화동 272-25	도	4	4	강민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69-1 남양연립 라동 203호	4/29				
					유성남	충청북도 음성군 생두면 범암리 323	1/1				
4	방화동 183-1	전	139	139	서흥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59 동신아파트 104동 503호	1/1				

위 치 도



◆ 구로구고시 제2017-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시고시 제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고시되고, 서울시고시 제226호(1988.3.28)로 변경결정고시, 서울시고시 제521호(1988.6.13)로 지적승인, 구로구고시 제2016-161호(2016.10.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구로구공고 제2017-507호(2017.03.23)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한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32-9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8m, 연장17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860-3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가리봉동 132-118	대	104.9	49.7	박영목	동작구 사당로 17길 52 6동1406호(사당동,대림아파트)				모지번 132-96
2	가리봉동 132-114	대	11.8	11.8	박영목	동작구 사당로 17길 52 6동1406호(사당동,대림아파트)				

물 건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가리봉동 132-96	건물(지층)	연와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39	상가	박영목	동작구 사당로 17길 52 6동1406호 (사당동,대림아파트)				
		건물(1층)		39	상가						
		건물(2층)		39	주택						
		가건물(3층)	판넬	39	주택						
		가건물(3층)	판넬	1	창고						

영 업 권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 지번	세부 구분	물건의 종 류	상 호	수량	영업권의 종 류 (사업자등록증상)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가리봉동 132-96	1층	수선집	명품옷수선	1식	-	이귀선	구로구 가리봉동 132-96	"사업자등록 증 없음"
2	가리봉동 132-96	1층	소매점	골목담배	1식	소매	오복우	구로구 가리봉동 132-96	
3	가리봉동 132-96	1층	건강원	영광흑염소	1식	음식	박래문	구로구 가리봉동 132-96	
4	가리봉동 132-96	지층	주점	해양민속촌호프	1식	음식	CUI XIANYU	구로구 가리봉동 132-96	

◆ 동작구고시 제2017-2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본동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성명 및 주소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이 창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3.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41 일대

나. 면적 및 규모

구분	구 모			대지면적 (㎡)	건축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조경면적 (㎡)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용검사 예정일)
	층수 (上/下)	동	세대수							
아파트	33/4	6	823	24,678	145,865.71	36.84	389.02	7,407.63	553,931,097	2020.03

4. 사업시행기간 : 2017. 4. ~ 2020. 3. 30.

5.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1) 용도지역·구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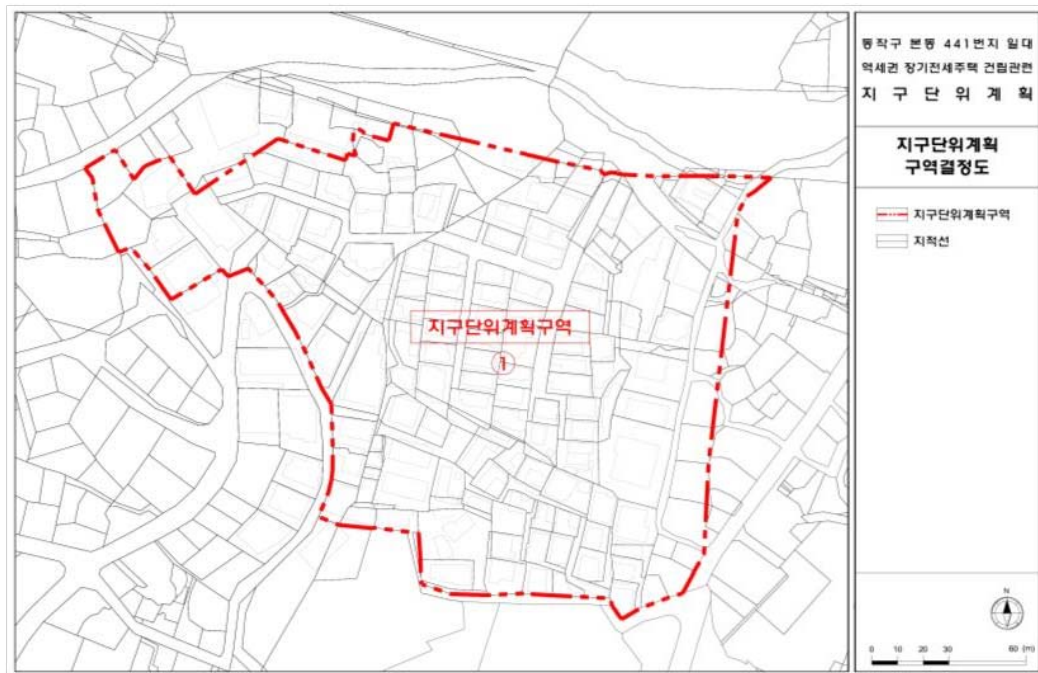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본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본동 441번지 일대	-	증)29,743	29,743	

■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①	본동 441번지 일대	29,743	• 준주거지역 내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주거복합건물 건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코자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나)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9,743	-	29,743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3,985	감) 23,985	-	-	
	제3종일반주거지역	4,241	감) 4,241	-	-	
	준주거지역	-	증) 28,226	28,226	94.9	
일반상업지역		1,517	-	1,517	5.1	총독부고시756 (1939.9.18)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본동 441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준주거지역	23,985	노들역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종상향
본동 205-203번지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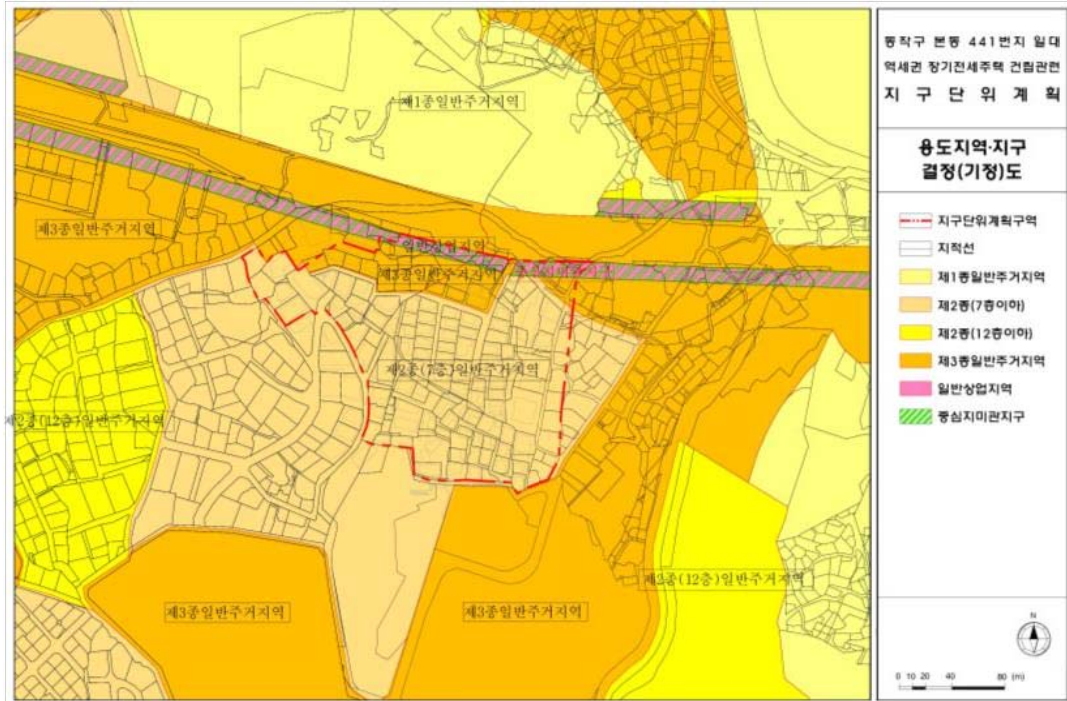
다) 용도지구 : 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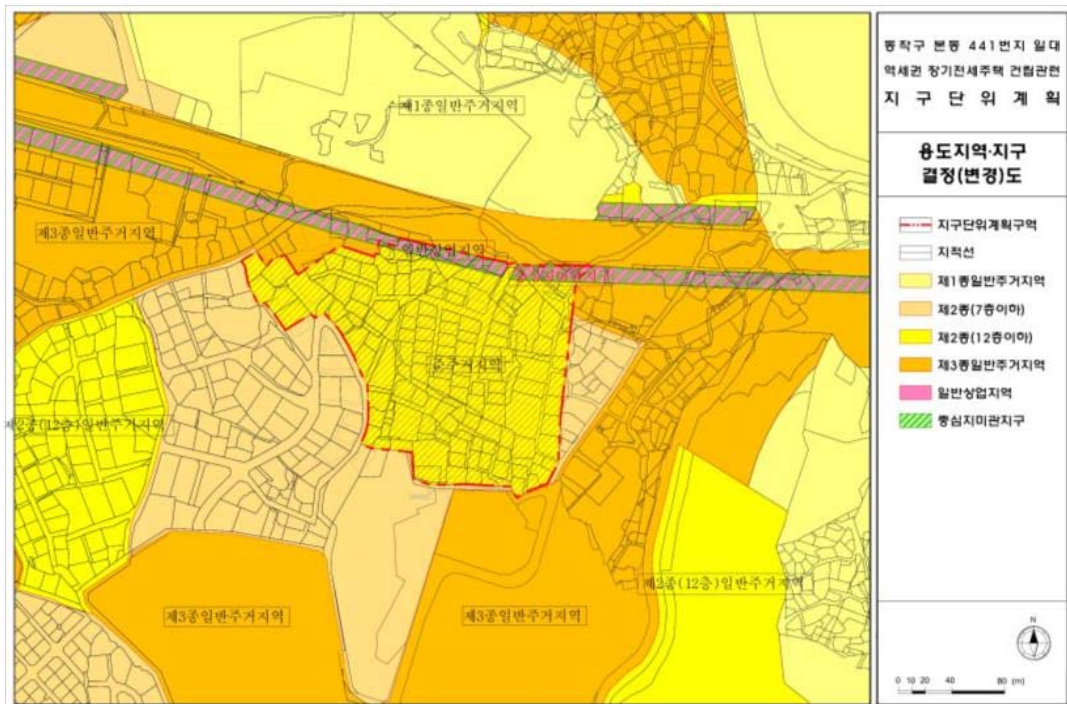
구분	도면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서울역광장~구영등포구청 (노량진동191-3 ~ 본동 368-3)	217,734	8,725 (156)	12~20 (양측12)	서고시제164호 (1984.4.22.)	한강로지구 (노량진로변)

※ ()는 대상지 내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	313	3,025.2	-	-	-	-	-	-	2	313	3,025.2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155	2,033.1	-	-	-	-	-	-	1	155	2,033.1
소로	1	158	992.1	-	-	-	-	-	-	1	158	992.1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1	12	집산	155	본동 383-1	본동 443-4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3	1	6	국지	93	본동 379-73	본동 379-45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3	2	3~6	국지	95	본동 379-31	본동 379-3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	6	국지	158	본동 443-2	노량진동 205-197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1	•도로 신설 - 폭 : 12m - 연장 : 155m	•대상지의 주진입로 확보를 위해 정비기반시설로 도로를 신설
소로3-1	-	•도로 폐지 - 폭 : 6m - 연장 : 93m	•대상지 주 진입로 신설로 인하여 폐지
소로3-2	-	•도로 폐지 - 폭 : 3~6m - 연장 : 95m	•대상지 주 진입로 신설로 인하여 폐지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1	•도로 신설 - 폭 : 6m - 연장 : 158m	•대상지의 보조진입로 확보를 위해 정비기반시설로 도로를 신설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본동 379-9번지 일대	-	증)590	590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590㎡	• 노량진로변에 공공공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

다) 공공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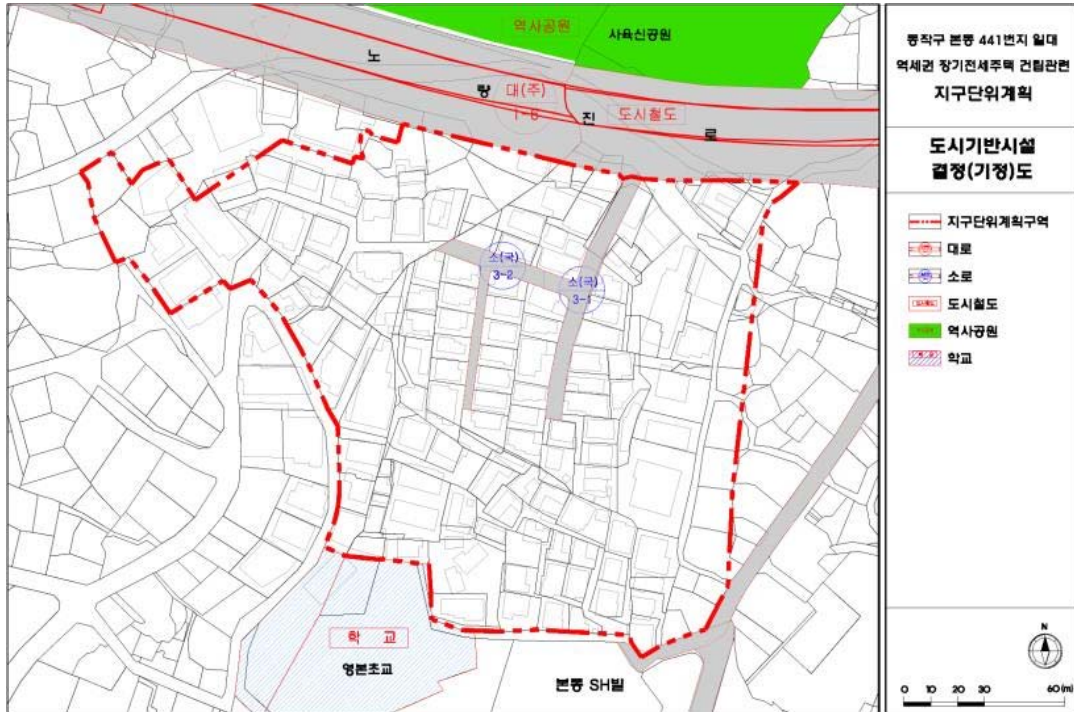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노량진동 201 일대	-	증)858	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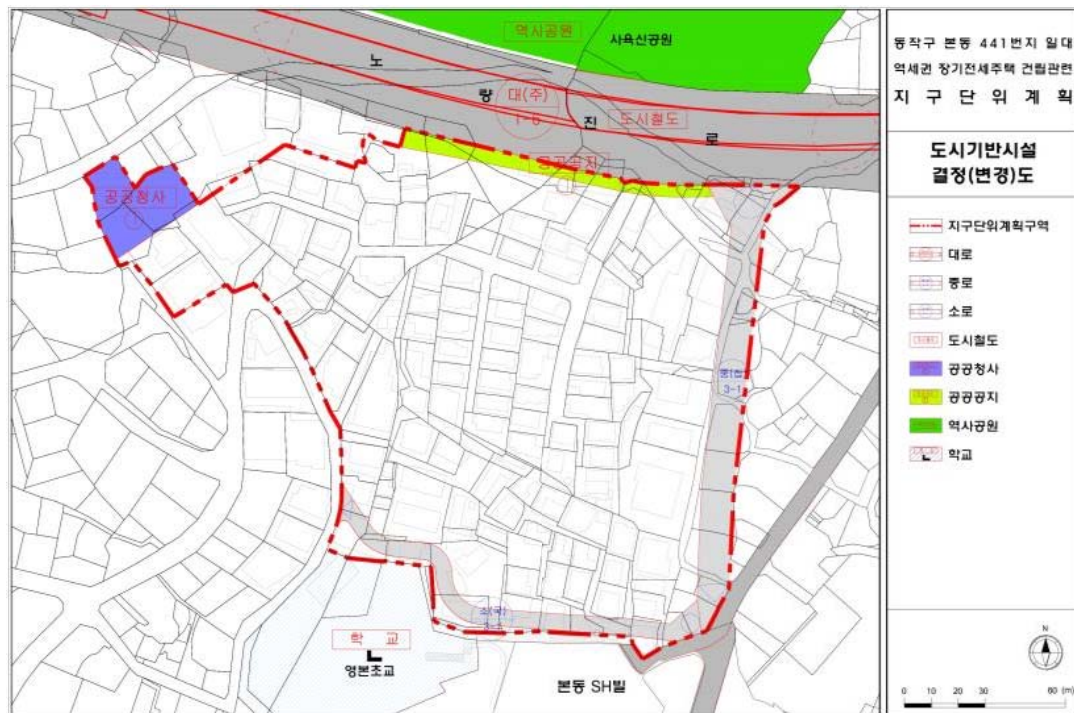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 신설 - 면적 : 858㎡	• 노량진1동과 본동 동사무소를 통폐합함으로써 토지효율성을 증진 시키고,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복지를 도모하고자 함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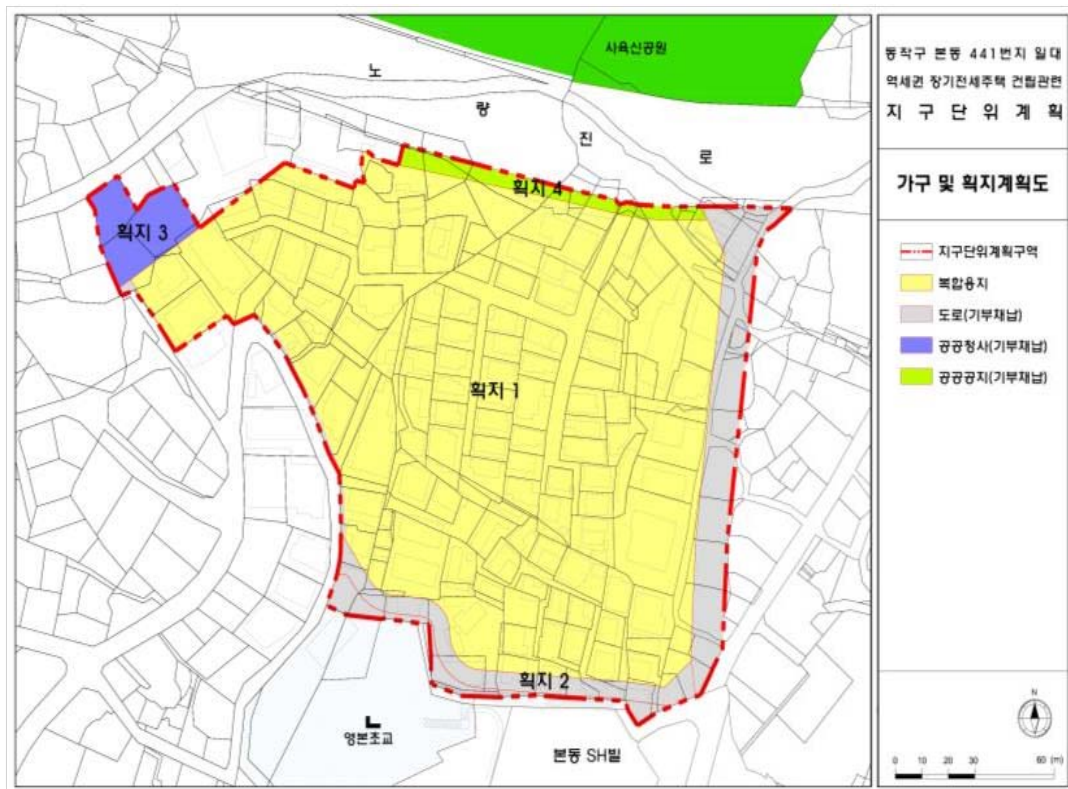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 변경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획지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29,743	
획지계획	소계	-	24,678	
	획지①	본동 441번지 일대	24,678	복합용지
기반시설	소계	-	5,065	
	획지②	본동 383-1번지 일대	3,617	도로
	획지③	노량진동 201번지 일대	858	공공청사
	획지④	본동 379-9번지 일대	590	공공공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호의 공동주택(주상복합건물) - 제3호의 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나) 건폐율에 관한 계획

계획내용	비고
60% 이하	

다)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209.4% 이하	• 기준용적률 209.4% = $\{(20,041\text{m}^2 \times 200\%) + (3,979\text{m}^2 \times 250\%) + (658\text{m}^2 \times 250\%)\} / 24,678\text{m}^2$
(패키지) 허용용적률	400% 이하	• (패키지)허용용적률 : 장기전세주택 공급+지속가능형 건축구조+커뮤니티 지원시설+에너지효율 건축물+친환경건축물+선택항목(신재생에너지, 공공기여 방안, 역사문화보전) 중 1개
상한용적률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2차 역세권(역중심 반경 250~500m)을 감안하여 용적률 400% 이내(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09.12)

라)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최고높이	110m 이하	

마) 건축한계선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대상지 북측(노량진로변) 5m 계획 - 대상지 동측, 서측 및 남측 4m 계획	

바) 장기전세주택 건설비용에 관한 계획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계획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 60% 내외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30% 내외 - 전용면적 85㎡ 초과 : 10% 내외 ※ 일반분양주택이 전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로서 85㎡ 초과를 설계시 설비를 위한 계획 등으로 불합리한 경우 85㎡ 초과 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용면적 60㎡ 이하 : 65.1%(166세대)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34.9%(86세대)

사) 비주거시설의 건축 비율에 관한 계획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비 고
-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지상 1층과 2층은 비주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지상층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으로 지상층에 건축하고 주택외의 시설은 지상층에 다음기준에 따라 건축을 권장 한다. (1)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의 비주거시설 설치 (2)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입지여건을 고려 지하층에 설치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지상층 비주거시설이 입지하는 건물의 지상 1층과 2층에 비주거 설치를 권장한다.	- 지상층 연면적 : 96,003.56㎡ - 비주거시설 : 20,068.36㎡(18.5%) - 지하층비주거시설 : 8,891.32㎡(9.26%) - 판매시설 : 2,236.97㎡(2.3%) - 근린생활시설 : 9,227.50㎡(9.6%) - 업무시설 : 4,668.49㎡(4.8%) - 교육연구시설 : 1,169.12㎡(1.2%) - 운동시설 : 2,587.49㎡(2.7%)

아) 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필수 항목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경과규정 적용기준('11.1.17)에 따라 지속가능형 건축구조로 변경하여 적용	건축심의에서 인정받음
	커뮤니티 지원시설	-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 (최소 450㎡) 이상	5.16%(4,432.86㎡)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85,788.58㎡)	추후 적용
	에너지효율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가 86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에너지효율2등급 이상 인증	분양 승인전 인증
	친환경 건축물	「건축법」 제65조 및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용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건축·주택사업도 우수 등급 이상 친환경 예비 인증	친환경우수등급(75점 이상) 예비인증	분양 승인전 인증
선택 항목	신재생 에너지 사용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기준」 제5조에 따라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 투자 또는 건물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	1개 항목 선택 적용
	공공기여 방안	공공기여방안을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에 반영한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공사시 감리자 설치 확인
	역사문화 보전계획	역사문화 보전등을 위한 지구지정 여부	-	
(패키지)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400%	적용

■ 부담률 산정

구분	공공시설 부담률	비고
공공시설	5,065㎡(17.0%)	※순부담
장기전세주택 무상양여지분	1,567㎡(5.3%)	
합계	$5,065\text{㎡} + 1,567\text{㎡} = 6,632\text{㎡}$ (22.3%)	

※ 순부담이란 사유토지(국·공유지를 매입한 토지를 포함하되 무상 양여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공공시설 제공면적	5,065㎡	• 도로(3,617㎡), 공공청사(858㎡), 공공공지(590㎡)	
가중치	1.0015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α	20.5%	• α = 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 $5,065\text{㎡} / 24,678\text{㎡} = 20.5\%$	
상한용적률	400% 이내	• 상한용적률 = $400\% (1 + 1.3 \times 1.0015 \times 20.5\%)$ = $506.9\% \Rightarrow 400\%$ 이내	
상한용적률		400% 이하	

■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구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제1종지구단위계획	계획	비고
장기전세주택 건설비용	• 현장여건 및 제도상 허용용적률까지 적용하지 못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5/10을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설계상 적용한 증가용적률의 50/100	• 건축계획용적률 : 389.02% • 완화된 용적률 : 179.62% • Shift공급용적률 : 91.80%	
공공시설 부담률	• 용도지역 1단계 상향시 15% 이상 • 용도지역 3단계 상향시 25% 이상	• 공공시설(순부담) : 17.0% (5,065㎡) • 장기전세주택 지분무상양여 : 5.3% (1,567㎡) ⇒ 총 6,632㎡(22.3%)	• 1단계 상향 (636.00㎡) • 3단계 상향 (5,996.00㎡) ⇒ 공공시설 부담기준 22.3% (6,632.0㎡)

구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제1종지구단위계획	계획	비고
커뮤니티 지원시설	• 휘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 입주자 및 지역주민들까지 포함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설설치 • 300세대 이상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 (최소 450㎡)이상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이상 4,432.85㎡ 계획 - 휘트니스센터(운동시설) : 2,914.57㎡ - 독서실 : 1,316.90㎡ - 다목적홀 : 201.38㎡	

※ 장기전세주택 지분 및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세부시설 면적은 건축계획에 의해 산출된 수치임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보행동선	• 단지내 보행동선은 각 주동간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계획 •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 보도변 식재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단지내 주민운동공간, 어린이놀이터 등 오픈스페이스와의 연계	
차량	차량출입 불허구간	• 노량진로에서 주진입로 진입 후 35m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함
	주차	• 거주민 및 상가를 위하여 주차장 분리하여 설치(1,013대)

나)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 주민들의 편리한 보행을 위해 보행자 부출입구에서 노량진로(35m) 및 공공청사로의 공공보행통로를 회랑형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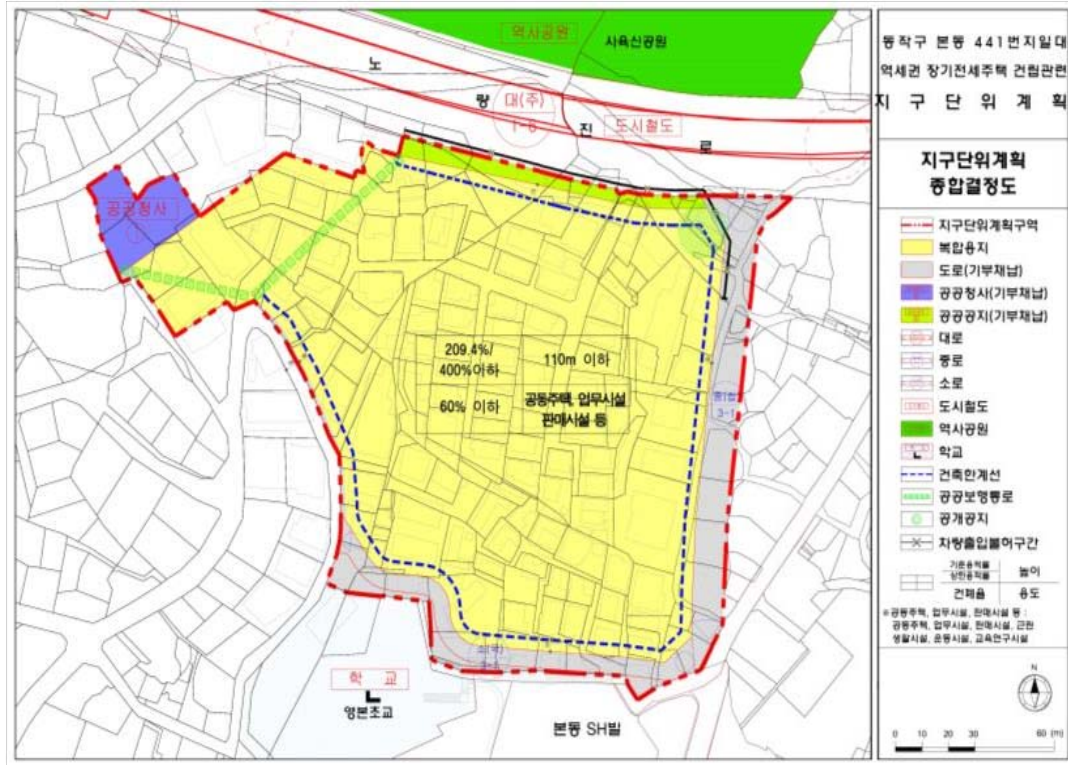
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 노량진로(35m)와 주진입로(12m)의 교차부이며, 노들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지 설치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보행환경을 위해 건축한계선을 노량진로변(북측)으로 5m, 동측 도로변으로 4m, 남측과 서측 도로변으로 4m 지정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불가	
지붕형태	•주동과 시각적 연속성을 이루는 형태의 상층부 계획	
입면계획	•색채, 마감재 등을 이용한 저층/중층/고층부 차별화 •자연친화적 출입구 확립	

■ 종합결정도



6. 기타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주택과(☎ 820-138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고시 제2017-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동작구 본동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중(집)로3-1호선 외 1개 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13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집)로 3-1호선 - 동작구 본동 382-1번지 일원
 소(국)로 3-1호선 - 동작구 본동 443-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명칭 : 동작구 본동 도시계획도로(중(집)로3-1호선외 1개노선) 개설공사

라. 사업 시행자

- 성 명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20. 03. 30

바. 사업시행지의 규모

시설명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도 로	중로	3	1	12	집산도로	164	본동 368-3	본동 443-2	
	소로	3	1	6	국지도로	159	본동 443-2	본동 205-197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아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 편입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도로	비고
1	본동	344-12	도	1,705	273	동작구	동작구	중(집)3-1	
2	본동	344-29	대	43	21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3	본동	344-30	대	9	9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4	본동	368-3	대	20	20	홍성정	노량진동205-13	중(집)3-1	
5	본동	374-3	도	985	38	국(건설부)		중(집)3-1	
6	본동	374-7	대	25	17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7	본동	382-1	대	209	107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8	본동	382-4	도	36	7	국(재무부)		중(집)3-1	
9	본동	382-5	대	17	17	홍성정	노량진동205-13	중(집)3-1	
10	본동	383-1	대	139	135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11	본동	383-3	대	17	17	홍성정	노량진동205-13	중(집)3-1	
12	본동	383-4	대	20	20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13	본동	384-1	대	166	50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14	본동	384-15	도	119	22	국(건설부)		중(집)3-1	
15	본동	419-2	대	116	100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16	본동	419-3	대	17	3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17	본동	420	대	245	179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18	본동	421-1	대	50	49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19	본동	421-2	도	10	10	국(건설부)		중(집)3-1	
20	본동	426	대	320	38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21	본동	431	대	238	198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22	본동	432-2	대	205	179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23	본동	437-1	대	294	195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24	본동	438	대	225	184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25	본동	443-1	대	66	2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26	본동	443-2	대	178	47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27	본동	443-4	대	96	93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중(집)3-1	
28	본동	산15-10	임	56	9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소(국)3-1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도로	비고
29	노량진동	205-197	대	152	41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소(국)3-1	
30	노량진동	205-293	대	169	167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소(국)3-1	
31	본동	441-110	대	11	10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소(국)3-1	
32	본동	441-116	도	137	68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소(국)3-1	
33	본동	441-117	대	210	173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소(국)3-1	
34	본동	441-123	대	12	3	국(재무부)		소(국)3-1	
35	본동	441-2	대	556	111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소(국)3-1	
36	본동	441-29	대	132	81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소(국)3-1	
37	본동	441-30	대	79	66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소(국)3-1	
38	본동	441-48	대	116	116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소(국)3-1	
39	본동	441-50	대	179	143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소(국)3-1	
40	본동	441-9	대	216	124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소(국)3-1	
41	본동	441-118	도	45	45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소(국)3-1	
42	본동	442-5	대	132	2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소(국)3-1	
43	본동	442-6	대	66	17	국(재무부)		소(국)3-1	
44	본동	442-7	대	132	20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소(국)3-1	
45	본동	442-8	대	129	119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소(국)3-1	
46	본동	443-2	대	178	67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소(국)3-1	
47	본동	443-3	대	86	70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소(국)3-1	
48	노량진동	205-258	대	17	1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A	
49	노량진동	205-257	대	169	8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A	
50	노량진동	205-256	대	122	17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A	
51	노량진동	205-252	대	23	1	이재원	역삼동736-1한솔빌딩14층	A	
52	노량진동	205-255	대	225	21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A	
53	노량진동	205-287	대	241	25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A	
54	노량진동	205-364	도	143	8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A	
55	노량진동	205-277	도	60	4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A	
56	노량진동	205-196	대	198	18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A	
57	노량진동	205-197	대	152	7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A	
58	노량진동	201-1	대	281	20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B	
59	노량진동	205-4	대	274	5	(주)하나다울신탁	대치동943-19신안빌딩12층	B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17-280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2호(2016. 9. 22.)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지역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3일

중 구 청 장

가. 열람내용

- 1)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지역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사업
 - 나) 명 칭 : 서울 중구, 종로구지역 전기공급시설(세종로-운니)
 -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규 모 : 터널형 전력구 $\Phi 2.8\text{m} \times 2\text{L} : 1.035\text{m}$, 수직구 1개소($\Phi 6.6\text{m} \times \text{H} : 30.8\text{m}$)
 - 나) 면 적 : 2,922.8 m^2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조환익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7길 5
 - 5) 인가 신청의 요지 : 서울시 중구, 종로구지역 전력부하급증에 따른 정전예방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內
 - 나) 준공 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따로붙임
 -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9)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 나. 열람기간 : 2017.04.13. ~ 2017.04.27.
- 다. 열람장소 : 중구청 도시관리국 도심재생과(☎3396-5754)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공사명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지역 전기공급시설(세종로-운니)사업

토지조서 총괄표

1) 지목별 토지조서 총괄표

구 분	계	하 천	도 로	비 고
지적면적(㎡)	40,690.5	3,014.9	37,675.6	
편입면적(㎡)	2,922.8	92.2	2,830.6	
수 직 구(㎡)	62.0	-	62.0	
1 구 간(㎡)	1,725.1	-	1,725.1	
2 구 간(㎡)	1,135.7	92.2	1,043.5	
필 지 수	48필지	2필지	46필지	

2) 소유자별 토지조서 총괄표

구 분	계	국 유 지				사유지	비 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토교통부		
지적면적(㎡)	40,691	29,478.9	819.4	3,853.5	6,538.7		
편입면적(㎡)	2,923	2,478.9	95.6	125.2	223.1		
수 직 구(㎡)	62	19.0	43.0		-		
1 구 간(㎡)	1,725	1,627.5	14.1		83.5		
2 구 간(㎡)	1,136	832.4	38.5	125.2	139.6		
필 지 수	48필지	34필지	3필지	4필지	7필지		

3) 시설별 토지조서 총괄표

구 분	계	도시계획시설(전력공급)	비 고
편입면적(㎡)	2,922.8	2,922.8	
수 직 구(㎡)	62.0	62.0	
1 구 간(㎡)	1,725.1	1,725.1	
2 구 간(㎡)	1,135.7	1,135.7	
필 지 수	48필지	48필지	

◆ 서대문구공고 제2017-429호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429호(1978.8.26.)로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780호(1980.5.26.)로 지적승인 된 경의제2녹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경의제2녹지)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이며 본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 서대문구청(푸른도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용할 토지 및 물건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등 3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2) 사업의 명칭 : 경의제2녹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 5,00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대문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18.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조서참조

※ 조서상의 물건은 현황 측량한 철거될 지장물로 보상 시 물건의 종류와 면적이 조서상의 물건 및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사. 사업의 주요내용 : 토지 및 건물 보상, 녹지조성 등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330-171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붙임 : 조서 1부.

토지 및 건축물 조서

○ 토지 현황 : 32필지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의관리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대	9.9	9.9	박영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4, 브라운스톤금호 102-1102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5	대	28.8	28.8	박영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4, 브라운스톤금호 102-1102				
3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4-2	구	40.7	40.7	국토교통부					
4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3	도로	13.2	13.2	기획재정부					
5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4	대	36.7	36.7	기획재정부					
6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4	대	40	40	기획재정부					
7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9	도로	75	66	국유지					
8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9-24	도로	79.9	54	시유지					
9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도로	174.9	71.88	국토교통부					
10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철	5,961	3,468.18	국토교통부					
1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85	철	30.7	7.7	국토교통부					
1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84	철	91.9	91.9	국토교통부					
13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83	철	80.7	80.7	국토교통부					
14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82	철	57.5	57.5	국토교통부					
15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81	철	55.2	55.2	국토교통부					
16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80	철	48.6	48.6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이권리내용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17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9	철	36.4	36.4	국토교통부					
18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8	철	43	43	국토교통부					
19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7	철	53.9	53.9	국토교통부					
20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6	철	82	82	국토교통부					
2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5	철	37.4	37.4	국토교통부					
2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4	철	6	6	국토교통부					
23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3	철	7.9	7.9	국토교통부					
24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2	철	51.9	51.9	국토교통부					
25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9-26	구	59.7	5	시유지					
26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9-23	철	47.1	10	시유지					
27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3	철	939.2	383.54	국토교통부					
28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9	철	42.6	42.6	국토교통부					
29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8	철	35.7	35.7	국토교통부					
30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7	철	15.9	15.9	국토교통부					
3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6	철	14.2	14.2	국토교통부					
3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5	철	3.6	3.6	국토교통부					

○ 건물(지장물) 현황 : 6동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실제이용상황	건축물관리 대상면적 (㎡)	현황측량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1	서대문구 홍정로3가 128-11	주택/점포	목조	주택/점포 (공감)	32.23	69.5	권용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0다길 72 (삼선동1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포구 아현동 699-4	김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99-4	세입자 (점포)	확대보 상심의 대상
		장독대	콘크리트	장독대	-	12							
2	서대문구 홍정로3가 155-5	점포 (회집)	세멘조	점포 (자갈치회집)	39.6696	110.6	신문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17번길 28, 202호(내유동, 용진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문구 홍정로3가 155-5	양금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문구 홍정로3가 155-5	세입자 (점포)	
3	서대문구 홍정로3가 143-2	점포 (분식집)	세멘조	점포 (철길떡볶이)	-	39.7	허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정로3가 143-2					
4	서대문구 홍정로3가 120-2	점포 (철물점)	목조	점포 (신성종합상사)	49.587	67.9	홍준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965, 1513호 (다가동, 아트빌아파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문구 홍정로3가 120-2	신진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문구 홍정로3가 120-2	세입자 (점포)	
5	서대문구 홍정로3가 120-2	점포 (고물상)	목조	점포 (고물상)	79.3392	(미측량)	최진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정로3가 150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문구 홍정로3가 120-2	오성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문구 홍정로3가 120-2	세입자 (점포)	
6	서대문구 홍정로3가 120-2	가건물 (주차관리)	콘테이너	가건물 (주차관리)	-	3.2	등아 일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정로 29					

○ 영업권조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상호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8-11	영업권	공감	점포 (음식점)	김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99-4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영업권	세멘조	점포 (음식점)	양금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3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영업권	세멘조	점포 (음식점)	허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4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영업권	목조	점포 (철물점)	신진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5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영업권	목조	점포 (고물상)	오성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6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영업권	콘테이너	가건물 (주차관리)	동아일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 서대문구공고 제2017-448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05-71호(2005.6.2.)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7-50호(2017.4.6.)로 결정된 홍제2동 192-32번지 일대 공공공지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7-50호(2017.4.6.)로 결정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이며 본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 서대문구청(푸른도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용할 토지 및 물건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95-32번지 등 1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홍제2동 주민휴게공간 조성 및 노인종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다. 사업의 면적 : 51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대문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18.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조서참조

사. 사업의 주요내용 : 공공공지 조성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330-1907), 어르신복지과(☎330-1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 토지조서(총괄)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시설의 종류 및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적	공공 공지1	공공 공지2	사회 복지 시설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계	513	179	98	236						
1	홍제동 192-32	대	157	155.5		1.5	민성식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직동리 114				
2	홍제동 193-4	대	32	6		26	김찬주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365				
3	홍제동 193-6	대	20	14	6	선우복희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 63동 502호					
						오현승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 63동 502호					
						오세진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 63동 502호					
						오세원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 63동 502호					
4	홍제동 194-1	대	46			46	위정복	서대문구 홍제동 459 홍제원현대@ 107-1102				
5	홍제동 194-2	대	47	47			조원길	서대문구 홍제동 194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임류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연희로 248	임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구 독막로 311	임류	
6	홍제동 195-1	대	27			27	송설희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08-2 201호				
7	홍제동 195-3	대	49			49	구남희	서대문구 홍제동 312-240 동일@ 502호				
8	홍제동 195-15	대	14			14	임용순	전남 하명군 손불면 죽장길 163-3				
9	홍제동 175-15	대	40		40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연희로 248				
10	홍제동 370-9	대	11		11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연희로 248				
11	홍제동 195-13	대	29			29	송설희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08-2 201호				
12	홍제동 195-14	대	33	3.5		29.5	구남희	서대문구 홍제동 312-240 동일@ 502호				
13	홍제동 193-7	대	8			8	김찬주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365				

□ 토지조서(공공공지 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계	242	179						
1	홍제동 192-32	대	157	155.5	민성식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직동리 114				
2	홍제동 193-4	대	32	6	김찬주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365				
3	홍제동 193-6	대	20	14	선우복희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 63동 502호				
					오현승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 63동 502호				
					오세진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 63동 502호				
					오세원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 63동 502호				
4	홍제동 195-14	대	33	3.5	구남희	서대문구 홍제동 312-240 동일@ 502호				

□ 토지조서(공공공지 2)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계	98	98						
1	홍제동 194-2	대	47	47	조원길	서대문구 홍제동 194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압류	
2	홍제동 175-15	대	40	40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연희로 248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구 독막로 311	압류	
3	홍제동 370-9	대	11	11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연희로 248				

☐ 토지조서(사회복지시설)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시설의 종류 및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계	415	236						
1	홍제동 192-32	대	157	1.5	민성식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직동리 114				
2	홍제동 193-4	대	32	26	김찬주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365				
3	홍제동 193-6	대	20	6	선우복희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 63동 502호				
					오현승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 63동 502호				
					오세진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 63동 502호				
					오세원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 63동 502호				
4	홍제동 194-1	대	46	46	위춘복	서대문구 홍제동 459 홍제원현대@ 107-1102				
5	홍제동 195-1	대	27	27	송설희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08-2 201호				
6	홍제동 195-3	대	49	49	구남희	서대문구 홍제동 312-240 동일@ 502호				
7	홍제동 195-15	대	14	14	임용순	전남 하명군 신불면 죽장길 163-3				
8	홍제동 195-13	대	29	29	송설희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08-2 201호				
9	홍제동 195-14	대	33	29.5	구남희	서대문구 홍제동 312-240 동일@ 502호				
10	홍제동 193-7	대	8	8	김찬주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365				

☐ 물건조서(공공공지 1, 공공공지 2, 사회복지시설)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실제이용현 황	건축물 관리 대상 면적(㎡)	현황측량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계			182.7696	379							
1	홍제동 192-32	주택	세멘부록조	거주용	67.6	116	민성식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직동리 114		심소연 최병은 심소희	홍제동 192-32	세입자	공공공지 1 사회복지시설
2	홍제동 194-1	주택	세멘부록조	거주용 화장실 보일러	25.91 - -	41 3 2	위정복	서대문구 홍제동 459 홍제원현대@ 107-1102		문옥순	홍제동 194-1	세입자 (직계 존속)	사회복지시설
3	홍제동 194-2	주택	목조	거주용 화장실 목재가설1 목재가설2	23.14 - - -	55 2 2 3	조장수	서대문구 홍제동 194-2		조원길	홍제동 194-2	토지주	공공공지 2
4	홍제동 195-1	주택	세멘조	거주용 화장실	39.6696 -	65 3	송설희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08-2 201호		김대석	홍제동 195-1	세입자	사회복지시설
5	홍제동 195-3	주택	시멘트외집	거주용1층 화장실 창고 거주용2층	26.45 - - -	56 2 2 27	구남희	서대문구 홍제동 312-240 등일@ 502호		조재성	홍제동 195-3	세입자	사회복지시설

◆ 강서구공고 제2017-50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 정거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5호(2002.01.09)로 도시계획시설(철도 : 정거장) 결정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80호(2002.12.06)로 건설사업계획 승인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도시계획시설(철도 : 정거장) 변경 결정, 강서구고시 제2014-72호(2014.08.07)로 도시계획시설(철도 : 정거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강서구고시 제2014-103호(2014.11.27)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강서구고시 제2015-77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 : 정거장)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367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 정거장)사업
- 명 칭 : 마곡지구 B4-3BL 신축관련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휴게공간 설치 및 연결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라. 사업 기간 : 2014. 11. 27 ~ 2016. 12. 31.

마. 공사완료 내용

- 규 모 : 폭 = 17.06m ~ 18.10m, 연장 = 7.27m ~ 7.37m, 면적 = 127.9㎡
- 공사완료일 (준공일자) : 2016. 12. 31.
-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준공 후 무상 귀속

바. 관계도서 : 생략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2600-6387)

◆ 강서구공고 제2017-511호

도시계획시설(개화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재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1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359호(2004.11.15)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개화근린 공원에 대하여
2.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아래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3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사업의 명칭 : 개화근린공원 조성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산43-12번지 외 1필지

다. 사업의 규모 : 1,900㎡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공원조성

마. 변경사항 : 지번 정정 및 이해관계인 추가

바.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사무수임자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사.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아.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 별도첨부

자.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83)

차.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토지)

연번	지번	지목	지적(㎡)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합계	2필지		1,900	1,900							
1	개화동 산43-12	임야	1,100	1,100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1509호	홍계수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0, 13동 1106호	홍익규				
2	방화동 463-17	임야	800	800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3길 20-8	장재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길 11	서대문세무서	근저당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0, 10동 801호	옥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43	강서세무서	근저당	

◆ 구로구공고 제2017-59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열람공고

1. 구로구 오류동 산42-22 외 1건(도로) 신규결정 및 일부구간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도로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3일

구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280), 도로과(☎860-3124), 구로구청홈페이지
 (http://guro.go.kr→고시·공고),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소로	2	-	8~9	국지 도로	65	오류동 산42-22	오류동 산42-11	일반 도로	-	신규

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	8~9	국지 도로	377	가리봉동 115-12	가리봉동122 -29	일반 도로	1969.01.18 (서고시제3호)	선형일부조정(5%미만의 경 미한변경), 현 지적에 맞는 종점 지번 조정.
변경	소로	2	-	8~9	국지 도로	377	가리봉동 115-12	가리봉동 123-35	일반 도로		

라. 관련도면 : 생략(구로구청 도시계획과 및 도로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강동구공고 제2017-517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강동구 공고 제2017-194호(2017.2.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된 일자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 청취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3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둔촌동 산102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다. 사업의 명칭 : 일자산도시자연공원 조성
- 라. 사업의 규모 : 토지보상 865㎡
- 마.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 바. 사업착수에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2018.12.31일 까지

2. 열람 및 주민의견 제출방법

- 가. 열람기간 :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 나. 열람장소 :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
- 다.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의견서 제출

※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공고 제2017-518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5호(2006.5.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강동구 공고 제2017-286호(2017.3.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된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 청취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3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암사동 192번지 외 10필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다. 사업의 명칭 : 암사역사공원 조성

라. 사업의 규모 : 토지보상 10,938㎡

마.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바.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2018.12.31일 까지

2. 열람 및 주민의견 제출방법

가. 열람기간 :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

다.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의견서 제출

※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공고 제2017-519호**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강동구 공고 제2017-257호(2017.2.2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된 명일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 청취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3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상일동 산37번지, 상일동 산50, 상일동 162-1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다. 사업의 명칭 : 명일근린공원 조성

라. 사업의 규모 : 토지보상 2,073㎡

마.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바.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2018.12.31일 까지

2. 열람 및 주민의견 제출방법

가. 열람기간 :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

다.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의견서 제출

※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7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서울시계 내 한강 (마곡대교 ~ 성산대교)	선박 3척 (기선1척,부선2척)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2017.4.10. ~ 2017.12.31.	2017. 4.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프라임해운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36	서울시계 내 한강 (아라 한강갑문~ 동작대교 남단)	선박 2척 (기선 1척 부선 1척)	인양 열병합 발전소 중량물 해상운송	2017.4.12. ~ 2017.4.28.	2017. 4.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74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튜브스터코리아(주) (대표 안영호)	서울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	(주)세빛섬 (가빛섬~예빛섬)	구조선 1척 무동력 20대 (131㎡)	수상레저사업	2017.4.1. ~ 2017.11.30.	2017. 3.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75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주)세븐마린레저 대표 박명철
3. 점용자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61
4. 점 용 목 적 : 유선사업
5. 점 용 면 적 : 유선장 68㎡
6. 점 용 기 간 : 2017. 04. 04. ~ 2017. 12. 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77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

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현대건설(주)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서울시계 내 한강 (강동구 고덕동~ 구리시 토평동)	선박 4척 (기선 1척 부선 3척)	한강 내 가교설치	2017.4.10. ~ 2017.5.31.	2017. 4.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조선기술	인천시 동구 송현동 192	서울시계 내 한강 (K&P 유선장 상부제 공사현장)	선박 2척 (기선1, 부선1)	K&P 유선장 상부제 공사 보조를 위한 선박운항	2017.4.11. ~ 2017.6.10.	2017. 4.10.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8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계내 한강	선박 4척	수중구조물 점검을 위한 정기적 운항	2017.4.10.~ 2017.12.20.	2017. 4.10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7-76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7. 4. 13. ~ 2017. 4. 26.(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7. 4. 27. ~ 2017. 5. 10.(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승달 대상내역

순번	세 목 코드	세 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7-02	000123	김*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번길 **	B동 ***호 (경인동)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7-02	000131	이*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번길 ***	지하*층 (봉천동)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7-02	000133	박*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원로 **	***동 ***호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7-02	000135	김*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번길 ***	(능동)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7-02	000136	이*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	***동 ***호 (옥수동, 옥수 파크힐스)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7-02	000137	김*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번길 ***	지*층 ***호 (염창동, 국제빌라)

기 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65호****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영등포구 양평동
 - 면적 : 일시 18,98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성산대교 성능개선사업을 위한 가교 설치
 - 내역 :
 - 가교설치 2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허가일~2022.4.6.(허가일~2022.4.6.)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